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337-10

2017 장애인차별예방 현장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17 장애인차별예방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2017 장애인차별예방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감사의 말씀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 제33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의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는 모니터링 기구이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사업을 꾸준히 시행해 왔습니다. 모니터링 사업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 및 인권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직접 현장을 모니터링 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전국 6개 권역에서 150여명의 모니터링 단원이 성실히 활동해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접근이 많은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 역사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교육권 증진을 위하여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이 되고 있는지와 물리적 접근제한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등 시설 접근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도 많지만, 아직은 미진하거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여전히 부족하여 현장 모니터링 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모니터링을 진행했던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의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이 실현되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위와 궂은 날씨에도 모니터링을 성실히 해주신 모니터링 단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이성호

CONTENTS ● ● ●

I 모니터링단 선언문 • 1

II 모니터링 사업 개요 • 5

III 모니터링 결과 보고 • 13

- 과제 1.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역사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15
- 과제 2. 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 74

* 부 록 • 165

- 1. 모니터링단 활동 후기 167
- 2. 2017 장애차별예방 현장 모니터링단 명단 181
- 3. 모니터링 관련 법령 184

I. 모니터링단 선언문



I . 모니터링단 선언문

우리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기 위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적 국내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이 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은 장애인들이 넘어서기 어려운 편견과 차별의 벽이 두껍기만 합니다.

장애인 차별의 현상은 여전히 많습니다.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참정권, 모·부성권,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한 조건에서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장애인들이 특별하게 대우받는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편견 없이 능력을 발휘하며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세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차별 없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세상, 편안하게 산책하고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 차별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러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망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장애인이 겪고 있는 일상의 현장을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우리 모니터링 단원은 장애인의 차별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 완전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세상의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열정을 담아 최선을 다할 것을 선언합니다.

Ⅱ. 모니터링 사업 개요



Ⅱ. 모니터링 사업 개요

1 모니터링 사업 배경 및 목적

가. 모니터링 사업 배경

- 모니터링 사업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 규정된 차별금지영역 및 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들을 모니터링하여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발견하고, 해당기관과의 협의과정을 통해 차별적 요소의 개선을 도모

•근거 :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권리협약(‘09. 1. 10. 국내발효) 제33조 제2항에 따라 협약의 이행을 증진·보호·감독하는 모니터링 기구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8, 39, 41조에 의거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구제 업무를 수행

- 피모니터링 기관과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계획을 유도함으로써 차별요인의 해소를 도모
- 2017년에는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 역사의 장애인 접근성, 교육기관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및 장애인 접근성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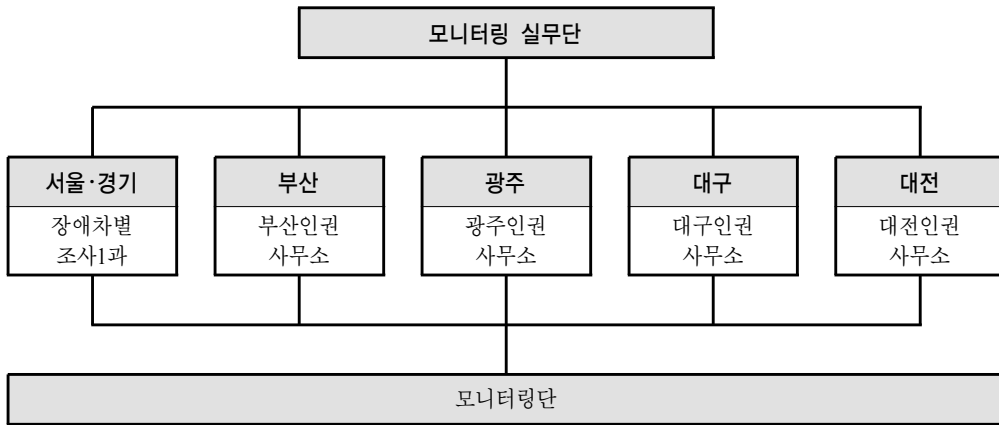
나. 모니터링 사업 목적

-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 차별의 예방적 활동 강화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실효성 있는 이행 유도
- 장애차별시정 전담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2 모니터링단 구성 및 운영

가. 모니터링단 구성

-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6개 권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및 비장애인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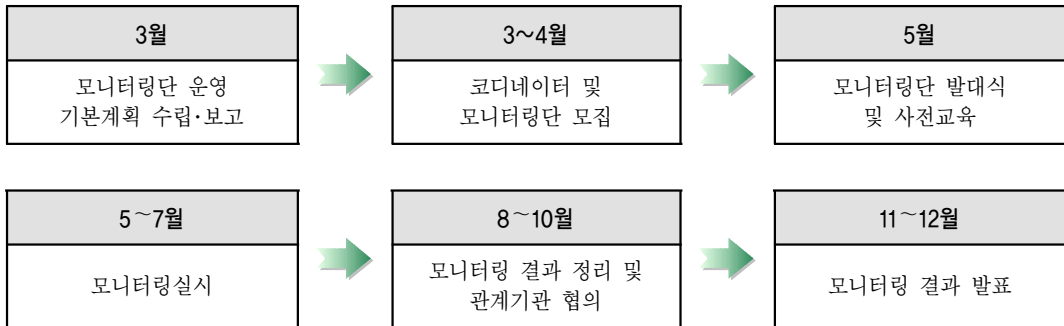


나. 모니터링단 선발

- 각 지역별 30여명 규모로 선발, 모니터링 단원의 50%이상을 장애당사자로 구성
 - 총 158명중 장애인당사자 97명(61.4%)로 구성
 - 지체, 시각, 청각 등 다양한 장애유형 포함 고려

		비율	합계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장애	지체장애	27.2%	43	8	8	3	13	4	7
	뇌병변장애	24.1%	38	6	-	13	4	6	9
	시각장애	5.7%	9	5	2	-	-	-	2
	청각장애	3.2%	5	2	1	2	-	-	-
	지적·발달장애	0.6%	1	-	-	-	-	-	1
	기타	0.6%	1	-	-	-	-	-	1
	소계	61.4%	97	21	11	18	17	10	20
비장애	38.6%	61	12	15	7	7	15	5	
총합	100.0%	158	33	26	25	24	25	25	

다. 모니터링 사업 흐름도



라.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과제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

- 모니터링과 관련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만들어 단원들에게 배포
- 사전교육 주요 내용
 - 모니터링 과제 선정 배경 및 관련 규정 설명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교육
 -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기관 안내
 -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안내(이동 시 안전, 단원증 패용, 모니터링단 조끼 착용 등)

2) 현장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 대상기관에 모니터링 사업 설명 및 협조 공문 발송, 필요시 위원회 직원 동행
- 3개월 간(2017. 5.~7) 과제별 현장 모니터링 수행
- 과제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후 보고서(1기관 당 체크리스트 각 1부, 개인별 활동 보고서 1부 등)를 각 지역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제출
-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현장에서의 차별사례 발굴에 집중

3) 모니터링 결과 보고 및 사후조치

-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기관 협의
-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자료집 발간
- 지역별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 서울·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 모니터링 결과를 통한 개선 권고 및 중·장기 장애정책 과제 발굴

마. 모니터링 주제

-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역사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 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

3 모니터링사업 주요 운영일지

월	2017년 주요 활동
1	○ 모니터링 사업 기획
2	○ 모니터링 사업 관련 실무단 회의 개최(2017. 2. 9.) ○ 관계부처 업무 협의(2017. 2. 24.)
3	○ 2017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운영 계획 수립 및 보고(2017. 3. 10.)
4 5	○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코디네이터 및 단원 선발(권역별 실시) ○ 모니터링 코디네이터 간담회 개최(2017. 4. 21.) ○ 모니터링 발대식 및 1차 사전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기 : 2017. 4. 25.(화) 이룸센터 이룸홀 · 부산 : 2017. 4. 27.(목) 부산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 광주 : 2017. 4. 25.(화)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 대구 : 2017. 4. 25.(화)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 대전 : 2017. 4. 27.(목) 대전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6 7	○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역사 이용을 위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실시(2017. 5. 15. ~ 2017. 6. 2.) ○ 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 실시(2017. 6. 27. ~ 2017. 7. 21.) ○ 모니터링 코디네이터 2차 간담회 개최(2017. 6. 12.) ○ 모니터링 2차 사전설명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기 : 2017. 6. 19.(월) 이룸센터 누리홀 · 부산 : 2017. 6. 21.(수) 부산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 울산 : 2017. 6. 19.(월)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장

월	2017년 주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제 : 2017. 6. 27.(화) 거제장애인인권상담센터 회의실 · 창원 : 2017. 6. 20.(수)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회의실 · 광주 : 2017. 6. 19.(월)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 목포 : 2017. 6. 22.(목) 목포시교육지원청 회의실 · 전주 : 2017. 6. 21.(수) 전주시교육지원청 회의실 · 대구 : 2017. 6. 19.(월)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 대전 : 2017. 6. 19.(월) 대전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과제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협조요청 공문 발송 및 개선계획 취합 ○ 2차 과제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협조요청 공문 발송 및 개선계획 취합
9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결과 통계 분석 및 과제별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작성
11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경기 : 2017. 11. 29.(수) PJ호텔 4층 카라이디움A · 부산 : 2017. 12. 1.(금) 국민연금부산회관 디파티 · 광주 : 2017. 12. 1.(금) 광주인권교육센터 · 대구 : 2017. 11. 30.(목) 대구인권교육센터 · 대전 : 2017. 11. 30.(목) 대전인권교육센터

Ⅲ. 모니터링 결과 보고



과제 1.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역사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과제

-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역사 이용을 위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2 모니터링 목적

-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 이용 시 장애인에 대한 시설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차별적 상황을 해소하여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 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3 모니터링 기간

- 2017. 5. 15. ~ 2017. 6. 2. (총 2회 활동)

4 모니터링 대상

- 전국 6개 권역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역사 총 153개소
 - 도시철도·광역전철의 경우 환승역 중심으로 모니터링 실시

〈 지역별 1차 모니터링 대상 기관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도시철도·광역전철	109	24	22	16	16	16	15
철도	44	4	2	9	10	9	10
계	153	28	24	25	26	25	25

5 모니터링 참가자

- 총 153명 참가: 장애인 참가비율 60.8%

〈 장애 유형별 1차 모니터링 참여 현황 〉

(단위: 명)

	합계	비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발달장애	정신	기타
서울	32	11	14	5	2			
경기	26	15	9	1	1			
부산	25	7	16		2			
광주	23	8	15					
대구	25	15	10					
대전	22	4	14	2		1		1
계	153	60	78	8	5	1	0	1
비율	100%	39.2%	51.0%	5.2%	3.3%	0.7%	0%	0.7%

〈2〉 모니터링 추진 방법

1

모니터링 진행 절차

1	모니터링 사전계획 수립
2	지역별 사전설명회 개최
3	모니터링 대상 기관 사전 협조 요청
4	현장 모니터링 실시
5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모니터링 추진 내용

가. 모니터링 사전 계획 수립

- 1차 모니터링 과제 선정
- 모니터링 과제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및 자문
- 모니터링 방법 검토
- 모니터링 대상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역사 선정
- 1차 모니터링 계획 및 사전 설명회 계획안 보고

나. 사전설명회 개최

1) 지역별 사전설명회 개최

지역	일 시	장 소	주관부서
서울·경기	4.25.(화) 14:00 ~ 17:00	이룸센터 이룸홀	장애차별조사1과
부산	4.27.(목) 14:00 ~ 17:00	부산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부산인권사무소
광주	4.25.(화) 14:00 ~ 17:00	광주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사무소
대구	4.25.(화) 14:00 ~ 17:00	대구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대구인권사무소
대전	4.27.(목) 14:00 ~ 17:00	대전인권사무소 인권교육센터	대전인권사무소

2) 사전설명회 주요 내용

- 모니터링 과제 선정 배경 및 관련 규정 설명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교육
-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기관 안내
-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안내(이동 시 안전, 단원증 패용, 모니터링단 조끼 착용 등)

다. 해당기관 협조 요청

- 지역별 담당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모니터링 사업 취지 설명 및 협조 공문 발송)
- 현장 방문 전 대상 기관별로 유선 연락 및 담당자 내정

라.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지역별 5~6월 2회 현장 모니터링 실시

마.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모니터링 단위 : 조별 체크리스트 1부, 개인별 보고서 1부 제출

<3>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1 모니터링 항목

가. 시설 접근성

-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역사 이용 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을 위한 엘리베이터, 통로 및 계단, 안내시설, 장애인 화장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2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 통로 및 계단 유효폭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고객안내센터, 비상통화장치 등에 대한 접근성 •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역사 이용 안내표지 • 승강장의 휠체어 사용자 탑승 구역 안내표지 •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승강장 전면 점형블럭 • 엘리베이터 내부 음성신호장치, 외부 음향장치 • 엘리베이터 내 조작반,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 손잡이, 화장실 출입구, 승강장 위치의 점자표시 • 점자 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등 유도 및 안내설비 •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시스템(비상벨) • 승강장의 차량 접근 시 음성 안내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내·외부 점멸등 •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시스템(경광등) • 대변기 문 사용여부를 알리는 시각적 설비 •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내 문자서비스 가능한 연락처 제공 • 승강장의 차량 접근 시 문자 안내

3

관련 규정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기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대상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4> 모니터링 결과

I. 도시철도·광역전철

1 시설 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통로 및 계단 유효폭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고객안내센터, 비상통화장치 등에 대한 접근성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역사 이용 안내표지 승강장의 휠체어 사용자 탑승 구역 안내표지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승강장 전면 점형블럭 엘리베이터 내부 음성신호장치, 외부 음향장치 엘리베이터 내 조작반,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 손잡이, 화장실 출입구, 승강장 위치의 점자표시 점자 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등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시스템(비상벨) 승강장의 차량 접근 시 음성 안내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엘리베이터 내·외부 점멸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시스템(경광등) 대변기 문 사용여부를 알리는 시각적 설비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내 문자서비스 가능한 연락처 제공 승강장의 차량 접근 시 문자 안내

나. 모니터링 결과

1) 내부시설

① 엘리베이터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	역사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 이동 여부	152	전체 90.8	부분 9.2		0
1-1	엘리베이터 고장 시, 승강장 이동 대체시설 설치 여부	152	11.2	6.6		82.2
2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152	98.7	0	98.7	1.3
2-1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0.3m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150	88	12		
2-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유지 여부	150	97.3	2.7		
3	엘리베이터 내부의 세로조작반, 층수, 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부착 여부	152	98.7	1.3	100	0
4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형 가로형 조작반의 높이 0.85m 내외로 설치 여부	152	90.1	9.9	100	0
5	엘리베이터 내부 점멸등, 음성신호장치 설치 여부	152	92.1	7.9	100	0
6	엘리베이터 내부, 청각장애인이 도움 요청 가능한 문자서비스 연락처 안내여부	152	15.8	71.7		12.5
7	엘리베이터 외부,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여부	152	70.4	29.6	100	0
8	승강장 및 대합실 등 엘리베이터 하차 후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 용이성	152	53.9	13.8	67.8	32.2
9	엘리베이터 미설치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대체시설 설치 여부	14	100	0		0

※ 도시철도·광역전철의 경우 환승역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환승역의 경우 호선수에 따라 각각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음

- 역사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가 모두 설치된 곳은 90.8%였음. 지상↔대합실 또는 대합실↔승강장 중 일부구간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곳은 9.2%였으나 대부분 환승역으로 다른 호선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이동거리가 길더라도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는 있었음. 다만 창동역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지상↔대합실 구간만 설치되어 있고, 대합실↔승강장까지는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동 시 어려움이 있으며, 1호선 승강장에서 탑승해야하는 경우 휠체어리프트를 여러 번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안전상의 위험이 있음. 양동시장역의 경우 비환승역으로 지상↔대합실 구간에 엘리베이터 대신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 시 불편함이 있음.
- 시각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의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98.7%, 미설치율은 1.3%였음. 다만, 엘리베이터의 호출버튼 전면에 0.3m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을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88%로, 12%는 전면간격이 맞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이용 시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설치된 점형블록은 대부분 잘 관리되고 있었으나, 2.7%는 깔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훼손되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내부의 세로조작반과 층수, 통화장치 등 모든 부분의 점자표지 설치율은 98.7%였으며, 일부 부분의 점자표지 설치율은 1.3%였음.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가로형 조작반 설치율은 100%였으나, 그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90.1%로, 9.9%는 높이가 맞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 내부에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과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신호장치가 모두 설치된 비율은 92.1%였으며, 일부만 설치되거나 작동하는 경우는 7.9%였음. 비상상황 시 청각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내부에 문자 서비스가 가능한 연락처가 안내되고 있는 비율은 15.8%에 불과하며, 일반 연락처만 안내하거

나(71.7%) 연락처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12.5%) 비상상황 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고객센터 차원에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청각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 연락처 안내표시를 하도록 하고, 제공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 향후 문자서비스 제공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엘리베이터 외부에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과 음향신호장치가 모두 설치된 비율은 70.4%였으며, 일부만 설치 및 작동되는 비율은 29.6%였음.

- 승강장 및 대합실 등의 엘리베이터에서 하차 후 열차 탑승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가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도록 설치된 비율은 53.9%,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찾기 어려운 비율은 13.8%, 미설치율은 32.2%였음. 안내표지의 설치는 관련 법상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나 역사의 복잡한 구조 상 열차 탑승까지의 이동경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 설치가 필요함.
-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된 구간에는 휠체어리프트 또는 환승역의 경우 다른 호선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사고발생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후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함.



[그림 1] 덮개로 가려져 실제사용이 어려운 엘리베이터 전면 점형블록



[그림 2] 점자표지가 미설치된 휠체어 사용자형 가로형조작반



[그림 3] 일반 연락처만 안내되어있는 엘리베이터 내부



[그림 4] 엘리베이터 하차 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

② 에스컬레이터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0	에스컬레이터 양끝 부분에 수평고정손잡이 1m이상 설치 여부	83	63.9	20.5	84.3	15.7
10-1	에스컬레이터 양끝 수평고정손잡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83	15.7	4.8	20.5	79.5

- 에스컬레이터 끝 부분에 1m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 설치율은 84.3%이며 미설치율은 15.7%임. 또한 손잡이에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설치율은 20.5%였음. 에스컬레이터의 수평고정손잡이 설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상 권장사항이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을 권장하므로 점자표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느끼는 것으로 보임.

③ 통로 및 계단

가) 통로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1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하차 후 승강장 이동시 통로의 높이차이 제거 여부	148	100	0		0
12	통로에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의 설치 여부	148	55.4	17.6	73	27
13	승강장 이동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연속적 설치 여부	148	95.9	3.4	99.3	0.7

-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하차 후 승강장으로 이동시 장애인이 이동가능 하도록 통로의 높이 차이가 제거된 비율은 100%임. 통로에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 설치율은 73%였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연속적으로 설치된 비율은 55.4%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를 고려한 안내표지 설치가 필요함. 시각장애인이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하차 후 승강장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블록이 연속적으로 설치된 비율은 95.9%였으나, 3.4%는 비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점자블록이 훼손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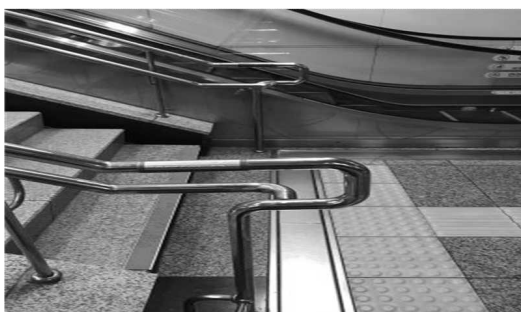
[그림 5, 6]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가 설치된 지하철 역 통로

나) 계단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4	계단 손잡이의 양끝 부분의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136	97.8	2.2	100	0
15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136	100	0	100	0
15-1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 전면 0.3m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136	97.1	2.9		
15-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가능한 상태유지 여부	136	99.3	0.7		

- 계단 손잡이의 양끝부분에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모든 손잡이에 설치된 비율은 97.8%, 일부 손잡이에 설치된 비율은 2.2%였음.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100%였으며, 호출버튼 전면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을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97.1%임. 설치된 점형블록의 99.3%는 훼손되지 않고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대체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계단손잡이의 양끝 부분에 설치된 점자표지판



[그림 8]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 일부구역에만 설치되어 있는 점형블록

2) 안내시설

① 안내 및 유도시설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6	시각장애인이 시설의 배치를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여부	154	68.2	3.2	71.4	28.6
17	고객안내센터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 여부	154	96.1			3.9
18	장애인이 교통시설 이용에 있어 도움요청 가능한 안내서비스의 제공 여부	154	99.4			0.6
18-1	안내서비스의 요청방법의 안내 여부	153	73.9	15.0	88.9	11.1

- 시각장애인이 역사 내의 주요시설 및 위치 등에 알 수 있도록 점자가 병기되어 있는 일반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율은 71.4%였으며, 3.2%는 설치되었으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 음성안내가 되지 않는 등 유지·관리가 미흡하였음. 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객안내센터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설치된 비율은 96.1%였으며, 3.9%는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이 역사 이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역사 내 호출벨 또는 도우미 요청)를 제공하는 역은 99.4%였음. 이 중 연락처 등 안내서비스 요청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역은 73.9%, 찾기 어려운 역은 15%였으며 요청방법을 미제공하는 역은 11.1%였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방법을 찾기 쉽도록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9]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관리가 미흡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식 안내판



[그림 10]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고객안내센터 및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내원 배치

② 경보 피난시설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9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 피난설치의 설치 여부	154	82.5	16.9	99.4	0.6
20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 피난설비의 설치 여부	154	83.1	15.6	98.7	1.3

-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 또는 피난설비 설치율은 99.4%였으며, 연속적으로 설치가 된 역은 82.5%임.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 또는 피난설비 설치율은 98.7%이었으며, 연속적으로 설치가 된 역은 83.1%임.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경보설비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역사의 구조 상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11]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 청각 경보시스템



[그림 12]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시민의 비상벨' 설치

3) 위생시설

① 일반사항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21	승강장 및 대합실 등 엘리베이터 하차 후 장애인 화장실 안내표지 설치 여부	148	76.4	12.2	88.5	11.5
2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장애인용 화장실 접근 방법 안내 제공 여부	133	36.1	8.3	44.4	55.6
23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접근성 확보 여부	148	98.6			1.4
24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여부	153	93.5	3.3	96.7	3.3
25	화장실의 바닥 단차가 2cm 이하 여부	148	100			0
26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에 접근가능하도록 안내 제공 여부	150	98.0	1.3	99.3	0.7
27	일반화장실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150	95.3	1.3	96.7	3.3
27-1	일반화장실 전면 0.3m이상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144	76.4	23.6		
27-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유지 여부	144	97.2	2.8		
28	일반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 1.5m높이에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150	72.7	18.7	91.3	8.7

- 승강장 및 대합실 등 엘리베이터 하차 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의 설치율은 88.5%였으나, 12.2%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찾기 어렵게 설치되어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함.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에 별도의 접근방법 안내가 필요한 경우 안내가 잘 되어 있는 역은 36.1%, 안내가 되어 있으나 찾기 어려운 역은 8.3%, 별도의 안내가 없는 역은 55.6%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화장실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화장실은 대부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98.6%)되었으나, 1.4%는 접근이 어려웠음.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설치된 역은 93.5%이나, 3.3%는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미설치된 3.3%의 경우 환승역으로 다른 호선의 장애인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바닥 단차는 모두 2cm이하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었음.
-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에 접근하는 방법이 점자블록 또는 음성유도기(음성안내)로 안내되고 있는 역은 98%로 설치율이 높았으나, 1.3%의 역은 훼손되거나 작동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일반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이 설치된 역은 96.7%으로 1.3%는 비표준형으로 설치되었고, 미설치된 3.3%는 추가 설치가 필요함. 화장실 전면 0.3m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을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76.4%로, 22.9%는 전면간격이 맞지 않아 설치위치의 조정이 필요함. 설치된 점형블록 중 2.8%는 갈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훼손되어 있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여를 구분하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역은 91.3%였으나, 18.7%는 설치기준인 1.5m의 범위 밖에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그림 13] 전면간격(0.3m)이 맞지 않는 화장실 앞 점형블록



[그림 14] 일반화장실 옆 벽면 1.5m 높이가 맞지 않게 설치된 점자표지판, 설치되어 있으나 문 뒤에 가려져있어 실제 사용이 어려움

② 대변기 및 세면대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29	대변기의 출입문 형태의 적절성	148	96.6			3.4
30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1.4mX1.4m) 확보 여부	148	83.8	12.2		4.1
31	대변기 양옆 수평수직손잡이, 회전식 손잡이 설치 여부	148	95.3	4.7	100	0
32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적 설비 설치 여부	148	95.9	3.4	99.3	0.7
33	비상시 호출벨, 비상통화장치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 접근성 확보 여부	148	83.1	13.5	96.6	3.4
34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 연락처 안내 여부	148	3.4	18.9		77.7
35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높이 0.85m이하, 하단높이 0.65m이상) 설치 및 하부공간 확보 여부	148	85.1	10.8	95.9	4.1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변기 출입문의 적정 설치율은 96.6%였음. 적정하게 설치된 출입문의 종류로는 자동문이 90.7%로 가장 많았고, 내부공간 확보된 여닫이문 2.3%, 미닫이 0.7%였음. 내부공간이 미확보된 안여닫이가 설치된 역은 3.4%로 장애인이 쉽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이 회전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이 1.4m×1.4m 이상 확보된 역은 83.8%였으나, 활동공간이 1.2m×1.2m 미만인 역은 4.1%로 전동휠체어 사용 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대변기 양옆 수평수직손잡이와 회전식 수평손잡이가 모두 설치된 대변기는 95.3%로 적정 설치율이 높음.
- 대변기의 출입문에 청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사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색상과 문자로 시각적 설비를 설치한 역은 95.9%이였으며, 3.4%는 색상으로만 사용여부를 표시하고 있었음. 비상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변기 내 호출벨,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역은 96.6%였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

운 위치에 설치된 역은 13.5%였으며, 미설치된 역은 3.4%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화장실 내부에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가 가능한 연락처가 안내되는 경우는 3.4%에 불과하였으며 일반 연락처만 안내되는 경우가 18.9%, 연락처를 미제공하는 역이 77.7%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면대의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 0.85m이하, 하단높이는 0.65m이상이며 하부는 무릎 및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된 역은 85.1%였으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세면대가 미설치된 역은 4.1%였음.



[그림 15] 전면 활동공간(1.4m×1.4m)이 확보되지 않은 대변기



[그림 16]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높게 설치된 비상통화장치

4) 기타시설

① 승강장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36	승강장 엘리베이터 하차 후 휠체어 사용자 탑승 구역 안내 표지 발견의 용이성	154	63.6	24.7	88.3	11.7
37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역에 안내표지 설치 여부	154	92.2	3.9	96.1	3.9
38	휠체어 사용자 탑승구역 근처에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 설치 여부	154	50	26	76	24
39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설치 여부	154	100	0	100	0
40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차량접근 시 경고/안내시설 설치 여부	154	100	0	100	0
41	승강장 가장자리 0.3m~0.9m 범위내에 점형블록 설치 여부	154	100	0	100	0
42	스크린도어에 승강장 정보에 대한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142	87.3	0.7	88	12
43	휠체어 사용자 탑승 가능한 구역의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 5cm 이하 여부	133	88	0		12
44	휠체어 사용자 탑승 구역의 홈이 곡선인 경우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가장 좁은 곳에 설치 여부	21	81	0		19

-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차량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포함하여 교통약자용 좌석이 설치되어 있음. 휠체어 사용자가 승강장 엘리베이터에서 하차 후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안내 표지 설치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설치율은 88.3%임. 63.6%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도록 설치되었으나, 24.7%는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찾기 어려웠으며 안내표지가 미설치된 곳은 11.7%였음.
- 승강장에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을 표시하는 안내표지는 96.1%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3.9%는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찾기 어려웠으며, 안내표지가 미설치되어 있는 역도 3.9%였음. 안내표지 설치위치는 바닥이 46.3%로 가장 많았고, 스크린도어 44.8%, 벽 8.9%였음. 또한 열차에서 하차 시 역사 외부로 이동이 편리하도록 휠체어 사용자 탑승구역 근처에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

표지는 76%만 설치되어 있었으며, 26%는 일부구역에 설치 또는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찾기 어려웠음.

- 승강장에 낙하 사고 예방 등 안전을 위하여 모든 역에 스크린 도어 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스크린 도어 설치율은 92.2%, 안전펜스 설치율은 7.8%임. 시·청각 장애인에게 차량 접근 시 안내할 수 있도록 음성 및 문자 안내 서비스 시설은 모든 역에서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승강장의 점형블록도 가장자리 0.3~0.9m 범위 내에 모두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음.
- 승강장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자 표지판이 모든 승강장의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역은 87.3%이나, 일부 승강장에만 설치되거나(0.7%) 미설치된 역(12%)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개선이 필요함.
-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의 흠이 직선인 경우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5cm이하이거나 탑승을 위한 상시적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이 88%이나, 12%는 간격이 5cm 이상임에도 별도 서비스 제공이 없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과 탑승 시 어려움이 예상됨.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의 흠이 곡선인 경우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가장 좁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상시적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역은 81%이나, 19%는 간격이 넓음에도 별도 서비스 제공이 없으므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안전발판 서비스 등 별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그림 17] 바닥에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된 휠체어 사용자 탑승 구역 안내표지



[그림 18] 휠체어 사용자 탑승구역 근처에 설치된 역 이용 안내표지



[그림 19]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5cm이상이나 별도 서비스 미제공

② 환승시설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45	열차의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에서 하차 후 환승안내표지 발견의 용이성	90	94.4	5.6	100	0
46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환승 경로 안내 여부	90	55.6	4.4	60	40
47	환승 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90	90	10	100	0
47-1	위 편의시설이 고장 난 경우 환승을 위한 대체시설 설치 여부	90	6.7	11.1		82.2
48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환승 경로를 점자블록 또는 음성유도기로 안내 여부	90	96.7	2.2	98.9	1.1

- 환승구간이 있는 경우 쉽게 환승할 수 있도록 열차의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에서 하차 후 환승안내표지 설치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탑승 구역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환승안내표지가 찾기 쉽도록 설치되어 있는 역은 94.4%이며, 일부 구역에 설치 또는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찾기 어려운 역은 5.6%임.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환승 시 별도의 환승 경로 안내가 필요한 경우 환승경

로에 대한 안내가 잘 되어있는 역은 55.6%, 안내가 되어 있으나 찾기 어려운 역이 4.4%,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안내가 없는 역이 40%로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의 역사 특성상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안내표지가 좀 더 설치될 필요가 있음.

- 환승 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의 시설 설치율은 엘리베이터가 90%, 휠체어 리프트가 10%였음.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사고발생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함. 환승을 위한 이동편의시설이 고장난 경우, 환승을 위한 대체시설이 미설치된 역이 82.2%로 대체시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환승 경로를 점자블록 또는 음성유도기로 안내하고 있는 역은 96.7%였으며, 설치하였으나 훼손 또는 작동이 불량한 역이 2.2%, 미설치한 역이 1.1%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그림 20]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 근처에 설치된 환승안내표지



[그림 21]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환승안내표지

II. 철도

1 시설 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내용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의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통로 및 계단 유효폭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고객안내센터, 비상통화장치 등에 대한 접근성 휠체어 사용자를 고려한 역사 이용 안내표지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승강장 전면 점형블럭 엘리베이터 내부 음성신호장치, 외부 음향장치 엘리베이터 내 조작반,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 손잡이, 화장실 출입구, 승강장 위치의 점자표시 점자 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등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시스템(비상벨) 승강장의 차량 접근 시 음성 안내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엘리베이터 내·외부 점멸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시스템(경광등) 대변기 문 사용여부를 알리는 시각적 설비 엘리베이터 및 화장실 내 문자서비스 가능한 연락처 제공 승강장의 차량 접근 시 문자 안내

나.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1) 내부시설

① 엘리베이터

(단위: %, (개))

번호	세부 점검사항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	역사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 이동 여부	30	전체 100	부분 0		0	
1-1	엘리베이터 고장 시, 승강장 이동 대체시설 설치 여부	30	0	0		100	
2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30	100	0	100	0	
2-1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0.3m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30	86.7	13.3			
2-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유지 여부	30	96.7	3.3			
3	엘리베이터 내부의 세로조작반, 층수, 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부착 여부	30	100	0	100	0	
4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형 가로형 조작반의 높이 0.85m 내외로 설치 여부	30	76.7	20	96.7	3.3	
5	엘리베이터 내부 점멸등, 음성신호장치 설치 여부	30	73.3	26.7	100	0	
6	엘리베이터 내부, 청각장애인이 도움 요청 가능한 문자서비스 연락처 안내여부	30	26.7	53.3		20	
7	엘리베이터 외부,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여부	30	73.3	20	93.3	6.7	
8	승강장 및 대합실 등 엘리베이터 하차 후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 용이성	30	26.7	26.7	53.3	46.7	
9	엘리베이터 미설치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대체시설 설치 여부						

- 역사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층간이동이 필요한 철도역사 30개에 대해 장애인이 이동 가능하도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철도역사에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었음.

- 시각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의 설치율은 100%임. 엘리베이터의 호출버튼 전면에 0.3m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을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86.7%로, 13.3%는 전면간격이 맞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이용 시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설치된 점형블록은 대부분 잘 관리되고 있었으나, 3.3%는 깔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훼손되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내부의 세로조작반과 층수, 통화장치 등 모든 부분의 점자표지 설치율은 100%로 잘 관리되고 있었음.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가로형 조작반 설치율은 96.7%로, 그 높이가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76.7%, 20%는 높이가 맞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 내부에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과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신호장치가 모두 설치된 비율은 73.3%였으며, 일부만 설치되거나 작동하는 경우는 26.7%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비상상황 시 청각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내부에 문자 서비스가 가능한 연락처가 안내되고 있는 비율은 26.7%이며, 일반 연락처만 안내하거나(53.3%) 연락처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20%) 비상상황 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엘리베이터 외부에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과 음향신호장치가 모두 설치된 비율은 73.3%였으며, 일부만 설치 및 작동되는 비율은 20%, 미설치율은 6.7%로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승강장 및 대합실 등의 엘리베이터에서 하차 후 열차 탑승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가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도록 설치된 비율은 26.7%, 설치되었으나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찾기 어려운 비율은 26.7%, 미설치율은 46.7%였음. 안내표지의 설치는 관련 법상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나 철도역사의 경우 차량 탑승 승강장이 많고 복잡한 구조 상 열차 탑승까지의 이동경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 설치가 필요함.



[그림 1]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에 설치되지 않은 점형블록



[그림 2]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진입통로가 좁은 엘리베이터

② 에스컬레이터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0	에스컬레이터 양끝 부분에 수평고정손잡이 1m이상 설치 여부	23	52.2	26.1	78.3	21.7
10-1	에스컬레이터 양끝 수평고정손잡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23	4.3	0	4.3	95.7

- 에스컬레이터 끝 부분에 1m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 설치율은 78.3%이며 미설치율은 21.7%임. 또한 손잡이에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설치율은 4.3%에 불과하였음. 이는 에스컬레이터의 수평고정손잡이 설치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상 권장사항이고,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한 이동을 위해 엘리베이터 사용을 권장하므로 점자표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느끼는 것으로 보임.

③ 통로 및 계단

가) 통로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1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하차 후 승강장 이동시 통로의 높이차이 제거 여부	23	100	0		0
12	통로에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의 설치 여부	23	43.5	30.4	73.9	26.1
13	승강장 이동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연속적 설치 여부	23	91.3	8.7	10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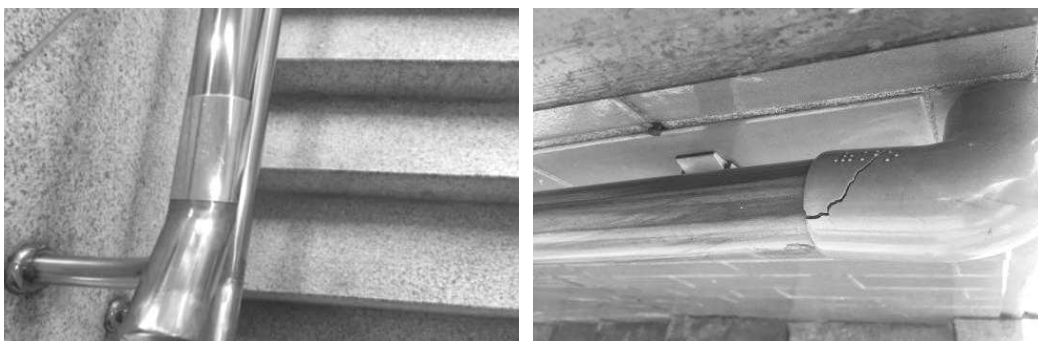
-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하차 후 승강장으로 이동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동가능 하도록 통로의 높이 차이가 제거된 비율은 100%임. 통로에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 설치율은 73.9%였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연속적으로 설치된 비율은 43.5%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역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표지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 시각장애인이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하차 후 승강장으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블록이 연속적으로 설치된 비율은 91.3%였으나, 8.7%는 비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점자블록이 훼손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나) 계단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4	계단 손잡이의 양끝 부분의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22	81.8	18.2	100	0
15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22	100	0	100	0
15-1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 전면 0.3m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22	77.3	22.7		
15-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가능한 상태유지 여부	22	100	0		

- 계단 손잡이의 양끝부분에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모든 손잡이에 설치된 비율은 81.8%, 일부 손잡이에 설치된 비율은 18.2%였음.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의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100%였으며, 호출버튼 전면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을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77.3%으로, 22.7%는 설치위치의 조정이 필요함. 설치된 점형블록은 모두 훼손되지 않고 상태가 유지되고 있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4] 설치되었으나 훼손되어있는 점자블록

2) 안내시설

① 안내 및 유도시설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6	시각장애인이 시설의 배치를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여부	44	84.1	4.5	88.6	11.4
17	고객안내센터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 여부	44	88.6			11.4
18	장애인이 교통시설 이용에 있어 도움요청 가능한 안내서비스의 제공 여부	44	90.9			9.1
18-1	안내서비스의 요청방법의 안내 여부	40	65	22.5	87.5	12.5

- 시각장애인이 역사 내의 주요시설 및 위치 등에 알 수 있도록 점자가 병기되어 있는 일반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율은 88.6%였으며, 4.5%는 유지·관리가 미흡하였음. 역에 설치되어 있는 고객안내센터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설치된 비율은 88.6%였으며, 11.4%는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이 역사 이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역사 내 호출벨 또는 도우미 요청)를 제공하는 역은 90.9%였음. 이 중 연락처 등 안내서비스 요청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역은 65%, 제공하나 찾기 어려운 역은 22.5%였으며, 요청방법을 미제공하는 역은 12.5%였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장애인이 서비스를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5] 주출입구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지도식 안내판

② 경보 피난시설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9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 피난설치의 설치 여부	44	54.5	31.8	86.4	13.6
20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 피난설비의 설치 여부	44	52.3	29.5	81.8	18.2

-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 또는 피난설비 설치율은 86.4%였으며, 연속적으로 설치가 된 역은 54.5%임.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 또는 피난설비 설치율은 81.8%이었으며, 연속적으로 설치가 된 역은 52.3%임.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위한 경보설비는 규모가 크고 복잡한 역사의 구조 상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6, 7] 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스템

3) 위생시설

① 일반사항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21	승강장 및 대합실 등 엘리베이터 하차 후 장애인 화장실 안내표지 설치 여부	43	72.1	20.9	93	7
2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장애인용 화장실 접근 방법 안내 제공 여부	43	58.1	7	65.1	34.9
23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접근성 확보 여부	43	100			0
24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여부	44	95.5	2.3	97.7	2.3
25	화장실의 바닥 단차가 2cm 이하 여부	43	100			0
26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에 접근가능하도록 안내 제공 여부	44	90.9	2.3	93.2	6.8
27	일반화장실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44	90.9	0	90.9	9.1
27-1	일반화장실 전면 0.3m이상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40	80	20		
27-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유지 여부	40	100	0		
28	일반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 1.5m높이에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44	38.6	50	88.6	11.4

- 승강장 및 대합실 등 엘리베이터 하차 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의 설치율은 93%였으나, 20.9%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거나 찾기 어렵게 설치되어있어 일부 개선이 필요함.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에 별도의 접근방법 안내가 필요한 경우 안내가 잘 되어 있는 역은 58.1%, 안내가 되어 있으나 찾기 어려운 역은 7%, 별도의 안내가 없는 역은 34.9%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화장실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설치된 역은 95.5%이나, 2.3%는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미설치된 2.3%의 경우 철도역사 내 장애인 화장실은 없으나, 같은 건물의 도시철도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 가능함.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바닥 단차는 모두 2cm이하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었음.
-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에 접근하는 방법이 점자블록 또는 음성유도기(음성안내)로 안내되고 있는 역은 93.2%였으나, 2.3%의 역은 훼손되거나 작동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일반화장실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이 설치된 역은 90.9%로 미설치된 9.1%는 추가 설치가 필요함. 화장실 전면 0.3m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을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은 80%로, 20%는 전면간격이 맞지 않아 설치 위치의 조정이 필요하며, 설치된 점형블록은 모두 훼손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었음.
-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여를 구분하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역은 88.6%였으나, 50%는 설치기준인 1.5m의 범위 밖에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그림 8] 화장실 전면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미설치



[그림 9] 설치되어 있으나 적정 높이(1.5m)가 맞지 않는 점자표지판

② 대변기 및 세면대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29	대변기의 출입문 형태의 적절성	43	100			0
30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1.4mX1.4m) 확보 여부	43	74.4	14		11.6
31	대변기 양옆 수평수직손잡이, 회전식 손잡이 설치 여부	43	83.7	16.3	100	0
32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적 설비 설치 여부	43	90.7	4.7	95.3	4.7
33	비상시 호출벨, 비상통화장치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 접근성 확보 여부	43	90.7	7	97.7	2.3
34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 연락처 안내 여부	43	4.6	14		81.4
35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높이 0.85m이하, 하단높이 0.65m이상) 설치 및 하부공간 확보 여부	43	83.7	16.3	100	0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변기 출입문의 적정 설치율은 100%였음. 적정하게 설치된 출입문의 종류로는 자동문이 90.7%로 가장 많았고, 내부공간 확보된 여닫이문 7%, 미닫이 2.3%였음.
-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이 회전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이 1.4m×1.4m 이상 확보된 역은 74.4%였으나, 활동공간이 1.2m×1.2m 미만인 역은 11.6%로 전동휠체어 사용 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대변기 양옆 수평수직손잡이와 회전식 수평손잡이가 모두 설치된 대변기는 83.7%로 일부 미설치된 16.3%도 추가 설치가 필요함.
- 대변기의 출입문에 청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사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색상과 문자로 시각적 설비를 설치한 역은 90.7%이였으며, 4.7%는 색상으로만 사용여부를 표시하고 있었으며 미설치한 경우도 4.7%였음. 비상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변기 내 호출벨, 비상통화장치가 설치된 역은 97.7%였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된 역은 7%였으며, 미설치된 역은

2.3%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화장실 내부에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문자서비스가 가능한 연락처가 안내되는 경우는 4.6%에 불과하였으며 일반 연락처만 안내되는 경우가 14%, 연락처를 미제공하는 역이 81.4%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면대의 적정 설치율은 83.7%였으며, 16.3%의 경우 세면대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하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10, 11] 전면 활동공간(1.4m×1.4m)이 확보되지 않은 대변기

4) 기타시설

① 승강장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36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차량접근 시 경고/안내시설 설치 여부	44	65.9	6.8	72.7	27.3
37	승강장 가장자리 0.3m~0.9m 범위내에 점형블록 설치 여부	44	88.6	4.5	93.2	6.8
38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의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 5cm 이하 여부	44	95.5	2.3	97.7	2.3

-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철도차량에는 교통약자용 좌석을 설치해야 하는 바 일반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의 경우 열차편성당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4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고속철도의 경우 열차편성당 수동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을 3개 이상 설치하고 전동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설치하여야 함.
- 따라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열차 탑승 시 여객열차의 종류(무궁화, 새마을, KTX, KTX-산천 등) 및 편성(4량~18량)에 따라 승차위치가 다르므로 차량에 휠체어 사용자 탑승 구역 안내 표시를 하고 승강장에는 별도의 안내표시를 설치하지 않고 있음. 대신 직원이 직접 승차위치를 안내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등 승강설비를 조작하여 승차를 돕고 있음.
- 또한 철도의 경우 열차 종류별로 승차위치가 달라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설치 시 시설물과 출입문의 위치가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별도 설치하지 않고 있었음.
- 시·청각 장애인에게 차량 접근 시 안내할 수 있도록 음성 및 문자 안내 서비스 시설은 65.9% 역에서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6.8%는 비연속적으로 설치되거나 27.3%는 미설치되어 추가 설치가 필요함. 승강장의 점형블록은 88.6%

의 역은 가장 자리 0.3~0.9m 범위 내에 모두 적정하게 설치되었으나, 4.5%는 전면간격이 맞지 않거나 6.8%는 미설치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의 흠이 직선인 경우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5cm이하이거나 탑승을 위한 상시적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은 95.5%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철도차량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휠체어리프트 등 승강설비 이용이 필요하므로 직원들이 탑승을 지원하고 있음.



[그림 12]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철도 탑승을 위한 휠체어리프트



[그림 13]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철도 탑승을 위한 인적서비스 제공

<5> 모니터링 총평

1 도시철도·광역전철

가. 시설 접근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¹⁾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 제4항에서는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관련 [별표2]에서 도시철도·광역전철 역사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로 매개시설(주출입구 등), 내부시설(통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 위생시설(대변기, 세면대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 설비, 그 밖의 시설(승강장 등))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도시철도·광역전철 역사에서는 장애인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시설들의 접근성을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음.
- 우리 위원회가 2017. 5. 15.~6. 2. 전국 6개 권역의 도시철도 및 광역전철 109개 역에서의 장애인 시설접근성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부분의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어 역사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이동 할 수 있었음. 그러나 아직도 휠체어리프트를 통해 승강장까지 이동을 해야하는 역사가 있는 바, 장애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고예방 등 안전을 위해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도록 해야할 것임.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여가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 역은 93.5%로 높았으나, 3.3%는 남·여 공용으로 설치, 3.3%는 미설치되었음. 미설치된 역은 환승역으로 다른 호선의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을 위해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설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또한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1.4m×1.4m)을 확보한 역은 83.8%이며, 1.2m×1.2m 미만의 활동공간을 확보한 역은 4.1%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승강장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95% 이상으로 높으나, 전면 0.3m이상의 간격을 두지 않고 설치한 경우가 10~20% 정도 있어 시각장애인에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일반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 여 구분 점자표지판을 설치한 경우는 91.3%였으나, 18.7%는 설치위치가 1.5m에 맞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상황 발생을 알려주는 경보시스템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의 설치율이 각각 99.4%, 98.7%로 높았으나, 규모가 크고 복잡한 역사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각각 16.9%, 15.6%는 비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보시스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 또한 화장실 내 호출벨, 비상통화장치의 설치율은 96.6%이나, 13.5%는 높이 설치되어 있는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엘리베이터 내부, 화장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청각장애인이 비상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자 서비스가 가능한 연락처가 안내되고 있는 경우는 각각 15.8%, 3.4%에 그치고, 일반 연락처만 안내되고 있는 경우는 각각 71.7%, 18.9%, 연락처가 없는 경우는 각각 12.5%, 77.7%로 비상상황 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일부 도시철도·광역전철의 경우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문자서비스가 가능한 연락처를 이미 제공하고 있기에 엘리베이터 내부 등에 추가로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함.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복잡하고 규모가 큰 역사 내에서 열차에 빠르고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 설치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엘리베이터 하차 후, 통로 등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도록 설치된 경우는 각각 53.9%, 55.4%에 불과하였음. 또한 승강장 엘리베이터 하차 후 휠체어 사용자 탑승 구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도록 설치된 경우는 63.6%였음.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승강장에 휠체어 사용자 탑승 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한 경우는 96.1%였으나, 3.9%는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크기가 작아 찾기 어려웠으며, 미설치한 경우도 3.9%였음. 도시철도·광역전철의 운영 주체가 열차 호선마다 다르다 보니 휠체어석 및 안내표지 설치 위치가 각각 다른 바, 안내표지 설치위치는 바닥이 46.3%로 가장 많았고 스크린도어 44.8%, 벽 8.9%였음. 또한 휠체어 사용자는 환승 시 엘리베이터 또는 경사로 이동 등 별도의 환승 경로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안내가 잘되어 있는 경우는 55.6%에 불과하였으며 40%는 안내방법이 없었음. 따라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역사 내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표지 제공이 필요하며, 안내표지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눈에 띄도록 제공하고 운영주체가 다르더라도 통일성 있게 제공하도록 개선해나가야 할 것임.

- 승강장에는 사고예방 등 안전을 위하여 스크린 도어 또는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스크린도어 설치율은 92.2%, 안전펜스 설치율은 7.8%로 시각장애인은 스크린도어가 없는 경우 추락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스크린도어 설치가 필요함. 또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장애인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은 5cm 이내로 하여야 하며, 홈이 곡선인 경우에는 가장 간격이 좁은 위치에 장애인용 승강장을 설치해야 함. 간격이 넓은 경우에는 별도의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승강장과 차량 간 간격 및 단차를 보완해주어야 함. 휠체어 사용자 탑승 구역의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간격이 5cm 이상이거나, 홈이 곡선인 경우 간격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각각 12%, 19%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차량 탑승 시 위험할 수 있음. 따라서 안전발판서비스 등 간격 및 단차를 보완하기 위한 상시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나아가 별도 서비스 제공 없이도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할 수 있도록 차량을 연구·개발 하는 것이 필요함.

나. 소결

- 도시철도·광역전철의 경우 자가용을 제외하고 버스와 함께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임. 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율은 증가하고 있고 역사 시설 전반적으로 접근성은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 장애인 화장실, 점형블록 등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 있음. 또한 장애인의 편리한 도시철도·광역전철 이용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와 함께 안내표지의 설치 및 개선도 필요함. 향후 도시철도·광역전철의 운영 주체는 자체적으로 장애인 등이 열차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의 이동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임.

< 개선이 필요한 사항 >

○ 시설 접근성

- 엘리베이터 외부에 도착 등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신호장치 동작
-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유도·안내 설비 설치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스템(비상벨·경광등)의 연속적 설치
- 엘리베이터, 계단, 일반화장실 등 점형블록의 전면 0.3m 간격 확보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설치
-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1.5m 높이에 설치
-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1.4m×1.4m) 확보
- 비상 시 호출벨, 비상통화장치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 접근성 확보
- 휠체어 사용자 탑승구역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넓은 경우 상시적 별도 서비스 제공
- 장애인의 편리한 도시철도·광역전철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 설치

2

철도

가. 시설 접근성

- 우리 위원회가 2017. 5. 15.~ 6. 2. 전국 6개 권역의 철도 44개 역에서의 장애인 시설 접근성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든 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승강장

까지 이동할 수 있었으나 엘리베이터 외부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중 일부만 설치·작동되는 경우가 20%, 미설치된 경우가 6.7%로 시·청각 장애인의 엘리베이터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음.

-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여가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 역은 95.5%로 높았으나, 2.3%는 남·여 공용으로 설치, 2.3%는 미설치되었음. 미설치된 역의 경우 같은 건물의 도시철도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장애인이 화장실 이용을 위해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 설치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1.4m×1.4m)을 확보한 역은 74.4%이며, 1.2m×1.2m 미만의 활동공간을 확보한 역은 11.6%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활동공간이 좁아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계단, 화장실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90% 이상으로 높으나, 전면 0.3m이상의 간격을 두지 않고 설치한 경우가 10~20% 정도 있어 시각장애인에게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일반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 여 구분 점자표지판을 설치한 경우는 88.6%였으나, 50%는 설치위치가 1.5m에 맞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상황 발생을 알려주는 경보시스템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의 설치율이 각각 86.4%, 81.8%로 높았으나, 규모가 크고 복잡한 역사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각각 31.8%, 29.5%는 비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보시스템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 또한 화장실 내 호출벨, 비상통화장치의 설치율은 97.7%이나, 7%는 높이 설치되어 있는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엘리베이터 내부, 화장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청각장애인이 비상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자 서비스가 가능한 연락처가 안내되고 있는 경우는 각각 26.7%, 4.6%에 그치고, 일반 연락처만 안내되고 있는 경우는 각각 53.3%, 14%, 연락처가 없는 경우는 각각 20%, 81.4%로 비상상황 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문자 서비스가 가능한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복잡하고 규모가 큰 역사 내에서 열차에 안전하게 탑승하고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 설치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엘리베이터 하차 후 통로 등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도록 설치된 경우는 각각 26.7%, 43.5%에 불과하였음. 주요 철도역사의 경우 열차 방향에 따라 승강장이 다수이고 역사의 규모가 매우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역사 내의 이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표지 제공이 필요하며, 안내표지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눈에 띄도록 제공해야함.
- 철도열차의 경우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차량에 휠체어석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여객열차의 종류(무궁화, 새마을, KTX, KTX-산천 등) 및 편성(4량~18량)에 따라 승차위치가 다르므로 차량에 휠체어 사용자 탑승 구역 안내 표시를 하고 승강장에는 별도의 안내표시를 설치하지 않음. 대신 직원이 직접 승차 위치를 안내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등 승강설비를 조작하여 승차를 돕고 있었으며,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설치도 열차 종류별로 승차위치가 달라 설치 시 시설물과 출입문의 위치가 겹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별도 설치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철도 승강장에도 사고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승강장에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나. 소결

- 철도는 장애인의 시외 이동을 위해 자가용 외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역사의 접근성은 점점 개선되고 있으나 장애인 화장실, 점형블록, 점자표지판 등 아직도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 있음. 또한 규모가 크고 복잡한 철도역사의 특성 상 장애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을 위해 안내표지의 설치 및 개선도 필요하며, 휠체어 사용자 탑승 구역 안내 및 탑승을 위한 인적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향후 철도의 운영 주체가 자체적으로 장애인 등이 철도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는지를 모니터링 하고, 접근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임.

< 개선이 필요한 사항 >

○ 시설 접근성

- 엘리베이터 내부 휠체어 사용자형 가로형 조작반의 위치 조정
- 엘리베이터 외부에 도착 등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신호장치 동작
-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유도·안내 설비 설치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스템(비상벨·경광등)의 연속적 설치
- 엘리베이터, 계단, 일반화장실 등 점형블록의 전면 0.3m 간격 확보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설치
-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1.5m 높이에 설치
-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1.4m×1.4m) 확보
- 비상 시 호출벨, 비상통화장치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 접근성 확보
- 장애인의 편리한 철도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 설치

[붙임 1]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 역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기 본 사 항	
1. 역이름 : [] <input type="checkbox"/> 도시(광역)철도(호선) <input type="checkbox"/> 환승역(호선, 호선, 호선) <input type="checkbox"/> 철도	2. 역 담당자(연락처) : [] [- -]
3. 모니터링 지역 :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대전	4. 소속 : [] 조
5. 모니터링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 엘리베이터 위치 : [] 호선 []번 출구, [] 호선 []번 출구 ■ 지상 에스컬레이터 위치: [] 호선 []번 출구, [] 호선 []번 출구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내부시설						
엘리베이터						
역사 외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9번으로)						
엘리베이터 호수 및 설치 위치: (호기) (설치위치: 호선 출구)						
내 부 시 설 엘 리 베 이 터	1	역사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이 가능합니까?	지상 ↔대합실 설치	/	미설치	
			대합실 ↔승강장 설치	/	미설치	
	1-1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승강장으로 이동을 위한 대체시설이 있습니까?	대체시설이 있어 승강장으로 이동 가능 ☞ 참고	대체시설이 있으나 일부구간만 이동 가능 ☞ 참고	대체시설 없음	대체시설의 종류 이동가능한 구간
	2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에 점형블록이 표준형(0.3m×0.3m)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표준형 (0.3m×0.3m)	비표준형	미설치 ☞ 3번 이동	
	2-1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에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면 간격 0.3m을 두고 설치	전면 간격이 맞지 않음	/	
	2-2	설치된 점형블록은 훼손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형태유지	갈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훼손	/	
	3	엘리베이터 내부의 세로조작반·층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 점자표지판 부착	일부 부분만 점자표지판 부착	미부착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내부 시설	엘리베이터	4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형 가로형 조작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0.8 ~ 0.9m에 설치	0.8m미만 또는 0.9m초과	미설치	
		5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점멸등, 음성신호장치 모두 설치 및 작동	점멸등, 음성신호장치 중 일부만 설치 및 작동	미설치	
		6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청각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자 서비스가 가능한 연락처가 안내되고 있습니까?	문자서비스 가능한 연락처가 안내	일반 연락처만 안내	미제공	※ 사진첨부
		7	엘리베이터 외부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점멸등, 음향신호장치 모두 설치 및 작동	점멸등, 음향신호장치 중 일부만 설치 및 작동	미설치	
		8	승강장 및 대합실 등 엘리베이터 하차 후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도록 설치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찾기 어려움	미설치	※ 사진첨부
		9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역사 외부에서 승강장으로 이동을 위한 대체시설이 있습니까?	대체시설이 있어 승강장으로 이동 가능 ☞ 참고	대체시설이 있으나 일부구간만 이동 가능 ☞ 참고	대체시설 없음	대체시설의 종류 이동가능한 구간
		에스컬레이터					
		역사 외부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 해당(☞11번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 위치 : ()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10	에스컬레이터 양끝부분에 수평고정손잡이가 1m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양끝부분에 수평고정손잡이 1m이상 설치	한쪽면만 설치 또는 1m미만 설치	미설치		
	10-1	에스컬레이터 양끝 수평고정손잡이에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에스컬레이터 양끝 수평고정손잡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에스컬레이터 편측 수평고정손잡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미설치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내부 시설	통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하차 후 승강장까지 이동 시 통로를 지나갑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14번으로)					
	통로 위치 : ()					
	11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하차 후 승강장으로 이동 시 통로는 높이 차이가 제거되어 있습니까?	단차 2cm이하 또는 1/12이하 경사로 설치	단차 2cm초과로 1/12초과 경사로 설치	단차 2cm초과	
	12	통로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연속적으로 설치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비연속적으로 설치	미설치	※ 사진첨부
	13	시각장애인이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하차 후 승강장으로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점자블록이 연속적으로 설치	비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거나, 점자블록 훼손	미설치	
	계단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하차 후 승강장까지 이동 시 계단을 지나갑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16번으로)					
	계단 위치 : ()					
	14	계단 손잡이의 양끝부분에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든 손잡이 양끝부분에 점자표지판 설치	일부 손잡이 양끝부분에 점자표지판 설치	미설치	
	15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에 점형블록이 표준형(0.3m×0.3m)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표준형 (0.3m×0.3m)	비표준형	미설치	
	15-1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에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점에 전면 간격 0.3m을 두고 설치	일부에만 설치 또는 전면 간격이 맞지 않음		
	15-2	설치된 점형블록은 훼손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형태유지	깔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훼손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안내시설						
안내 및 유도 시설	안내 및 유도시설					
	16	주출입구에는 시각장애인이 해당 시설의 주요시설 및 위치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점자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점자안내판 설치 또는 일반안내도에 점자안내가 병기되어 있음	일반안내도에 점자안내가 병기되어 있으나, 유지·관리가 미흡함	미설치	점자안내판 설치위치 ※ 사진첨부
	17	고객안내센터(역무실)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접근 가능		장애인 접근 어려움	
	18	장애인이 교통시설 이용에 있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역사 내 호출벨 또는 도우미 요청)가 제공되고 있습니까?	제공		미제공	서비스의 종류
	18-1	안내서비스는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연락처 등 요청방법이 역사 내에서 쉽게 안내되고 있습니까?	쉽게 찾을 수 있음	쉽게 찾기 어려움	미제공	※ 사진첨부
경보 피난시설						
경보 피난 시설	19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시스템(비상벨)·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설치	설치하였으나, 연속성 떨어짐	미설치	
	20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설치	설치하였으나, 연속성 떨어짐	미설치	
위생시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 해당(☞37번으로)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 해당(☞27번으로)						
위생 시설	일반사항					
	21	승강장 및 대합실 등 엘리베이터 하차 후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안내표지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도록 설치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찾기 어려움	미설치	※ 사진첨부
	2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장애인용 화장실에 별도의 접근방법 안내가 필요한 경우 안내하고 있습니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안내가 잘 되어있음	안내가 되어 있으나, 찾기 어려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안내방법 없음	※ 사진첨부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위생시설	일반사항	23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접근하기 편한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장애인 접근 가능	/	장애인 접근 어려움	
		24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여 구분하여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여 구분하여 각각 1개 설치	남·여 공용으로 1개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미설치	
		25 화장실의 바닥 단차가 2cm이하 인니까?	단차 2cm이하	/	단차 2cm초과	
		26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에 접근하는 방법이 점자블록 또는 음성유도기(음성안내)로 안내되어 있습니까?	점자블록 또는 음성으로 안내하고 있음	설치하였으나 훼손 또는 작동 불량	미제공	<input type="checkbox"/> 점자블록 <input type="checkbox"/> 음성유도기
		27 일반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이 표준형(0.3m×0.3m)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표준형 (0.3m×0.3m)	비표준형	미설치	
		27-1 일반 화장실에 전면 0.3m 이상 간격을 두고 떨어져 점형블록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면 간격 0.3m을 두고 설치	전면 간격이 맞지 않음	/	
		27-2 설치된 점형블록은 훼손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형태유지	갈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훼손	/	
		28 일반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여를 구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여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 1.5m높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남·여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에 점자표지판 설치	점자표지판 미설치	
대변기	대변기					
	29 대변기의 출입문 형태가 적절하게 되어있습니까?	적정  참고	/	내부공간 미확보된 안여단이	<input type="checkbox"/> 자동문 <input type="checkbox"/> 미단이 <input type="checkbox"/> 내부공간 확보된 여단이	
	30 대변기의 전면에 회전을 위한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2m×1.2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2m×1.2m 미만의 활동공간 확보		
	31 대변기의 한쪽에는 수평수직손잡이가, 다른 한쪽에는 회전식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두 설치	일부만 설치	미설치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위생시설	대변기	32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적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표시	색상으로 사용여부 표시	미설치	
		33	비상시 호출벨, 비상통화장치가 휠체어 사용 장애인도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 어려움	미설치	
		34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자 서비스가 가능한 연락처가 안내되고 있습니까?	문자서비스 가능한 연락처가 안내	일반 연락처만 안내	미제공	※ 사진첨부
	세면대	세면대					
35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0.85m이하, 하단높이는 0.65m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적정 설치기준 만족	적정 설치기준 만족 ▶ 참고	장애인 이용가능 세면대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세면대 높이 미준수 <input type="checkbox"/> 하부공간 미확보	
기타시설	기타시설						
	승강장						
	승강장 위치: () 방향						
	승강장	36	승강장 엘리베이터에서 하차 후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 안내표지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도록 설치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찾기 어려움	미설치	※ 사진첨부
		37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휠체어 사용자의 승차 위치)에는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든 구역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도록 설치	일부구역에 설치 또는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찾기 어려움	미설치	안내표지 설치위치 <input type="checkbox"/> 바닥 <input type="checkbox"/> 스크린도어 <input type="checkbox"/> 벽 ※ 사진첨부
38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 근처(벽면이나 기둥)에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든 구역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도록 설치	일부구역에 설치 또는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찾기 어려움	미설치	※ 사진첨부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승강장	39	승강장에는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스크린도어 또는 1.1~1.5m 안전펜스 설치 ☞ 참고	1.1m미만의 안전펜스 설치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스크린도어 <input type="checkbox"/> 안전펜스
	40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차량 접근 시 경고/안내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음성 및 문자 안내 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	음성 및 문자 안내 설비가 비연속적으로 설치	미설치	
	41	승강장 가장자리 0.3~0.9m 범위 내에 접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0.3~0.9m 사이에 설치	간격이 맞지 않음	미설치	
	42	승강장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자표지판이 스크린도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든 승강장에 점자표지판 설치	일부 승강장에만 점자표지판 설치	미설치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의 흠이 직선입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44번으로) 곡선입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45번으로)					
기타 시설	43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의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5cm이하입니까?	모든 구역이 5cm 이하 또는 상시적 별도서비스 제공	일부 구역만 5cm 이하 또는 상시적 별도서비스 제공	간격이 5cm 이상이나, 별도 서비스 없음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input type="checkbox"/> 안전발판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44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의 흠이 곡선인 경우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가장 좁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든 구역이 가장 좁은 위치에 설치 또는 상시적 별도서비스 제공	일부 구역만 가장 좁은 위치에 설치 또는 상시적 별도서비스 제공	간격이 넓으나, 별도 서비스 없음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input type="checkbox"/> 안전발판 서비스 <input type="checkbox"/> 기타
환승 시설	환승시설					
	환승구간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50번으로)					
	환승구간: () 호선→() 호선					
	45	열차의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에서 하차 후 환승안내표지를 바로 찾을 수 있습니까?	모든 구역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찾기 쉽도록 설치	일부구역에 설치 또는 눈높이가 맞지 않거나, 찾기 어려움	미설치	※ 사진첨부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기 타 시 설	46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별도의 환승 경로 안내가 필요한 경우 환승 경로를 안내하고 있습니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안내가 잘 되어있음	안내가 되어 있으나, 찾기 어려움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안내방법 없음	※ 사진첨부
	47	환승 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리프트 설치	미설치	기타_____
	47-1	위 편의시설이 고장난 경우 환승을 위한 대체시설이 있습니까?	대체시설이 있어 이동가능 ☞ 참고	대체시설이 있으나 일부구간만 이동 가능 ☞ 참고	대체시설 없음	대체시설의 종류 _____ 이동가능한 구간 _____
	48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환승 경로를 점자블록 또는 음성유도기(음성안내)로 안내하고 있습니까?	점자블록 또는 음성으로 안내하고 있음 ☞ 참고	설치하였으나 훼손 또는 작동 불량 ☞ 참고	미제공	<input type="checkbox"/> 점자블록 <input type="checkbox"/> 음성유도기
기타						
기 타	49	그 밖의 전반적으로·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 역사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한 사항 및 보완할 사항은?				

[붙임 2] 모니터링 결과 통계

1 지하철

(단위: %, (개))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엘리베이터	1	역사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 이동 여부	152	전체	부분		0
				90.8	9.2		
	1-1	엘리베이터 고장 시, 승강장 이동 대체시설 설치 여부	152	11.2	6.6		82.2
	2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152	98.7	0	98.7	1.3
	2-1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0.3m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150	88	12		
	2-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유지 여부	150	97.3	2.7		
	3	엘리베이터 내부의 세로조작반, 층수, 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부착 여부	152	98.7	1.3	100	0
	4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형 가로형 조작반의 높이 0.85m 내외로 설치 여부	152	90.1	9.9	100	0
	5	엘리베이터 내부 점멸등, 음성신호장치 설치 여부	152	92.1	7.9	100	0
	6	엘리베이터 내부, 청각장애인이 도움 요청 가능한 문자서비스 연락처 안내여부	152	15.8	71.7		12.5
	7	엘리베이터 외부,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여부	152	70.4	29.6	100	0
8	승강장 및 대합실 등 엘리베이터 하차 후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 용이성	152	53.9	13.8	67.8	32.2	
9	엘리베이터 미설치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대체시설 설치 여부	14	100	0		0	
에스컬레이터	10	에스컬레이터 양끝 부분에 수평고정손잡이 1m이상 설치 여부	83	63.9	20.5	84.3	15.7
	10-1	에스컬레이터 양끝 수평고정손잡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83	15.7	4.8	20.5	79.5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통로	11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하차 후 승강장 이동시 통로의 높이차이 제거 여부	148	100	0		0
	12	통로에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의 설치 여부	148	55.4	17.6	73	27
	13	승강장 이동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연속적 설치 여부	148	95.9	3.4	99.3	0.7
계단	14	계단 손잡이의 양끝 부분의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136	97.8	2.2	100	0
	15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136	100	0	100	0
	15-1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 전면 0.3m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136	97.1	2.9		
	15-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가능한 상태유지 여부	136	99.3	0.7		
안내 및 유도 시설	16	시각장애인이 시설의 배치를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여부	154	68.2	3.2	71.4	28.6
	17	고객안내센터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 여부	154	96.1			3.9
	18	장애인이 교통시설 이용에 있어 도움요청 가능한 안내서비스의 제공 여부	154	99.4			0.6
	18-1	안내서비스의 요청방법의 안내 여부	153	73.9	15	88.9	11.1
경보 피난 시설	19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 피난설치의 설치 여부	154	82.5	16.9	99.4	0.6
	20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 피난설비의 설치 여부	154	83.1	15.6	98.7	1.3
일반 사항	21	승강장 및 대합실 등 엘리베이터 하차 후 장애인 화장실 안내표지 설치 여부	148	76.4	12.2	88.5	11.5
	2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장애인용 화장실 접근 방법 안내 제공 여부	133	36.1	8.3	44.4	55.6
	23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접근성 확보 여부	148	98.6			1.4
	24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여부	153	93.5	3.3	96.7	3.3
	25	화장실의 바닥 단차가 2cm 이하 여부	148	100			0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일반사항	26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에 접근가능하도록 안내 제공 여부	150	98	1.3	99.3	0.7
	27	일반화장실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150	95.3	1.3	96.7	3.3
	27-1	일반화장실 전면 0.3m이상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144	76.4	23.6		
	27-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유지 여부	144	97.2	2.8		
	28	일반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 1.5m높이에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150	72.7	18.7	91.3	8.7
대변기	29	대변기의 출입문 형태의 적절성	148	96.6			3.4
	30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1.4mX1.4m) 확보 여부	148	83.8	12.2		4.1
	31	대변기 양옆 수평수직손잡이, 회전식 손잡이 설치 여부	148	95.3	4.7	100	0
	32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적 설비 설치 여부	148	95.9	3.4	99.3	0.7
	33	비상시 호출벨, 비상통화장치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 접근성 확보 여부	148	83.1	13.5	96.6	3.4
	34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 연락처 안내 여부	148	3.4	18.9		77.7
세면대	35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높이 0.85m이하, 하단높이 0.65m이상) 설치 및 하부공간 확보 여부	148	85.1	10.8	95.9	4.1
승강장	36	승강장 엘리베이터 하차 후 휠체어 사용자 탑승 구역 안내 표지 발견의 용이성	154	63.6	24.7	88.3	11.7
	37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역에 안내표지 설치 여부	154	92.2	3.9	96.1	3.9
	38	휠체어 사용자 탑승구역 근처에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 설치 여부	154	50.0	26	76	24
	39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또는 안전펜스 설치 여부	154	100	0	100	0
	40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차량접근 시 경고/안내시설 설치 여부	154	100	0	100	0
	41	승강장 가장자리 0.3m~0.9m 범위내에 점형블록 설치 여부	154	100	0	100	0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승강장	42	스크린도어에 승강장 정보에 대한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142	87.3	0.7	88	12
	43	휠체어 사용자 탑승 가능한 구역의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 5cm 이하 여부	133	88	0		12
	44	휠체어 사용자 탑승 구역의 흠이 곡선인 경우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이 가장 좁은 곳에 설치 여부	21	81	0		19
	45	열차의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역에서 하차 후 환승안내표지 발견의 용이성	90	94.4	5.6	100	0
	46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별도의 환승 경로 안내 여부	90	55.6	4.4	60	40
	47	환승 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	90	90	10	100	0
	47-1	위 편의시설이 고장 난 경우 환승을 위한 대체시설 설치 여부	90	6.7	11.1		82.2
	48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환승 경로를 점자블록 또는 음성유도기로 안내 여부	90	96.7	2.2	98.9	1.1

2 철도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엘리베이터	1	역사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 이동 여부	30	전체	부분		0
				100	0		
	1-1	엘리베이터 고장 시, 승강장 이동 대체시설 설치 여부	30	0	0		100
	2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30	100	0	100	0
	2-1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0.3m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30	86.7	13.3		
2-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유지 여부	30	96.7	3.3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엘리베이터	3	엘리베이터 내부의 세로조작반, 층수, 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부착 여부	30	100	0	100	0
	4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형 가로형 조작반의 높이 0.85m 내외로 설치 여부	30	76.7	20	96.7	3.3
	5	엘리베이터 내부 점멸등, 음성신호장치 설치 여부	30	73.3	26.7	100	0
	6	엘리베이터 내부, 청각장애인이 도움 요청 가능한 문자서비스 연락처 안내여부	30	26.7	53.3		20
	7	엘리베이터 외부,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 설치여부	30	73.3	20	93.3	6.7
	8	승강장 및 대합실 등 엘리베이터 하차 후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 용이성	30	26.7	26.7	53.3	46.7
	9	엘리베이터 미설치 경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대체시설 설치 여부					
에스컬레이터	10	에스컬레이터 양끝 부분에 수평고정손잡이 1m이상 설치 여부	23	52.2	26.1	78.3	21.7
	10-1	에스컬레이터 양끝 수평고정손잡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23	4.3	0	4.3	95.7
통로	11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하차 후 승강장 이동시 통로의 높이차이 제거 여부	23	100	0		0
	12	통로에 교통약자를 위한 역 이용 안내표지의 설치 여부	23	43.5	30.4	73.9	26.1
	13	승강장 이동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연속적 설치 여부	23	91.3	8.7	100	0
계단	14	계단 손잡이의 양끝 부분의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22	81.8	18.2	100	0
	15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22	100	0	100	0
	15-1	계단의 시작과 끝지점 전면 0.3m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22	77.3	22.7		
	15-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가능한 상태유지 여부	22	100	0		
안내및유도시설	16	시각장애인이 시설의 배치를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여부	44	84.1	4.5	88.6	11.4
	17	고객안내센터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 확보 여부	44	88.6			11.4
	18	장애인이 교통시설 이용에 있어 도움요청 가능한 안내서비스의 제공 여부	44	90.9			9.1
	18-1	안내서비스의 요청방법의 안내 여부	40	60	22.5	87.5	12.5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경 보 피 난 사 설	19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정보시스템(비상벨), 피난설치의 설치 여부	44	54.5	31.8	86.4	13.6
	20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정보시스템(경광등), 피난설비의 설치 여부	44	52.3	29.5	81.8	18.2
일 반 사 항	21	승강장 및 대합실 등 엘리베이터 하차 후 장애인 화장실 안내표지 설치 여부	43	72.1	20.9	93	7
	22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장애인용 화장실 접근 방법 안내 제공 여부	43	58.1	7	65.1	34.9
	23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접근성 확보 여부	43	100			0
	24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여부	44	95.5	2.3	97.7	2.3
	25	화장실의 바닥 단차가 2cm 이하 여부	43	100			0
	26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에 접근가능하도록 안내 제공 여부	44	90.9	2.3	93.2	6.8
	27	일반화장실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44	90.9	0	90.9	9.1
	27-1	일반화장실 전면 0.3m이상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40	80	20		
	27-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유지 여부	40	100	0		
	28	일반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 1.5m높이에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44	38.6	50	88.6	11.4
대 변 기	29	대변기의 출입문 형태의 적절성	43	100			0
	30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1.4mX1.4m) 확보 여부	43	74.4	14.0		11.6
	31	대변기 양옆 수평수직손잡이, 회전식 손잡이 설치 여부	43	83.7	16.3	100	0
	32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적 설비 설치 여부	43	90.7	4.7	95.3	4.7
	33	비상시 호출벨, 비상통화장치의 휠체어 사용 장애인 접근성 확보 여부	43	90.7	7	97.7	2.3
	34	비상시 청각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 연락처 안내 여부	43	4.6	14		81.4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세면대	35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높이 0.85m이하, 하단높이 0.65m이상) 설치 및 하부공간 확보 여부	43	83.7	16.3	100	0
승강장	36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차량접근 시 경고/안내시설 설치 여부	44	65.9	6.8	72.7	27.3
	37	승강장 가장자리 0.3m~0.9m 범위내에 점형블록 설치 여부	44	88.6	4.5	93.2	6.8
	38	휠체어 사용자 탑승 가능한 구역의 승강장과 차량의 간격 5cm 이하 여부	44	95.5	2.3	97.7	2.3

과제 2. 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차별예방 모니터링

<1>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과제

- 교육기관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 장애학생(교육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 교육기관의 시설접근성

2 모니터링 목적

-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 받고 있는 장애학생(장애교육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적 측면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과 교육기관 접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함

3 모니터링 기간

○ 2017. 6. 27. ~ 2017. 7. 21.(총 2~3회 활동)

4 모니터링 대상

- 전국 6개 권역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총 224개 기관
 -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 중인 특수학교, 일반학교(특수학급), 일반학교(일반학급) 총 204개 학교
 - 2017년 장애인특화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예정인 20개 민간 직업교육훈련기관

〈 지역별 2차 모니터링 대상 기관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대구	대전
학 교	특수학교	29	4	3	6	7	4	5
	일반학교(특수학급)	121	16	19	28	22	18	19
	일반학교(일반학급)	54	9	8	4	6	14	13
	합계	204	29	29	38	35	36	37
직업교육훈련기관		20	3	5	3	2	4	3
계		224	32	34	41	37	40	40

5 모니터링 참가자

○ 총 128명 참가: 장애인 참가비율 58.6%

〈 장애 유형별 2차 모니터링 참여 현황 〉

(단위: 명)

권역	합계	비장애인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발달장애	정신	기타
서울	22	8	9	3	2			
경기	23	15	7	1				
부산	25	7	16		2			
광주	22	8	14					
대구	24	14	10					
대전	12	1	9	2				
계	128	53	65	6	4	0	0	0
비율	100.0%	41.4%	50.8%	4.7%	3.1%	0%	0%	0%

〈2〉 모니터링 추진 방법

1 모니터링 진행 절차

1	모니터링 사전계획 수립
2	지역별 사전설명회 개최
3	모니터링 대상 기관 사전 협조 요청
4	현장 모니터링 실시
5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2 모니터링 추진 내용

가. 모니터링 사전 계획 수립

- 2차 모니터링 과제 선정
- 모니터링 과제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 및 자문
- 모니터링 방법 검토
- 모니터링 대상 학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 선정
- 2차 모니터링 사전 설명회 계획안 보고

나. 사전설명회 개최

1) 지역별 2차 사전설명회 개최

권역	세부권역	일시	장소	주관
서울·경기	서울·경기	6.19.(월) 14:30~16:30	서울 이룸센터 누리홀	장애차별조사 1과
부산	부산	6.21.(수) 14:00~16:00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교육센터	부산인권사무소
	울산	6.19.(월) 14:00~16:00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장	
	거제	6.27.(화) 14:00~16:00	거제장애인인권상담센터 회의실	
	창원	6.20.(화) 14:00~16:00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회의실	
광주	광주	6.19.(월) 14:00~16: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교육센터	광주인권사무소
	목포	6.22.(목) 13:00~15:00	목포시 교육지원청 회의실	
	전주	6.21.(수) 08:30~10:30	전주시 교육지원청 회의실	
대구	대구	6.19.(월) 15:30~17:30	대구인권교육센터	대구인권사무소
대전	대전	6.19.(월) 14:00~16:00	대전인권교육센터	대전인권사무소

2) 사전설명회 주요 내용

- 모니터링 과제 선정 배경 및 관련 규정 설명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교육
-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기관 안내
- 모니터링 시 유의사항 안내(이동 시 안전, 단원증 패용, 모니터링단 조끼 착용 등)

다. 해당기관 협조 요청

- 지역별 담당기관에 협조 공문 발송(모니터링 사업 취지 설명 및 협조 공문 발송)
- 현장 방문 전 대상 기관별로 유선 연락 및 담당자 내정

라.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지역별 7월 2~3회 현장 모니터링 실시

마.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모니터링 단원 : 조별 체크리스트 1부, 개인별 보고서 1부 제출

<3> 모니터링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1 모니터링 항목

가. 장애학생(교육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학생(교육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보조인력 제공, 점자자료·확대문서 등의 제공, 수화통역 등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여부

나. 교육기관의 시설접근성

- 장애인의 교육기관 접근 및 학습을 위한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계단, 장애인 화장실, 교실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2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정당한 편의제공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제공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 시험 또는 평가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의 교내·외 행사 참여 • 장애교육생의 실습 참여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접근로의 통과 유효폭, 단차제거 •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장애인의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교실, 교무실 및 행정실의 통과 유효폭 및 단차 제거 • 도서관 및 체육관의 통과 유효폭 및 단차 제거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및 관리 • 엘리베이터 내부 음성신호장치, 외부 음향장치 • 엘리베이터 내 조작반, 계단 손잡이의 점자표지 • 점자 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등 유도 및 안내설비 • 화장실 출입구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시스템(비상벨)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내·외부 점멸등 •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시스템(경광등) • 대변기 문 사용여부를 알리는 시각적 설비

3 관련 규정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 제13조(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나.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이라 함) 제7조(대상시설)
- 「편의증진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 「편의증진법」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7조2(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

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특수교육법」 제4조(차별의 금지)
- 「특수교육법」 제21조(통합교육)
- 「특수교육법」 제22조(개별화교육)
- 「특수교육법」 제28조(특수교육관련서비스)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5조(보조인력)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7조(통학지원)

<4> 모니터링 결과

I. 학교

1. 정당한 편의제공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 유형	모니터링 내용
정당한 편의제공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장애학생 교육보조인력 제공 학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험 또는 평가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학생의 교내·외 행사 참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각	
	청각	

나. 모니터링 결과

1) 정당한 편의제공

① 일반사항(장애학생 지원 등)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1	장애학생 입학 시 보조인력, 학습보조기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전 안내 여부	29	175	100	97.1			0	2.9
2	별도의 장애학생 지원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 여부	29	175	100	97.1			0	2.9
3	매 학기마다 개별화 교육 수립을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여부	29	175	100	97.7			0	2.3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4	매년마다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계획 수립 여부		175		94.9			0	5.1
5	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 위원 중 장애학생 부모참여 여부	29	175	100	18.3			0	81.7

-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특수학교 29개, 일반학교(특수학급) 121개, 일반학교(일반학급) 54개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였으며, 특수학교의 경우 지체, 시각, 청각, 발달 등 다양한 장애유형의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보조인력, 장애인보조기구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바, 장애학생이 입학 시 보조인력, 학습보조기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종류 및 절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주는 경우는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97.1%임.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고 있는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97.1%임.
- 「특수교육법」 제22조에 따라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해야 함.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97.7%로 완전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일반학급)에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특수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바, 일반학교 중 94.9%의 학교에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일반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 위원 중 장애학생의 부모가 있는 학교는 18.3%에 불과해 일반학교에서는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장애학생 부모의 참여가 요구됨.
- 장애학생 지원담당자,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계획 수립, 통합교육계획 수립·시행은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통합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일반학교(일반학급)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가 많아 동 사항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있어 제공해야 하는 편의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② 장애학생 교육 보조인력 제공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6	장애학생 및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도우미)배치 여부	29	175	100	74.9			0	25.1
6-1	장애학생과 배치하고 있는 교육 보조인력 (도우미) 현황	29	131	전체 평균 6.5명 특수 평균 6.3명, 일반 평균 7.3명					
6-2	장애학생과 배치하고 있는 교육 보조인력 (도우미) 성비 현황	29	131	전체 평균 남 10.2명, 여 4명 특수 평균 남 9.4명, 여 4명 일반 평균 남 14.3명, 여 4명					
6-3	보조인력의 주요 업무 현황	29	131	①장애학생의 교내·외 활동보조		58	69		
				②장애학생의 등·하교 지원		18	6.3		
				③장애학생의 신변처리		24	24.1		
				④기타		0	0.6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6-4	보조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44	①장애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아서				86.4	
				②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0	
				③적절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0	
				④기타				13.6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바,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74.9%임.
- 교육 보조인력의 종류로는 사회복지무원 33%, 보조실무원 64%, 기타 4%였으며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육보조인력 1인당 장애학생 수는 평균 6.5명이며,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는 평균 6.3명, 일반학교는 평균 7.3명임. 남·여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 보조인력 1명당 남성 장애학생 수는 평균 10.2명, 여성 보조인력 1명당 여성 장애학생 수는 평균 4명임.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성 보조인력 1명당 남성 장애학생 수는 특수학교는 평균 9.4명, 일반학교는 평균 14.3명이며 여성은 평균 4명으로 동일함. 보조인력이 동일한 성의 장애학생만을 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장애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장애학생 대비 더 많은 보조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특히 남성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등을 위해 남성 보조인력이 추가로 배치될 필요성이 있음.
- 현재 보조인력이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장애학생의 교내·외 활동보조가 각각 58%, 6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장애학생의 등·하교 지원 순으로 많았음. 교육보조인력이 미배치된 25.1%의 일반학교에 그 이유를 문의한 결과 장애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아서 86.4%로 가장 많았고, 장애학생 및 부모가 원하지 않아서 등의 기타 의견이 13.6%였음.

③ 통학 및 학습, 시험 평가에 있어 필요한 편의제공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7	장애학생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에 필요한 편의 제공 여부	29	175	100	38.3			0	61.7
7-1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108						
				①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유형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아서					79.8
				② 비용이 많이 들어서					0
				③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2.8
				④ 차량을 운행할 인력이 부족해서					0
				⑤ 기타					17.4
8	장애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상당한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경험 여부	29	175	82.8	52.6			17.2	47.4
8-1	학교의 장애학생 및 학부모가 요청한 편의 제공 여부	24	92	95.8	93.5	4.2	5.4	0	1.1
8-2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1	6						
				① 장애학생이 장애 정도·유형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아서				0	66.7
				② 비용이 많이 들어서				100	0
				③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0	0
				④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알지 못해서				0	0
				⑤ 기타				0	33.3
9	지체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여부	20	135	95	37			5	63
10	지체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편의 제공 여부	20	135	95	59.3			5	40.7
11	시·청각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에 있어 의사소통 수단 등 편의 제공 여부	18	66	88.9	45.5			11.1	54.5
12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시험 또는 평가과정 등의 편의 제공 여부	28	175	89.3	77.1			10.7	22.9
12-1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3	40						
				①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				0	34.9
				②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유형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아서				0	55.8
				③ 비용이 많이 들어서				0	0
				④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알지 못해서				0	0
				⑤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66.7	2.3
				⑥ 기타				33.3	7

-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따라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보조인력 등 통학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장애학생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38.3%임. 통학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61.7%의 일반학교에 그 이유를 문의한 결과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유형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아서 79.8%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 함께 통학하거나 근거리로 자가 통학하는 경우가 17.4%, 관련 예산이 책정되지 있지 않아서가 2.8%임.
- 장애학생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이 편의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됨. 장애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 받은 적이 있는 특수학교는 82.8%, 일반학교는 52.6%임. 특수학교에서 요청받은 편의를 제공한 경우는 95.8%, 일부만 제공한 경우는 4.2%이며, 일반학교에서 요청받은 편의를 제공한 경우는 93.5%, 일부만 제공한 경우는 5.4%, 미제공한 경우는 1.1%임. 일부제공 또는 미제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문의한 결과 특수학교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라고 답변했으며, 일반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유형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아서가 66.7%, 기타(건물이 노후하여 요청한 편의시설 공사가 어려움 등) 33.3%였음.
- 지체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 학교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95%, 일반학교는 37%이며, 높낮이 조절용 책상을 제공하는 특수학교는 95%, 일반학교는 59.3%로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학생이 많은 특수학교에서 제공 비율이 높았음.
- 시·청각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에 있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 소통 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는 특수학교는 88.9%, 일반학교는 45.5%이며, 제공하고 있는 편의는 특수학교에서는 큰 문자자료 14.3%, 수화통역이 14.3%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학교에서는 보청기기 38.9%, 큰 문자자료 19.4% 순으로 많았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에게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하는 바 적절한 시험 또는 평가과정 등의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89.3%, 일반학교는 77.1%이며, 제공하고 있는 편의는 특수학교에서는 평가방법의 변경이 32.7%, 보조인력 제공이 30.9%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학교에서는 평가방법의 변경이 30.4%로 가장 많고, 시험시간의 연장과 보조인력 제공이 각각 24.9%로 많았음.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학교에 그 이유에 대해 문의한 결과 특수학교에서는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라는 답변이 66.7%로 많았고, 일반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유형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55.8%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가 34.9%,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가 2.3%로 나타남.



[그림 1] 장애학생을 위한 이동용 보장구 대여 (특수학교)



[그림 2] 장애학생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책상 (특수학교)



[그림 3] 청각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수업 제공을 위한 청능훈련실 (특수학교)



[그림 4] 저시력 장애학생을 위한 확대보조기구 (특수학교)

④ 장애 학생의 교내·외 행사 참여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13	체육대회 등 장애학생이 교내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경험 여부	29	175	93.1	94.3			6.9	5.7
13-1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2	10	① 장애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지 않아서				100	90
				② 장애학생을 지원할 보조인력이 없어서				0	0
				③ 보조기구가 없어서				0	0
				④ 기타				0	10
14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장애학생이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경험 여부	29	175	93.1	74.9			6.9	25.1
14-1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2	44	① 장애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지 않아서				100	87.2
				② 장애학생을 지원할 보조인력이 없어서				0	4.3
				③ 보조기구가 없어서				0	0
				④ 학교 밖 활동을 하는 장소의 접근성 등이 확보되지 않아서				0	6.4
				⑤ 기타				0	2.1
15	장애학생의 교내의 행사 참여 시 이동과 안전 등의 이유로 장애학생의 부모 동반 요구 여부	29	175	79.3	90.3			20.7	9.7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체육대회 등 장애학생이 교내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적이 있는 특수학교는 6.9%, 일반학교는 5.7%이며,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 문의한 결과 장애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음.
- 장애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적이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는 6.9%, 일반학교는 25.1%로,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 문의한 결과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모두 장애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음. 일반학교에서는 다음으로 학교 밖 활동을 하는 장소의 접근성 등이 확보되지 않아서, 장애학생을 지원할 보조인력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있었음. 장애학생의 교내·외 행사 참여시 이동과 안전 등의 이유로 장애학생의 부모 동반을 요구한 적이 있는 특수학교는 20.7%, 일반학교는 9.7%로, 중증장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특수학교에서 부모동반을 요구한 비율이 높았음. 장애학생의 교내·외 행사 참여 시 부모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 측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비장애학생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 소지가 있으며, 장애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한하고 가족에게만 장애인의 부양의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학교 밖 활동도 교육활동의 일환인 바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이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소 선택 시 접근성을 고려해야함.

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16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수업이나 교육 실시 여부	29	175	89.7	100			10.3	0
16-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	26	175	①연간 1회				7.6	8
				②학기별 1회				50	70.4
				③분기별 1회				19.2	11.4
				④월별 1회				3.8	3.4
				⑤기타				19.2	6.8
16-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방법	26	175	①내부교사가 진행				57.5	55.5
				②외부 전문가가 진행				40	39
				③기타				2.5	5.5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함.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수업이나 교육을 실시하는 특수학교는 89.7%, 일반학교는 100%였으며, 인식개선 교육은 학기별 1회를 진행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교사가 진행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외부 전문가 진행이 많았음. 기타 의견으로는 가정통신문 발행, 영상물 시청 등이 있었음.

2 시설 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접근로의 통과 유효폭, 단차제거 •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 장애인의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 교실, 교무실 및 행정실의 통과 유효폭 및 단차 제거 • 도서관 및 체육관의 통과 유효폭 및 단차 제거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및 관리 • 엘리베이터 내부 음성신호장치, 외부 음향장치 • 엘리베이터 내 조작반, 계단 손잡이의 점자표지 • 점자 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 등 유도 및 안내설비 • 화장실 출입구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시스템(비상벨)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베이터 내·외부 점멸등 •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시스템(경광등) • 대변기 문 사용여부를 알리는 시각적 설비

나. 모니터링 결과

1) 매개시설

① 접근로 및 주(부)출입구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1	접근로의 유효폭 1.2m 이상 여부	29	175	86.2	99.4	10.3	0			3.5	0.6
2	휠체어 등 보행자를 위한 보행안전통로의 차도와 분리 여부	29	175	69	78.9	6.9	5.7			24.1	15.4
3	주 출입구와 연결 접근로의 높이차이 2cm이하 여부	29	175	96.6	86.9	3.4	7.4			0	5.7

- 장애학생이 학교 등원 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접근로의 유효폭이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전체구간 1.2m이상 확보된 특수학교는 86.2%, 일반학교는 99.4%임. 휠체어 등 보행자를 위하여 보행 통로와 차도에 공작물 또는 경계석 등으로 구분되어 보행안전통로가 분리되어 있는 특수학교는 69%, 일반학교는 78.9%로 중증장애학생이 많이 재학 중인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접근로 유효폭 확보와 보행안전통로와 차도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음.
- 주(부)출입구와 연결 접근로의 높이차이가 2cm 이하이거나 경사로의 기울기를 1/12로 완만하게 설치한 특수학교는 96.6%, 일반학교는 86.9%로, 경사로의 기울기가 가파르거나 단차가 2cm 이상인 경우 장애학생이 등교 시 위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그림 5] 차도와 구분되어 있는 보행안전통로



[그림 6] 보행통로의 구분이 없으며 안전선도 표기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 미확보

2) 내부시설

① 주출입문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4	주출입문 높이차이 제거 여부	29	175	100	94.3					0	5.7
5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여부	29	175	100	98.3					0	1.7
6	주출입문 손잡이의 0.8~0.9m 사이에 설치 여부	29	174	89.7	70.1	10.3	28.2			0	1.7
7	주출입문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29	175	82.8	76.6	3.4	1.1	86.2	77.7	13.8	22.3
7-1	주출입문 전면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25	136	80	69.1	20	30.9				
7-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25	136	100	97.8	0	2.2				

- 주출입문에 휠체어 등이 접근 가능하도록 높이 차이가 2cm 이하인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94.3%이며 주출입문 통과 유효폭이 0.8m 이상인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98.3%로 적정 설치율이 높음. 휠체어 사용자가 용이하게 문을 열 수 있도록 주출입문 손잡이의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사이

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특수학교는 89.7%, 일반학교는 70.1%로, 손잡이가 0.8m 미만 또는 0.9m 초과하여 설치되거나 미설치된 경우 개선이 필요함.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주출입문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특수학교는 82.8%, 일반학교는 76.6%이며, 미설치된 경우는 특수학교는 13.8%, 일반학교는 22.3%로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점형블록 추가 설치가 필요함. 설치된 점형블록 중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0.3m 전면간격이 맞지 않거나 문폭만큼 설치하지 않은 경우는 특수학교는 20%, 일반학교는 30.9%로 시각장애인이 이용 시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설치된 점형블록은 대부분 잘 관리·유지되고 있었음.



[그림 7] 단차가 제거되어 있지 않은 주출입구 [그림 8] 사용하지 않는 출입문 앞의 점형블록

② 엘리베이터 및 계단

가) 엘리베이터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8	엘리베이터 전면에 1.4mX1.4m의 활동공간 확보 여부	28	158	100	95.6	0	1.9			0	2.5
9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28	158	89.3	91.8	3.6	2.5	92.9	94.3	7.1	5.7
9-1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26	149	96.2	87.9	3.8	12.1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9-2	설치된 점형블록은 훼손되지 않고 상태가 유지되는지 여부	26	149	96.2	99.3	3.8	0.7	/	/	/	/
10	엘리베이터 내부의 세로조작반·층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부착 여부	28	158	96.4	97.5	3.6	0.6	100	98.1	0	1.9
11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가로형 조작반은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설치 여부	28	158	89.3	74.7	10.7	23.4	100	98.1	0	1.9
12	엘리베이터 내부의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의 동작여부	28	158	92.9	86.7	7.1	12	100	98.7	0	1.3
13	엘리베이터 외부의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의 동작여부	28	158	82.1	74	17.9	22.8	100	96.8	0	3.2

- 학교 내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는 특수학교는 전체 모니터링 대상 중 96.6%, 일반학교는 90.3%로 지체·뇌병변 등 이동이 불편한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90% 이상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음. 이 중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전면 1.4m×1.4m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95.6%임.
- 시각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의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특수학교는 89.3%, 일반학교는 91.8%이며 미설치율은 특수학교는 7.1%, 일반학교는 5.7%였음. 다만, 설치된 점형블록 중 호출버튼 전면 0.3m 간격이 맞지 않는 경우는 특수학교는 3.8%, 일반학교는 12.1%로 시각장애인이 이용 시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설치된 점형블록은 대부분 잘 관리·유지되고 있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내부의 세로조작반과 층수, 통화장치 등 모든 부분의 점자표지 설치율은 특수학교는 96.4%, 일반학교는 97.5%로 높았으며,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가로형 조작반이 바닥면으로 0.8m 미만 또는 0.9m 초과하여 설치된 경우는 특수학교는 10.7%, 일반학교는 23.4%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조작하는데 불편함이 있음.

- 엘리베이터 내부에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과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신호장치가 모두 설치된 비율은 특수학교는 92.9%, 일반학교는 86.7%였으며, 엘리베이터 외부에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과 음성신호장치가 모두 설치된 비율은 특수학교는 82.1%, 일반학교는 74%임. 시·청각 장애인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위해 미설치되거나 일부만 설치 및 작동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그림 9, 10]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에 설치되어 있지 않는 점형블록

나) 계단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14	계단 손잡이의 양 끝 부분의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29	175	69	26.3	13.8	15.4	82.8	41.7	17.2	58.3
15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여부	29	175	75.9	48	3.4	0	79.3	48	20.7	52
15-1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23	84	91.3	79.8	8.7	20.2				
15-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대 유지 여부	23	84	100	97.6	0	2.4				

- 계단 손잡이에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특수학교는 82.8%, 일반학교는 41.7%임.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의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특수학교는 75.9%, 일반학교는 48%로 일반학교의 경우 시각장애 학생이 적어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느끼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시각장애 교사가 학교에 근무하거나 시각장애 학부모 등도 학교에 방문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설치된 점형블록 중 계단 전면 0.3m의 간격이 맞지않는 경우는 특수학교는 8.7%, 일반학교는 20.2%로 전면 간격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11] 계단 손잡이 끝부분의 점자표지판 설치 및 시작과 끝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그림 12] 계단의 시작과 끝 전면에 점형블록 미설치

3) 안내시설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16	시각장애인이 시설의 배치를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혹은 음성안내장치 설치 여부	29	175	79.3	64	6.9	10.9	86.2	74.9	13.8	25.1
17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시스템(비상벨)·피난 설비의 설치여부	29	175	79.3	71.4	20.7	23.4	100	94.8	0	5.2
18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시스템(경광등)·피난 설비의 설치여부	29	175	79.3	69.1	20.7	20	100	89.1	0	10.9

- 시각장애인이 학교 내의 주요시설 및 위치 등에 알 수 있도록 점자가 병기되어 있는 일반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된 특수학교는 86.2%, 일반학교는 74.9%이며 미설치된 특수학교는 13.8%, 일반학교는 25.1%임.
-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 또는 피난설비를 설치한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94.8%이며, 연속적으로 설치가 된 특수학교는 79.3%, 일반학교는 71.4%임.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 또는 피난설비를 설치한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89.1%이며, 연속적으로 설치된 특수학교는 79.3%, 일반학교는 69.1%임. 경보설비가 미설치된 일반학교의 경우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그림 13]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촉지도식 안내판



[그림 14]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스템

4) 위생시설

① 일반사항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19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여부	29	175	93.1	66.9	6.9	29.7	100	96.6	0	3.4
20	화장실 바닥 단차 2cm이하 여부	29	169	100	94.7					0	5.3
21	일반화장실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29	175	86.2	48.6	3.5	2.3	89.7	50.9	10.3	49.1
21-1	일반화장실 전면 0.3m이상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26	89	96.2	85.4	3.8	14.6				
21-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26	89	100	100	0	0				
22	일반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에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설치	29	175	75.9	35.4	13.8	13.7	89.7	49.1	10.3	50.9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된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96.6%였으며, 남·여를 구분하여 각각 설치한 특수학교는 93.1%, 일반학교는 66.9%임. 일반학교의 경우 장애인용 화장실이 미설치 된 학교가 3.4%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화장실의 바닥 단차가 제거된 학교는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94.7%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었음.
- 일반화장실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특수학교는 86.2%, 일반학교는 48.6%이며 미설치된 학교는 특수학교는 10.3%, 일반학교는 49.1%로 미설치율이 다른 모니터링 항목에 비해 높았음. 설치된 점형블록 중 화장실 전면 0.3m 간격이 맞지 않는 경우는 특수학교는 3.8%, 일반학교는 14.6%로 설치위치의 조정이 필요함.
-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여를 구분하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학교는 특수학교는 89.7%, 일반학교는 49.1%에 불과했으며, 설치기준인 1.5m의 범위 밖에 설치된 경우도 13%대로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점자표지판 설치 및 위치 조정이 필요함.



[그림 15]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여를 구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미설치



[그림 16] 출입구의 단차가 매우 높아 장애인 접근성이 낮은 화장실

② 대변기 및 세면대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23	대변기의 출입문 형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29	167	96.6	89.2					3.4	10.8
24	대변기 전면 활동 공간(1.4mX1.4m) 확보 여부	29	167	62.1	46.1	20.7	25.8			17.2	28.1
25	대변기 양옆 수평수직손잡이, 회전식 손잡이 설치 여부	29	167	82.8	75.4	17.2	22.8	100	98.2	0	1.8
26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리는 시각적 설치 여부	29	167	69	52.7	0	3	69	55.7	31	44.3
27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높이 0.85m이하, 하단높이 0.65m 이상) 설치 및 하부공간 확보 여부	29	167	69	46.7	24.1	35.3	93.1	82	6.9	18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변기 출입문이 적정하게 설치된 특수학교는 96.6%, 일반학교는 89.2%임. 적정하게 설치된 출입문의 종류로는 미닫이가 가장 많았고, 내부공간 확보된 여닫이문, 자동문 순으로 많았음. 내부공간이 미확보된 안여닫이가 설치된 특수학교는 3.4%, 일반학교는 10.8%로 장애인이 쉽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이 회전 및 이용 가능하도록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이 1.4m×1.4m 이상 확보된 특수학교는 62.1%, 일반학교는 46.1%로 낮았으며, 활동공간이 1.2m×1.2m 미만인 특수학교는 17.2%, 일반학교는 28.1%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대변기 양옆 수평수직 손잡이와 회전식 수평손잡이가 모두 설치된 경우는 특수학교는 82.8%, 일반학교는 75.4%로 모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대변기의 출입문에 청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사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색상이나 문자로 시각적 설비를 설치한 특수학교는 69%, 일반학교는 55.7%이었으며, 특수학교의 31%, 일반학교의 44.3%는 사용여부의 표시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편의증진법 시행령」상 권장사항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면대의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 0.85m이하, 하단높이는 0.65m 이상이며 하부는 무릎 및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한 특수학교는 69%, 일반학교는 46.7%였으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세면대가 미설치된 특수학교는 6.9%, 일반학교는 18%로 일반학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그림 17] 회전식 손잡이가 미설치되고 청소용품이 적재된 장애인용 화장실



[그림 18] 대변기의 전면 활동공간 (1.4m×1.4m)이 확보되지 않는 장애인용 화장실

5) 기타시설

① 교실, 교무실 및 행정실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28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교실 설치 여부	29	175	100	96.6					0	3.4
29	출입문 높이차이 제거 여부	29	175	96.6	92					3.4	8
30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여부	29	175	93.1	89.7					6.9	10.3
31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교무실과 행정실 설치 여부	29	175	100	96.6					0	3.4
32	주출입문 높이차이 제거 여부	29	175	100	86.9					0	13.1
33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여부	29	175	93.1	86.9					6.9	13.1

-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96.6%로 접근성이 높았음. 교실의 출입문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교사나 학생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높이차이가 제거 되어 있는 특수학교는 96.6%, 일반학교는 92%였으며,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이 0.8m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특수학교는 93.1%, 일반학교는 89.7%로 장애학생이 있는 모든 교실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교무실과 행정실이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96.6%임. 교무실과 행정실 주출입문의 높이차이가 제거된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86.9%,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이 확보된 특수학교는 93.1%, 일반학교는 86.9%로 장애인 교사나 학생들을 위해 개선이 필요함.



[그림 19] 단차가 있어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이 낮은 교실 문



[그림 20] 통과 유효폭이 0.7m로 좁아 접근성이 낮은 교실 문

② 도서관 및 체육관

(단위: %, (개))

번호	세부 점검사항	조사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34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도서관 설치 여부	27	173	100	89					0	11
35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열람석 설치 여부	27	172	96.3	83.1	0	9.9			3.7	7
36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열람석의 (상단높이 0.7~0.9m, 하단높이 0.65m이상) 설치 및 하부공간(0.45m이상) 확보 여부	27	172	92.6	73.8	3.7	13.4	96.3	87.2	3.7	12.8
37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실내 체육관 설치 여부	25	159	96	79.9					4	20.1
38	주출입문 높이차이 제거 여부	25	159	96	92.5					4	7.5
39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여부	25	159	100	99.4					0	0.6
40	체육관 내에서 수직 이동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 여부		9		66.7						33.3

-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89%이며, 열람석이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 및 피난 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 특수학교는 96.3%, 일반학교

는 83.1%임. 휠체어 사용자용 열람석의 상단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0.7m~0.9m이하, 책상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이상인 특수학교는 92.6%, 일반학교는 73.8%로 장애학생이 자유롭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실내 체육관이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교는 96%, 일반학교는 79.9%였으며, 실내 체육관의 주출입문이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 가능하도록 높이차이가 제거 되어 있는 특수학교는 96%, 일반학교는 92.5%임. 실내 체육관의 출입문 통과 유효 폭이 0.8m이상 확보되어 있는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99.4%로 통과하는데 어려움이 적었음. 체육관이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체육관 내에서 수직 이동이 필요한 학교는 9개 일반학교이며, 이 중 엘리베이터 설치 등 수직이동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교는 66.7%에 불과해 이동이 어려운 33.3%의 일반학교는 추후 체육관 내에도 엘리베이터 등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될 필요가 있음.



[그림 21] 단차가 있어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이 낮은 도서관 문



[그림 22] 주출입구에 계단 설치로 휠체어 사용자의 접근성이 낮으며, 경사가 가파른 임시 경사로 설치

II. 직업교육훈련기관

1. 정당한 편의제공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정당한 편의제공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교육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 모집·등록과정에서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교육생 교육보조인력 제공 학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시험 또는 평가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교육생의 실습 참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나. 모니터링 결과

1) 정당한 편의제공

① 일반사항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1	장애교육생 대상 직업훈련 실시 여부	20	①2017년에 처음 실시함		10
			②이전에 실시한 적 있음		90
			③기타		0
2	장애교육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보조기구 보유 여부	20	35		65
3	장애교육생 대상 매뉴얼 또는 내부지침, 규정의 여부	20	60		40
4	별도의 장애교육생 담당자 여부	20	80		20

- 고용노동부에서는 장애인 대상 직업교육훈련을 공공훈련기관 및 민간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바, 2017년 장애인 특화 훈련 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 예정인 민간훈련기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교육생의 교육훈련 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모니터링하였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의 경우 2013. 4. 11.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교육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으나, 장애인특화과정의 경우 장애인 교육생만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장애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장애로 인한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연면적에 상관없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음.
- 민간훈련기관을 대상으로 장애교육생 대상 직업훈련 실시 여부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이전에 실시한 경험이 있는 기관이 90%(18곳)이며 2017년 신규 기관은 10%(2곳)임. 장애교육생의 학습지원을 위해 보조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35%(7곳)였으며, 보유하고 있는 보조기구는 확대경이 30.8%로 가장 많았고 휠체어,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이 각각 23.1%임.
- 장애교육생이 교육훈련을 위하여 상담 및 학습 시 필요한 편의의 제공 방법 등 장애교육생에 대한 업무 매뉴얼 또는 내부지침, 규정 등이 있는 기관은 60%(12곳)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학생 담당자를 두고 있는 기관은 80%(16곳)임.

② 모집·등록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5	장애교육생 입학 시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에 대한 사전 안내 여부	20	60		40
6	시·청각 장애인이 등록시 등록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편의 제공 여부	20	30		70
7	교육생들이 등록 시 온라인 등록만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20	90		10
7-1	온라인 등록만을 하는 경우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른 신청방법(전화, 직접방문, 기타 등) 허용 여부	2	50		50

- 훈련기관이 교육생 모집에 있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훈련기관에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쇄물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는 기관은 60%(12곳)로, 장애교육생이 입학 시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에서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필요함. 시·청각 장애인이 등록 시 등록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 확대문서, 수화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30%(6곳)이며, 제공하고 있는 편의는 확대문서가 55.6%, 수화통역과 보조인력 제공이 각각 22.2%임.
- 교육생들이 훈련과정 등록 시 온라인 등록만을 허용하는 기관은 10%(2곳)였으며, 이 중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른 신청방법(전화, 직접방문, 기타 등)을 허용하고 있는 기관은 50%(1곳)에 불과해 다양한 방법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할 필요성이 있음.

③ 장애교육생 교육 보조인력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8	장애교육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보조교사, 도우미 등)배치 여부	20	40		60
8-1	장애교육생과 배치하고 있는 교육 보조인력 현황	8	평균 5.9명		
8-2	보조인력의 주요 업무 현황	8	①장애교육생의 교육활동 보조	72.7	
			②장애교육생의 이동지원	27.3	
			③기타	0	
8-3	보조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12	①별도의 요청이 없어서	41.7	
			②필요하지 않아서	25	
			③비용이 많이 들어서	0	
			④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알지 못해서	0	
			⑤기타	33.3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바,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관은 40%(8곳)이며 배치하고 있는 기관의 교육보조인력 1인당 장애교육생 수는 평균 5.9명임.
- 현재 보조인력이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장애교육생의 교육활동 보조가 72.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교육생의 이동 지원 27.3%였음. 교육보조인력이 미배치된 60%(12곳)의 기관에 그 이유를 문의한 결과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가 41.7%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지 않아서가 25%, 기타(현재 장애교육생 없음, 교육생 외는 수업 참여 불가)가 33.3%였음. 교육보조인력은 장애교육생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지원하므로 장애교육생이 보조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고 수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

④ 학습 및 시험평가에 있어 필요한 편의제공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9	장애교육생으로부터 학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험 여부	20	40		60
9-1	장애교육생이 요청한 편의 제공 여부	8	75	25	0
9-2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2	① 필요하지 않아서		0
			② 비용이 많이 들어서		33.3
			③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66.7
			④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알지 못해서		0
			⑤ 기타		0
10	시·청각 장애교육생이 있는 경우 교육에 있어 의사소통 수단 등 편의제공 여부	5	20		80
11	장애 교육생에게 적절한 시험 또는 평가과정 등의 편의제공 여부	18	83.3		16.7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11-1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3	①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		33.3
			② 필요하지 않아서		66.7
			③ 비용이 많이 들어서		0
			④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알지 못해서		0
			⑤ 다른 교육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0
			⑥ 기타		0

- 장애교육생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장애교육생이 편의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됨. 장애교육생으로부터 학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 받은 적이 있는 기관은 40%(8곳)로 정당한 편의에 대한 요청이 없는 것은 장애교육생이 그 편의가 필요 없어서일 수도 있고, 편의 관련 법적 권리에 대해 몰라서일 수도 있으며, 관련 편의를 요청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기 때문일 수도 있음.
- 요청받은 편의를 훈련기관이 제공한 경우는 75%(6곳), 일부만 제공한 경우는 25%(2곳)이며, 일부제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문의한 결과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가 66.7%로 가장 많았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가 33.3%로 예산 부족의 이유가 대다수임. 시·청각 장애교육생이 있는 5개의 기관 중 교육에 있어 시·청각 장애교육생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점자로 된 교재 등 편의를 제공한 기관은 20%(1곳)에 불과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장애교육생에게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을 제공해야하는 바 시험 및 평가과정이 있는 18개의 훈련기관 중 적절한 시험 또는 평가과정 등의 편의제공을 하고 있는 기관은 83.3%(15곳)이며, 제공하고 있는 편의는 시험시간의 연장이 50%, 평가방법의 변경과 보조인력 제공이 각각 20.8%, 시험 편의도구 제공

4.2%, 기타 4.2%임.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16.7%(3곳)의 훈련기관에 그 이유에 대해 문의한 결과 필요하지 않아서가 66.7%로 가장 많았고,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가 33.3%로 조사되었음.

⑤ 장애 교육생의 실습 참여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12	장애교육생이 훈련 실습에 참여 하지 못했던 경험 여부	20	85		15
12-1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3	①장애교육생이 원하지 않아서		100
			②장애교육생을 지원할 보조인력이 없어서		0
			③보조기구가 없어서		0
			④기타		0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됨.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일부인 훈련 실습에서 장애교육생이 참여하지 못했던 적이 있는 기관은 15%(3곳)이며,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 문의한 결과 장애교육생이 원하지 않아서가 100%(3곳)로 가장 많았음.

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13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	20	70		30
13-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대상	14	①교사		54.5
			②교직원		45.5
			③기타		0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13-2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6	①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		33.3
			② 비용이 많이 들어서		0
			③ 필요성을 못 느껴서		33.3
			④ 기타		33.3

-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은 아니나, 장애인특화 훈련과정을 운영하므로 교사,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70%(14곳)이며, 실시대상은 교사가 54.5%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이 45.5%임. 실시하지 않은 30%(6곳)의 기관에 그 이유에 대해 문의한 결과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33.3%,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가 33.3%, 기타 의견으로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장애인특화과정 운영 시 실시 예정이 있었음.

2 시설 접근성

가. 모니터링 내용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시설 접근성	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주차구역 크기의 적정성 여부 주출입구 접근로의 단차제거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장애인의 층간 이동을 위한 편의시설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강의실, 교무실 및 행정실의 통과 유효폭 및 단차 제거
	시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화장실 전면 점형블록 설치 및 관리 엘리베이터 내부 음성신호장치, 외부 음향장치 엘리베이터 내 조작반, 계단 손잡이의 점자표지 화장실 출입구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시스템(비상벨)

분류	장애유형	모니터링 내용
	청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엘리베이터 내·외부 점멸등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시스템(경광등) 대변기 문 사용여부를 알리는 시각적 설비

나. 모니터링 결과

1) 매개시설

① 장애인 주차구역 및 주(부)출입구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	장애인 주차구역 크기의 적정성 여부	14	64.3	14.3		21.4
2	장애인 주차구역의 장애인 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부착 여부	14	57.2	35.7	92.9	7.1
3	주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차이 2cm이하 여부	20	75	5		20

- 모니터링 대상 중 주차구역이 있는 기관은 16개 기관이며, 주차구역이 있는 기관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기관은 87.5%(14곳)였음. 장애인 주차구역의 크기가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으로 모든 면이 적합한 기관은 64.3%(9곳)였으며,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면과 주차장 내의 입식 안내표지가 모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57.2%(8곳)에 불과하였음. 지체장애인의 경우 훈련기관 통학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훈련기관에 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가 필요하며 주차구역 크기, 안내표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주(부)출입구와 연결 접근로의 높이차이가 2cm 이하이거나 경사로의 기울기를 1/12로 완만하게 설치한 기관은 75%(15곳)로, 장애교육생이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접근 시 경사로의 기울기가 가파르거나 단차가 2cm 이상인 경우 접근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그림 1] 직업교육훈련기관 건물 내 별도로 설치된 장애인 주차구역



[그림 2] 관리가 미흡한 장애인 주차구역 전용표지

2) 내부시설

① 주출입문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4	주출입문 높이차이 제거 여부	20	80			20
5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여부	20	95			5
6	주출입문 손잡이의 0.8~0.9m 사이에 설치 여부	20	85	5	90	10
7	주출입문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20	40	0	40	60
7-1	주출입문전면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8	75	25		
7-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8	87.5	12.5		

- 주출입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 가능하도록 높이 차이가 2cm 이하인 기관은 80%(16곳)으로 주출입문의 단차가 2cm 이상인 4개 기관은 단차제거가 필요함. 주출입문 통과 유효폭이 0.8m 이상인 기관은 95%(19곳)이며, 휠체어 사용자가 용이하게 문을 열 수 있도록 주출입문 손잡이의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m~0.9m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85%(17곳)임.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주출입문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40%(8곳)에 불과하고 미설치된 경우가 60%(12곳)로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점형블록 추가 설치가 필요함. 설치된 점형블록 중 25%(2곳)는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0.3m 전면간격이 맞지 않거나 문폭 만큼 설치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이용 시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설치된 점형블록의 87.5%(7곳)는 잘 관리되고 있었으나, 12.5%(1곳)는 훼손되어 있는 등 유지·관리가 필요함.



[그림 3] 계단만 설치되었고 별도 경사로가 없어 [그림 4] 주출입문의 문폭만큼 설치되지 않은 점형블록

② 엘리베이터 및 계단

가) 엘리베이터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8	엘리베이터 전면에 1.4m×1.4m의 활동공간 확보 여부	17	94.1	5.9		0
9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17	58.8	5.9	64.7	35.3
9-1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11	90.9	9.1		
9-2	설치된 점자블록은 훼손되지 않고 상태가 유지되는지 여부	11	100	0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0	엘리베이터 내부의 세로조작반·층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부착 여부	17	88.2	0	88.2	11.8
11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가로형 조작반은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설치 여부	17	76.5	5.9	82.4	17.6
12	엘리베이터 내부의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의 동작 여부	17	58.8	41.2	100	0
13	엘리베이터 외부의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의 동작 여부	17	64.7	29.4	94.1	5.9

- 층간 이동이 필요한 19개 훈련기관 중 내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전체 모니터링 대상 중 89.5%(17곳)임. 이 중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전면 1.4m×1.4m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기관은 94.1%(16곳)임.
- 시각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의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58.8%(10곳)로 높지 않으며 점형블록이 미설치된 기관은 35.3%(6곳)였음. 설치된 점형블록 중 9.1%(1곳)는 호출버튼 전면 0.3m 간격이 맞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이용 시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설치된 점형블록은 잘 관리·유지되고 있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내부의 세로조작반과 층수, 통화장치 등 모든 부분의 점자표지 설치율은 88.2%(15곳)였으며, 미설치율은 11.8%(2곳)였음.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가로형 조작반이 미설치된 경우는 17.6%(3곳)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조작하는데 불편함이 있음.
- 엘리베이터 내부에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과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음성신호장치가 모두 설치된 비율은 58.8%(10곳)였으며, 일부만 설치되거나 작동하는 경우는 41.2%(7곳)였음. 엘리베이터 외부에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과 음성신호장치가 모두 설치된 비율은 64.7%(11곳)였으며, 일부만 설치 및 작동되는 비율은 29.4%(5

곳)였음. 시·청각 장애인의 엘리베이터 이용을 위해 미설치되거나 일부만 설치 및 작동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그림 5] 깔판으로 가려져 있는 점형블록



[그림 6] 전면간격이 맞지 않는 엘리베이터 전면 점형블록

나) 계단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4	계단 손잡이의 양 끝 부분의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19	5.3	5.3	10.6	89.4
15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에서 표준형 점형블럭 설치 여부	19	15.8	0	15.8	84.2
15-1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3	100	0		
15-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3	100	0		

- 계단 손잡이의 양끝부분에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모두 설치된 기관은 5.3%(1곳)에 불과하며, 미설치된 기관은 89.5%(17곳)로 높았음.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의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15.8%(3곳), 미설치율은 84.2%(16곳)로 훈련기관의 대부분은 시각장애 교육생이 적거나 경증으로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느끼는 것으로 보임. 설치된 점형블록은 모두 전면 간격을 준수하였으며, 잘 관리되고 있었음.

3) 안내시설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6	시각장애인이 시설의 배치를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혹은 음성안내장치 설치 여부	20	5	0	5	95
17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피난설비의 설치 여부	20	60	35	95	5
18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시스템(경광등)·피난 설비의 설치 여부	20	55	35	90	10

- 시각장애인이 기관 내의 주요시설 및 위치 등에 알 수 있도록 점자가 병기되어 있는 일반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이 설치된 기관은 5%(1곳)로, 「편의증진법 시행령」 상 유도 및 안내설비는 권장사항에 그치고 촉지도식 안내판은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훈련기관의 경우 건물 1층이 아닌 다른 층을 임차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보임.
-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 또는 피난설비 설치율은 95%(19곳)이며, 연속적으로 설치가 된 훈련기관은 60%(12곳)임.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 또는 피난설비 설치율은 90%(18곳)이며, 연속적으로 설치가 된 역은 55%(11곳)임. 재난상황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경보설비는 훈련기관의 90%이상이 설치되었으나, 미설치되거나 비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 수업을 받고 있는 장애교육생의 안전을 위하여 추가 설치가 필요함.



[그림 7, 8] 시, 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스템

4) 위생시설

① 일반사항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19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여부	20	55	15	70	30
20	화장실 바닥 단차 2cm이하 여부	14	85.7			14.3
21	일반화장실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20	45	5	50	50
21-1	일반화장실 전면 0.3m이상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여부	10	70	30		
21-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10	90	10		
22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에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20	35	5	40	60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된 기관은 70%(14곳)였으며, 남·여 구분하여 각각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55%(11곳), 남·여 공용으로 설치된 기관이 15%(3곳), 미설치된 기관은 30%(6곳)로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가 필요함.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의 바닥 단차는 85.7%(12곳)가 2cm 이하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었으나,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사용이 어려운 14.3%(2곳)는 단차를 제거하도록 해야함.
- 일반화장실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45%(9곳), 비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5%(1곳), 미설치율은 50%(10곳)였음. 설치된 점형블록 중 30%(3곳)는 화장실 전면 0.3m 간격이 맞지 않아 설치위치의 조정이 필요하며 10%(1곳)는 깔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훼손되어 있어 유지·관리가 필요함.
-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여를 구분하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된 훈련기관은 40%(8곳)에 불과했으며, 설치기준인 1.5m의 범위 밖에 설치된 경우도 5%(1곳)로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그림 9, 10] 단차가 있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장실

② 대변기 및 세면대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23	대변기의 출입문 형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14	85.7			14.3
24	대변기 전면 활동 공간(1.4m×1.4m) 확보 여부	14	50	7.1		42.9
25	대변기 양옆 수평수직손잡이, 회전식 손잡이 설치 여부	14	85.7	14.3	100	0
26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리는 시각적 실비 설치 여부	14	50	0	50	50
27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높이 0.85m이하, 하단높이 0.65m이상) 설치 및 하부공간 확보 여부	14	42.9	57.1	100	0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대변기 출입문의 적정 설치율은 85.7%(12곳)였음. 적절하게 설치된 출입문의 종류로는 미닫이가 50%로 가장 많았고, 내부공간 확보된 여닫이문 41.7%, 자동문 8.3%였음. 내부공간이 미확보된 안여닫이가 설치된 기관은 14.3%(2곳)로 장애인이 쉽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휠체어 사용자 등 장애인이 회전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이 1.4m×1.4m 이상 확보된 기관은 50%(7곳)에 불과했으며, 활동공간이 1.2m×

1.2m 미만인 기관도 42.9%(6곳)로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활동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대변기 양옆 수평수직손잡이와 회전식 수평손잡이가 모두 설치된 경우는 85.7%(12곳)로 모두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대변기의 출입문에 청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사용여부를 알 수 있도록 색상과 문자로 시각적 설비를 설치한 훈련기관은 50%(7곳)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편의증진법 시행령」 상 권장사항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세면대의 상단높이가 바닥면으로 0.85m이하, 하단높이는 0.65m이상이며 하부는 무릎 및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한 기관은 42.9%(6곳)였으며 전반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음.



[그림 11] 회전식 손잡이가 미설치된 장애인용 화장실



[그림 12]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세면대

5) 기타시설

① 강의실, 교무실 및 행정실

(단위: %, (개))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28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강의실 설치 여부	20	90			10
29	출입문 높이차이 제거 여부	20	95			5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30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여부	20	95			5
3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책상의 (상단높이 0.7~0.9m, 하단높이 0.65m이상) 설치 및 하부공간(0.45m이상) 확보 여부	20	65	15	80	20
32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교무실과 행정실 설치 여부	19	94.7			5.3
33	주출입문 높이차이 제거 여부	19	94.7			5.3
34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여부	19	84.2			15.8

-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강의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90%(18곳)로, 10%(2곳)는 강의실이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접근할 수 없었음. 강의실의 출입문이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육생이 접근 가능하도록 높이차이가 제거 되어 있는 기관은 95%(19곳)였으며,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이 0.8m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95%(19곳)로 출입문의 접근성이 높은 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만큼 모든 기관이 접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교무실과 행정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94.7%(18곳)이며 교무실과 행정실 주출입문의 높이차이가 제거된 기관은 94.7%(18곳), 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이 확보된 기관은 84.2%(16곳)로 장애인 교육생이 교무실 및 행정실을 방문하는데 제한이 없도록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그림 13] 단차가 높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접근성이 낮은 강의실



[그림 14]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출입하기 어려운 문 폭의 강의실

<5> 모니터링 총평

1 학교

가.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보조인력, 장애인보조기구, 점자자료, 수화통역 등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함.
- 위원회가 2017. 6. 27. ~ 7. 21. 전국 6개 권역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 완전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 등 204개의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였음.
- 학교 유형별로 보면 특수학교에서 장애학생의 교내·외 행사 참여 시 장애학생의 부모 동반 요구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완전통합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일반학급)의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고 있는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97.1%였으며, 「특수교육법」 제22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있는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97.7%임. 「특수교육법」 제21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하는 바, 일반학교 중 94.9%의 학교에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었음. 위 사항들은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통합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모든 학교는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해야하며, 일반학교(일반학급)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증인 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가 많아 동 사항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있어 제공해야하는 편의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 및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해야하는데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74.9%가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었으며, 교육보조인력이 미배치된 25.1%의 일반학교에 그 이유를 문의한 결과 장애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아서가 86.4%로 가장 많았음. 보조인력의 종류로는 사회복지무원 33%, 보조실무원 63%, 기타 4%였으며,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학교에서 교육보조인력 1인당 장애학생 수는 평균 6.5명이며,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수학교는 평균 6.3명, 일반학교는 평균 7.3명임. 남·여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은 평균 10.2명, 여성은 평균 4명이며,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특수학교는 평균 9.4명, 일반학교는 평균 14.3명이며 여성은 평균 4명으로 동일함. 보조인력이 동일한 성의 장애학생만을 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장애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해 장애학생 대비 더 많은 보조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특히 남성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등을 위해 남성 보조인력이 추가로 배치될 필요성이 있음.

- 장애학생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이 편의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됨. 장애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 받은 적이 있는 특수학교는 82.8%, 일반학교는 52.6%임. 특수학교에서 요청받은 편의를 제공한 경우는 95.8%, 일부만 제공한 경우는 4.2%이며, 일반학교에서 요청받은 편의를 제공한 경우는 93.5%, 일부만 제공한 경우는 5.4%, 미제공한 경우는 1.1%임. 일부제공 또는 미제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문의한 결과 특수학교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라고 답변했으며, 일반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유형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아서가 66.7%로 가장 많았음. 정당한 편의에 대한 요청이 없는 것은 그 편의가 필요 없어서 일수도 있고, 편의 관련 법적 권리에 대해 몰라서 일수도 있으며, 관련 편의를 요청하

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할 수도 있기 때문일 수 있음. 장애학생이 입학 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지 않는 일반학교는 2.9%인 바, 일반학교에서는 장애학생 등록 시 학부모 등에게 정당한 편의제공 절차나 내용 등에 더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음.

- 장애학생이 체육대회 등 교내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적이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는 6.9%, 일반학교는 5.7%이며,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적이 있는 학교는 특수학교는 6.9%, 일반학교는 25.1%로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문의한 결과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모두 장애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음. 그 외에 일반학교에서는 학교 밖 활동을 하는 장소의 접근성 등이 확보되지 않아서, 장애학생을 지원할 보조인력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있었음. 장애학생의 교내·외 행사 참여 시 이동과 안전 등의 이유로 장애학생의 부모 동반을 요구한 적이 있는 특수학교는 20.7%, 일반학교는 9.7%로, 중증장애학생이 다수 재학 중인 특수학교에서 부모동반을 요구한 비율이 높았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장애학생의 교내·외 행사 참여 시 부모 동반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 측의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비장애학생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 소지가 있으며, 장애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제한하고 가족에게만 장애인의 부양의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임. 따라서 학교 밖 활동도 교육활동의 일환인 바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이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소 선택 시 접근성을 고려해야함.

나. 시설 접근성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8조 제3항에서는 장애인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에서 학교의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 시설의 종류로 매개시설(주출입구 등), 내부시설(출입문, 승강기 등), 위생시설(대변기, 소변기), 안내시설(점자블록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시설들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 학교 유형별로 보면 특수학교의 장애인 시설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편의시설의 경우 점자블록, 점자표지 설치 등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학교 건물의 주 출입구와 연결 접근로의 높이차이가 2cm 이하이거나 기울기가 1/12 이하인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는 특수학교 96.6%, 일반학교 86.9%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학교 건물에 접근 가능하도록 접근로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거나 주출입구의 단차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학교 내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는 학교는 특수학교 96.6%, 일반학교 90.3%로 엘리베이터 내부의 편의시설은 대체적으로 잘 설치되었으나 엘리베이터 내·외부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음향신호장치가 모두 작동하는 경우는 일반학교의 경우 70~80% 사이로 일부만 작동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여가 구분되어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교는 93.1%, 일반학교는 66.9%이며, 장애인용 화장실이 미설치된 학교는 일반학교 3.4%임. 또한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1.4m×1.4m)을 확보한 특수학교는 62.1%, 일반학교는 46.1%에 불과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음.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특수학교는 89.3%, 일반학교는 91.8%이며, 계단, 일반화장실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각각 특수학교 80%대, 일반학교 40%대로 높지 않음. 또한 계단 손잡이 점자표지판 설치율은 특수학교는 82.8%, 일반학교 41.7%이며, 일반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 여 구분 점자표지판을 설치한 경우도 특수학교는 89.7%, 일반학교는 49.1%에 그쳐 일반학

교의 경우 재학 중인 시각장애학생이 많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사가 학교에 근무하거나 학부모 등이 학교에 방문할 수 있으므로 시각장애인의 안내시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장애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비상상황 발생을 알려주는 경보시스템의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의 설치율이 각각 특수학교는 모두 100%, 일반학교는 94.8%, 89.1%로 경보시스템이 미설치되거나 비연속적으로 설치된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장애학생 등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교실과 교무실 등이 설치된 학교는 특수학교는 모두 100%, 일반학교는 모두 96.6%로 높았으나, 상대적으로 도서관과 체육관에 대한 접근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장애학생 등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도서관이 설치된 특수학교는 100%, 일반학교는 89%이며, 실내체육관이 장애학생 등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된 특수학교는 96%, 일반학교는 79.9%로 장애학생들이 학교 내의 건물 이동에 제한이 없도록 시설 접근성을 확보해야할 의무가 있음.

다. 소결

- 장애학생의 교육권 증진을 위하여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의 학습 등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물리적 접근 제한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또한 일반학교에 입학한 장애학생들이 장애와 관련된 욕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학교는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해야함. 학교 및 관련 부처에서는 장애학생이 학교에 입학하여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물리적 접근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의 시설물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할 것임.

< 개선이 필요한 사항 >

○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학생 지원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 장애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교육계획 수립·시행
-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조인력, 장애인보조기구 등 정당한 편의제공

○ 시설 접근성

- 주(부)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및 적정 기울기의 경사로 설치
-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도착 등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신호장치 동작
- 주출입문, 엘리베이터, 계단, 일반화장실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계단 손잡이에 점자표시 설치
- 주출입구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 유도·안내 설비 설치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스템(비상벨·경광등)의 연속적 설치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설치
-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1.5m 높이에 설치
-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1.4m×1.4m) 확보
- 교실, 교무실 및 행정실, 도서관, 실내체육관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2

직업교육훈련기관

가. 정당한 편의 제공

- 위원회는 장애인특화과정을 고용노동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 예정인 전국 6개 권역의 직업교육훈련기관 20개 기관에서 장애교육생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하였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의 경우 2013. 4. 11.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교육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있으나, 장애인특화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경우 장애인 교육생만을 대

상으로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장애인이 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하면서 장애로 인한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연면적에 상관없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교육생 담당자를 두고 있는 훈련기관은 80%(16곳)임. 장애교육생 상담, 학습에 필요한 편의제공 방법 등 장애교육생 매뉴얼, 내부지침, 규정 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60%(12곳)였으며, 장애교육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인쇄물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고 있는 기관은 60%(12곳)에 불과하였음. 장애교육생이 교육활동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바 편의제공에 대한 내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편의제공 절차나 내용 등에 대해 장애교육생에게 사전에 상세하게 알려 장애로 인해 교육활동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장애교육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을 배치하고 있는 기관은 40%(8곳)였으며, 배치하고 있는 기관의 교육보조인력 1인당 장애교육생 수는 5.9명임. 교육 보조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기관에 그 이유를 문의한 결과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가 41.7%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지 않아서가 25%, 기타 의견으로는 현재 장애교육생이 없거나 교육생 외 수업 참여 불가가 33.3%였음. 교육보조인력은 장애교육생의 원활한 교육 참여를 지원하므로 장애교육생이 보조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함.
- 장애교육생으로부터 학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는 훈련기관은 40%(8곳)에 불과하였음. 이러한 정당한 편의에 대한 요청이 없는 것은 장애교육생이 그 편의가 필요 없어서 일수도 있고, 편의 관련 법적 권리에 대해 몰라서일 수도 있으며, 관련 편의를 요청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염려하기 때문일 수도 있음. 따라서 사전에 장애교육생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 절차나 내용 등에 알리는 것이 중요함.

- 시·청각 장애인이 등록 시 등록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훈련기관은 30%(6곳)이고, 시·청각 장애교육생이 있는 경우 교육에 있어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점자자료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5개 기관 중 1개 기관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교육책임자는 시·청각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등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도록 해야하는 바, 등록과정부터 수업 참여까지 시·청각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장애로 인해 교육활동에 배제되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함.
- 훈련기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훈련기관은 70%(14곳)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기관은 아니나, 장애인 특화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의 경우 교사,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당한 편의를 포함 장애 차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교육생이 직업훈련교육을 받음에 있어 장애로 인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지원해야함.

나. 시설 접근성

-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2]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로 매개시설(주출입구 등), 내부시설(출입문, 승강기 등), 위생시설(대변기, 소변기), 안내시설(경보 및 피난설비)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특화과정을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경우 장애교육생이 물리적 접근 제한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연면적에 상관없이 위 시설들의 접근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 모니터링 대상 중 주차구역이 있는 기관은 16개 기관이며, 주차구역이 있는 기관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기관은 87.5%(14곳)였음. 장애인 주차구역의 크기가 폭 3.3m이상, 길이 5m이상으로 모든 면이 적합한 기관은 64.3%(9곳)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이동 시 자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장애인 주차구역이 필요하므로 주차구역의 설치 및 적정 크기 기준 확보가 필요함.

- 주(부)출입구와 연결 접근로의 높이차이가 2cm 이하이거나 경사로의 기울기를 1/12로 완만하게 설치한 기관은 75%(15곳)이며, 주출입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 가능하도록 높이 차이가 2cm 이하인 기관은 80%(16곳)로 장애교육생이 훈련 기관에 접근 시 가파른 기울기나 단차로 인해 접근이 어려움. 강의실에 접근하기도 전에 건물의 출입구에서부터 물리적 접근제한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 층간 이동이 필요한 19개 훈련기관 중 내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전체 모니터링 대상 중 89.5%(17곳)이며, 이 중 휠체어 사용자를 위하여 엘리베이터 전면 1.4m×1.4m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기관은 94.1%(16곳)임. 엘리베이터 설치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내 이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편의 시설인 바 장애인특화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은 장소 임차 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함.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된 기관은 70%(14곳)였으며, 남·여 구분하여 각각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55%(11곳), 남·여 공용으로 설치된 기관이 15%(3곳), 미설치 된 기관은 30%(6곳)임. 대변기 전면에 휠체어 회전 및 이동을 위한 1.4m×1.4m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는 50%(7곳)에 그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실제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설치율은 전반적으로 낮았음.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58.8%(10곳)이며, 주출입문, 계단, 일반화장실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율은 각각 40%(8곳), 15.8%(3곳), 45%(9곳)로 낮음. 또한 계단 손잡이 점자표지판 설치율은 10.5%(2곳), 일반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에 남, 여 구분 점자표지판을 설치한 경우도 40%(8곳)에 그쳐 재학 중인 시각장애 교육생이 적거나 경증으로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낮게 느끼는 것으로 보임.
-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강의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90%(18곳)로, 10%(2곳)는 강의실이 2층 이상에 설치되어 있으나 엘리베이터가 미설치되어 휠체

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접근할 수 없었음.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교무실과 행정실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은 94.7%(18곳)임. 실제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강의실과 장애교육생이 방문 가능한 교무실과 행정실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여야 하는 바, 물리적 접근 제한이 있는 훈련기관은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야함.

다. 소결

- 장애교육생의 교육권 증진을 위하여 교육책임자는 장애학생의 학습 등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물리적 접근 제한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해야 함. 이번에 모니터링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특화과정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인 바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장애교육생 편의제공에 대한 내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편의제공 절차나 내용 등에 대해 장애교육생에게 사전에 상세하게 알려 장애로 인해 교육활동에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상당수의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시설을 임차하고 있어 시설 개선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나, 시설 임차 시 장애인주차구역,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충분히 고려하여 장애교육생이 물리적 접근 제한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제약이 있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 개선이 필요한 사항 >

○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교육생 담당자 지정
- 장애교육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조인력, 장애인 보조기구 등 정당한 편의제공
-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실시

< 개선이 필요한 사항 >

○ 시설 접근성

- 장애인 주차구역의 설치 및 적정 크기 확보
- 주(부)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및 적정 기울기의 경사로 설치
- 주출입문의 높이 차이 제거 및 적정 유효폭 확보
- 주출입문, 엘리베이터, 계단, 일반화장실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경보시스템(비상벨·경광등)의 연속적 설치
-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남·여 구분하여 설치
-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의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1.5m 높이에 설치
- 대변기 전면 활동공간(1.4m×1.4m) 확보
- 강의실, 교무실 및 행정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확보

[붙임 1]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 학교

학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기본 사항	
1. 학교이름 : [] <input type="checkbox"/> 특수학교(<input type="checkbox"/> 지체 <input type="checkbox"/> 시각 <input type="checkbox"/> 청각 <input type="checkbox"/> 지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일반학교(특수학급) <input type="checkbox"/> 일반학교(일반학급) ■ 건축일:(...) ■ 최종건축행위일:(...)	2. 담당자 : [] ■ 연락처 [- -]
3. 모니터링 지역 :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대전	4. 소속 : [] 조
5. 학생 현황(2017. 4. 기준) ■ 장애 학생 비율: ()% 장애 학생 수: 총 ()명 / 전체 학생 수(비장애인 포함) : 총 ()명 ■ 장애유형별 학생현황 ① 지체(뇌병변): ()명 ② 시각: ()명 ③ 청각: ()명 ④ 지적: ()명 ⑤ 자폐: ()명 ⑥ 기타: ()명 () ■ 특수학급 수: ()학급	

1. 정당한 편의제공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일반사항					
	1	장애학생 입학 시 보조인력, 학습보조기 등 어떠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절차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까?	제공	/	미제공	
	장애학생 지원 등					
	2	귀 학교에는 별도의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있음	/	없음 3번 이동	<input type="checkbox"/> 장애학생 지원부서 <input type="checkbox"/> 장애학생 담당자
2-1	장애학생 지원 담당자는 몇 명입니까?	■ 총 ()명 ① 특수교사 ()명 ② 일반교사 ()명 ③ 기타 ()명 ()				
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해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별 개별화교육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있음	/	없음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정 당 한 편 의 제 공	4	귀 학교는 매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차원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있음	/	없음	
	5	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중 장애학생 부모가 있습니까?	있음	/	없음	
	장애학생 교육 보조인력					
	6	장애학생 및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도우미)을 배치되어 있습니까?	배치	/	미배치 ☞ 6-4번 이동	
	6-1	장애학생과 배치하고 있는 교육 보조인력(도우미)은 몇 명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명 ■ 교육 보조인력(도우미): 총 ()명 ① 사회복지요원 ()명 ② 보조실무원 ()명 ③ 기타 ()명 () 			
	6-2	장애학생과 배치하고 있는 교육 보조인력(도우미) 성비는 어떻게 됩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남 ()명 여 ()명 ■ 교육 보조인력(도우미): 남 ()명 여 ()명 ① 사회복지요원 남 ()명 ② 보조실무원 남 ()명 여 ()명 ③ 기타 남 ()명 여 ()명 () 			
	6-3	현재 보조인력이 가장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학생의 교내·외 활동보조 ② 장애학생의 등·하교 지원 ③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④ 기타:() 			
	6-4	배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아서 ②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③ 적절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④ 기타:() 			
	통학에 필요한 편의제공					
	7	장애학생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제공 ☞ 8번 이동	/	미제공	
7-1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유형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아서 ②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③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④ 차량을 운행할 인력이 부족해서 ⑤ 기타:() 				
학습에 필요한 편의제공						
8	장애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음	/	없음 ☞ 9번 이동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정당한 편의 제공	8-1	귀 학교는 장애학생 및 학부모가 요청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까?	제공 9번 이동	일부 제공	미제공	
	8-2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애학생이 장애 정도·유형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아서 ②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③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④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알지 못해서 ⑤ 기타:()			
	9	지체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장애인의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공	/	미제공	※ 이동용 보장구: 휠체어 등
	10	지체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높낮이 조절용 책상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제공	/	미제공	
	11	시·청각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에 있어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제공	/	미제공	※ 제공하고 있는 편의 모두 표기 ① 점자자료 ② 점자·음성 변환용코드 삽입자료 ③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 ④ 큰 문자자료 ⑤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⑥ 무지점자단말기 ⑦ 수화통역 ⑧ 문자통역(속기) ⑨ 자막 ⑩ 보청기기 ⑪ 기타()
	시험 평가에 있어 필요한 편의제공					
	12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시험 또는 평가과정 등의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제공 13번 이동	/	미제공	※ 제공하고 있는 편의 모두 표기 ① 평가방법의 변경 ② 시험 시간의 연장 ③ 시험 편의도구 제공(컴퓨터, 확대답안지, 보청기기 등) ④ 보조인력 제공 ⑤ 기타()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정 당 한 편 의 제 공	12-1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 ②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유형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아서 ③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④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알지 못해서 ⑤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⑥ 기타:()			
	장애 학생의 교내·외 행사 참여					
	13	체육대회 등 장애학생이 교내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음 14번 이동	/	있음	
	13-1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애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지 않아서 ② 장애학생을 지원할 보조인력이 없어서 ③ 보조기구가 없어서 ④ 기타:()			
	14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장애학생이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음 15번 이동	/	있음	
	14-1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애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지 않아서 ② 장애학생을 지원할 보조인력이 없어서 ③ 보조기구가 없어서 ④ 학교 밖 활동을 하는 장소의 접근성 등이 확보되지 않아서 ⑤ 기타:()			
	15	장애학생의 교내외 행사 참여 시 이동과 안전 등의 이유로 장애학생의 부모 동반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있음	/	없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6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수업이나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실시	/	미실시	
	16-1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수업 또는 교육을 얼마나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연간 1회 ② 학기별 1회 ③ 분기별 1회 ④ 월별 1회 ⑤ 기타()			
16-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내부교사가 진행 ② 외부 전문가가 진행 ③ 기타()				

2. 시설 접근성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매개 시설	매개시설						
	접근로	장애인들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1	보도 또는 접근로의 유효폭은 1.2m이상 확보되어 있습니까?	전체구간 1.2m이상 확보	일부구간 1.2m이상 확보	전체구간 1.2m미만	
	2	휠체어 사용자 등 보행자를 위한 보행안전통로는 차도와 분리되어 있습니까?	보행통로와 차도에 공작물 또는 경계석 등으로 구분	보행통로용 안전선만 색상 표기	구분없음		
	출입구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주(부)출입구					
		3	주(부)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차이가 2cm이하로 주출입문까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 가능합니까?	2cm이하의 단차 또는 경사로를 1/12이하 설치	단차가 2cm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1/12초과하여 설치	단차 2cm초과	
	내부 시설	내부시설					
출입문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4	주출입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 가능하도록 높이차이가 제거되어 있습니까?	단차 2cm이하		단차 2cm초과	
		5	주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0.8m이상 확보되어 있습니까?	0.8m이상		0.8m미만	
		6	주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높이는 0.8 ~ 0.9m	높이는 0.8m미만 또는 0.9m초과	수동문이면서 손잡이 없음	
		7	주출입문 전면에 점형블록이 표준형(0.3m×0.3m)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표준형 (0.3m×0.3m)	비표준형	미설치 ☞ 8번 이동	
		7-1	주출입문 전면에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0.3m이격해서 문폭만큼 설치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0.3m이격하지 않거나 문폭만큼 설치하지 않음		
7-2	설치된 점형블록은 훼손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형태유지	갈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훼손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엘리베이터							
학교 내부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14번으로)							
내부시설	엘리베이터	8	엘리베이터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이 있습니까?	전면 1.4m×1.4m 이상 활동공간 확보	전면 1.4m×1.4m 미만 활동공간 확보	전면 1.2m×1.2m 미만 활동공간 확보	
		9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에 점형블록이 표준형(0.3m×0.3m)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표준형 (0.3m×0.3m)	비표준형	미설치 ☞ 10번 이동	
		9-1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에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면 간격 0.3m을 두고 설치	전면 간격이 맞지 않음		
		9-2	설치된 점형블록은 훼손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형태유지	갈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훼손		
		10	엘리베이터 내부의 세로조작반·층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 점자표지판 부착	일부 부분만 점자표지판 부착	미부착	
		11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형 가로형 조작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0.8 ~ 0.9m에 설치	0.8m미만 또는 0.9m초과	미설치	
		12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두 설치 및 작동	일부만 설치 및 작동	미설치	
		13	엘리베이터 외부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모두 설치 및 작동	일부만 설치 및 작동	미설치	
계단							
계단		14	계단 손잡이의 양끝부분에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든 손잡이 양끝부분에 점자표지판 설치	일부 손잡이 양끝부분에 점자표지판 설치	미설치	
		15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에 점형블록이 표준형(0.3m×0.3m)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표준형 (0.3m×0.3m)	비표준형	미설치 ☞ 16번 이동	
		15-1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에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점에 전면 간격 0.3m을 두고 설치	일부에만 설치 또는 전면 간격이 맞지 않음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계단	15-2	설치된 점형블록은 훼손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형태유지	깔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훼손			
	안내시설						
안내시설	안내 및 유도시설						
	16	시각장애인이 해당 시설의 주요시설 및 위치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관리가 미흡함	미설치	※ 일반 안내판에 점자가 병기된 경우 적정	
	경보 피난시설						
경보 피난 시설	17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시스템(비상벨)·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설치	설치하였으나, 연속성 떨어짐	미설치		
	18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설치	설치하였으나, 연속성 떨어짐	미설치		
위생시설	위생시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28번으로)						
	장애이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21번으로)						
	일반사항						
	19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여 구분하여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여 구분하여 각각 1개 설치	남·여 공용으로 1개 설치	장애이용 화장실 미설치	※ 층간으로 남녀 구분된 것은 적정	
	20	화장실의 바닥 단차가 2cm이하 입니까?	단차 2cm이하		단차 2cm초과		
	21	일반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이 표준형(0.3m×0.3m)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표준형 (0.3m×0.3m)	비표준형	미설치 ☞ 22번 이동		
	21-1	일반 화장실에 전면 0.3m 이상 간격을 두고 떨어져 점형블록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면 간격 0.3m을 두고 설치	전면 간격이 맞지 않음			
	21-2	설치된 점형블록은 훼손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형태유지	깔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훼손			
	22	일반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여를 구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여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 1.5m높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남·여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에 점자표지판 설치	점자표지판 미설치	※ 일반 화장실만 설치된 경우 ☞ 28번 이동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위생시설	대변기						
	대변기	23	대변기의 출입문 형태가 적절하게 되어있습니까?	적정 ☞ 참고	/	내부공간 미확보된 안여단이	<input type="checkbox"/> 자동문 <input type="checkbox"/> 미닫이 <input type="checkbox"/> 내부공간 확보된 여단이
		24	대변기의 전면에 회전을 위한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2m×1.2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2m×1.2m 미만의 활동공간 확보	
		25	대변기의 한쪽에는 수평수직손잡이가, 다른 한쪽에는 회전식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두 설치	일부만 설치	미설치	
		26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적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표시	색상 또는 문자로 사용여부 표시	미설치	
	세면대	세면대					
		27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0.85m이하, 하단높이는 0.65m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적정 설치기준 만족	적정 설치기준 일부 미준수 ☞ 참고	장애인 이용가능 세면대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세면대 높이 미준수 <input type="checkbox"/> 하부공간 미확보
기타시설	기타시설						
	교실						
	교실	28	특수학급(교실)은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접근 가능	/	접근 어려움	※ 설치위치: ()층
		29	교실의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 가능하도록 높이차이가 제거되어 있습니까?	단차 2cm이하	/	단차 2cm초과	
		30	교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0.8m이상 확보되어 있습니까?	0.8m이상	/	0.8m미만	
	교무실	교무실 및 행정실					
31		교무실과 행정실은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접근 가능	/	접근 어려움	※ 설치위치: ()층	
32	교무실과 행정실의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 가능하도록 높이차이가 제거되어 있습니까?	단차 2cm이하	/	단차 2cm초과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기 타 시 설	33	교무실과 행정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0.8m이상 확보되어 있습니까?	0.8m이상		0.8m미만	
	도서관					
	학교 내에 도서관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38번으로)					
	34	도서관은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접근 가능		접근 어려움	※ 설치위치: ()층
	35	열람석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출입구 및 피난통로 옆에 설치	단차 없이 연결됨	단차 있어 연결 안됨	
	36	휠체어 사용자용 열람석은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0.9m이며, 하단은 높이가 0.65m이상이며 휠체어 발받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0.45m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적정 설치기준 만족	일부 설치기준 만족	모든 설치기준 부적합	
	체육관					
	학교 내에 실내 체육관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42번으로)					
	37	실내 체육관은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접근 가능		접근 어려움	※ 설치위치: ()층
	38	실내 체육관의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 가능하도록 높이차이가 제거되어 있습니까?	단차 2cm이하		단차 2cm초과	
39	실내 체육관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0.8m이상 확보되어 있습니까?	0.8m이상		0.8m미만		
실내 체육관 이용을 위하여 체육관 내에 수직 이동이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42번으로)						
40	체육관 내에서 수직 이동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엘리베이터 등)	설치		미설치	※ 종류: _____	
기타						
41	그 밖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장애 학생이 학습하는데 있어 불편한 사항 및 보완할 사항은?					

2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기본 사항	
1. 기관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면적: () ■ 건축일: (. . .) 최종건축행위일: (. . .) 	2. 담당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락처 [- -] 이메일 [@]
3. 모니터링 지역 : <input type="checkbox"/> 서울 <input type="checkbox"/> 경기 <input type="checkbox"/> 부산 <input type="checkbox"/> 광주 <input type="checkbox"/> 대구 <input type="checkbox"/> 대전	4. 소속 : [] 조
5. 교육생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교육생 비율: ()% 장애인 교육생 수: 총 ()명 / 전체 교육생 수(비장애인 포함) : 총 ()명 장애유형별 교육생 현황 ① 지체(뇌병변): ()명 ② 시각: ()명 ③ 청각: ()명 ④ 발달: ()명 ⑤ 기타: ()명 () 	

1. 정당한 편의제공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정당한 편의 제공	일반사항					
	1	귀 기관은 장애교육생 대상 직업훈련을 언제부터 실시하였습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17년에 처음 실시함 ② 이전에 실시한 적 있음(년부터 실시) ③ 기타() 			
	2	귀 기관이 장애교육생의 학습 지원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보조기구가 있습니까?	있음	/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하고 있는 편의 모두 표기 ① 휠체어 ② 확대경 ③ 보청기기 ④ 높낮이 조절용 책상 ⑤ 기타()
	3	귀 기관에는 장애교육생 상담, 학습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 장애교육생에 대한 매뉴얼 또는 내부 지침, 규정 등이 있습니까?	있음	/	없음	
4	귀 기관에는 장애교육생을 담당하는 별도의 담당자가 있습니까?	있음	/	없음	5번 이동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정당한 편의 제공	4-1	장애교육생 지원 담당자는 몇 명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명 ① 상근직원 ()명 ② 비상근직원 ()명 ③ 기타 ()명 () 			
	모집·등록 과정에서의 편의제공					
	5	귀 기관은 교육생 모집에 있어 장애인이 필요로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쇄물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까?	안내함		안내하지 않음	
	6	귀 기관은 시·청각 장애인이 등록 시 등록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있음		없음	※ 제공하고 있는 편의 모두 표기 ① 확대문서 ② 수화통역 ③ 보조인력 ④ 기타()
	7	귀 기관은 교육생들의 등록 시 원칙적으로 온라인 등록만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 8번 이동		예	
	7-1	온라인 등록만을 실시하고 있다면,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른 신청방법(전화, 직접방문, 기타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까?	허용함		허용하지 않음	
	장애교육생 보조인력					
	8	장애교육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보조교사, 도우미 등)을 배치하고 있습니까?	배치		미배치 ☞ 8-3번 이동	
	8-1	장애교육생과 배치하고 있는 교육 보조인력(보조교사, 도우미 등)은 몇 명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교육생: ()명 ■ 교육 보조인력(도우미): ()명 			
	8-2	현재 보조인력이 가장 중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교육생의 교육활동 보조 ② 장애교육생의 이동 지원 ③ 기타:() 			
	8-3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 ② 필요하지 않아서 ③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④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알지 못해서 ⑤ 기타:()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학습에 필요한 편의제공						
정당한 편의 제공	9	장애교육생으로부터 학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음	/	없음 ☞ 10번 이동	
	9-1	귀 기관은 장애교육생이 요청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까?	제공 ☞ 10번 이동	일부 제공	미제공	
	9-2	제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필요하지 않아서 ②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③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④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알지 못해서 ⑤ 기타:()			
	10	시·청각 장애교육생이 있는 경우 교육에 있어 시·청각 장애교육생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점자로 된 교재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제공	/	미제공	※ 제공하고 있는 편의 모두 표기 ① 점자자료 ② 점자·음성 변환용코드 삽입자료 ③ 인쇄물음성 변환출력기 ④ 큰 문자자료 ⑤ 화면낭독· 확대프로그램 ⑥ 무지점자단말기 ⑦ 수화통역 ⑧ 문자통역(속기) ⑨ 자막 ⑩ 보청기기 ⑪ 기타()
	시험 평가에 있어 필요한 편의제공					
귀 기관은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시험 또는 평가과정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11	장애 교육생에게 적절한 시험 또는 평가과정 등의 편의제공을 하고 있습니까?	제공 ☞ 12번 이동	/	미제공	※ 제공하고 있는 편의 모두 표기 ① 평가방법의 변경 ② 시험 시간의 연장 ③ 시험 편의도구 제공(컴퓨터, 확대답안지, 보청기기 등) ④ 보조인력 제공 ⑤ 기타()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정 당 한 편 의 제 공	11-1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 ② 필요하지 않아서 ③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④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알지 못해서 ⑤ 다른 교육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⑥ 기타:()			
	장애 교육생의 실습 참여					
	12	장애교육생이 장애로 인하여 훈련 실습에 참여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없음 ☞ 13번 이동	/	있음	
	12-1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장애교육생이 원하지 않아서 ② 장애교육생을 지원할 보조인력이 없어서 ③ 보조기구가 없어서 ④ 기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3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실시	/	미실시 ☞ 13-2번 이동	
	13-1	실시한 적이 있다면,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① 교사 ② 교직원 ③ 기타()			
13-2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 ② 비용이 많이 들어서 ③ 필요성을 못 느껴서 ④ 기타()				

2. 시설 접근성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매개시설	매개시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해당 시설에 주차장(주차구역)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3번으로)					
	해당시설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3번으로)					
	1	주차구역의 크기는 폭이 3.3m이상, 길이는 5m이상입니까? (※ 평행주차의 경우 폭 2m, 길이 6m이상)	모든 주차면 적합	일부 주차면 적합	모든 주차면 부적합	
	2	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표시가, 주차장 내에는 입식안내표시가 부착 또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바닥표시 및 안내표시 모두 설치	일부만 설치	둘다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바닥표시 설치 <input type="checkbox"/> 안내표지 설치
출입구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주(부)출입구					
	3	주(부)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차이가 2cm이하로 주출입문까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 가능합니까?	2cm이하의 단차 또는 경사로를 1/12이하 설치	단차가 2cm이상인 경우 경사로를 1/12초과 하여 설치	단차 2cm초과	
내부시설	내부시설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					
	4	주출입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 가능하도록 높이차이가 제거되어 있습니까?	단차 2cm이하	/	단차 2cm초과	
	5	주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0.8m이상 확보되어 있습니까?	0.8m이상	/	0.8m미만	
	6	주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0.9m사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높이는 0.8 ~ 0.9m	높이는 0.8m미만 또는 0.9m초과	수동문이면서 손잡이 없음	
출입문	7	주출입문 전면에 점형블록이 표준형(0.3m×0.3m)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표준형 (0.3m×0.3m)	비표준형	미설치 ☞ 8번 이동	
	7-1	주출입문 전면에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0.3m이격해서 문폭만큼 설치	주출입문을 닫은 상태에서 앞뒤 0.3m이격하지 않거나 문폭만큼 설치하지 않음	/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출입문	7-2	설치된 점형블록은 훼손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형태유지	깔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훼손		
	교육기관 이용을 위해 2층 이상으로 이동이 필요합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16번으로)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14번으로)					
	8	엘리베이터 전면에는 1.4m×1.4m이상의 활동공간이 있습니까?	전면 1.4m×1.4m 이상 활동공간 확보	전면 1.4m×1.4m 미만 활동공간 확보	전면 1.2m×1.2m 미만 활동공간 확보	
	9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에 점형블록이 표준형(0.3m×0.3m)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표준형 (0.3m×0.3m)	비표준형	미설치 ☞ 10번 이동	
	9-1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에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면 간격 0.3m을 두고 설치	전면 간격이 맞지 않음		
	9-2	설치된 점형블록은 훼손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형태유지	깔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훼손		
	10	엘리베이터 내부의 세로조작반·층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가 부착되어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 점자표지판 부착	일부 부분만 점자표지판 부착	미부착	
	11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형 가로형 조작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0.8 ~ 0.9m에 설치	0.8m미만 또는 0.9m초과	미설치	
내부시설	12	엘리베이터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두 설치 및 작동	일부만 설치 및 작동	미설치	
	13	엘리베이터 외부에는 엘리베이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작동하고 있습니까?	모두 설치 및 작동	일부만 설치 및 작동	미설치	
	계단					
계단	14	계단 손잡이의 양끝부분에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든 손잡이 양끝부분에 점자표지판 설치	일부 손잡이 양끝부분에 점자표지판 설치	미설치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내부시설	15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에 점형블록이 표준형(0.3m×0.3m)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표준형 (0.3m×0.3m)	비표준형	미설치		
	15-1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에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점에 전면 간격 0.3m을 두고 설치	일부에만 설치 또는 전면 간격이 맞지 않음			
	15-2 설치된 점형블록은 훼손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형태유지	갈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훼손			
안내시설						
안내 및 유도시설						
안내시설	16 시각장애인이 해당 시설의 주요시설 및 위치 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점자안내판 또는 음성안내장치 설치	설치되어 있으나, 유지·관리가 미흡함	미설치	※ 일반안내판에 점자가 병기된 경우 적정	
	경보 피난시설					
	17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시스템(비상벨)·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설치	설치하였으나, 연속성 떨어짐	미설치		
18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피난설비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설치	설치하였으나, 연속성 떨어짐	미설치			
위생시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28번으로)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21번으로)						
일반사항						
위생시설	19 장애인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남·여 구분하여 각각 1개 이상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여 구분하여 각각 1개 설치	남·여 공용으로 1개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미설치	※ 남·여 구분하여 다른 층에 설치하되, 안내표지를 설치한 경우는 '설치'로 봄	
	20 화장실의 바닥 단차가 2cm이하 인니까?	단차 2cm이하		단차 2cm초과		
	21 일반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록이 표준형(0.3m×0.3m)으로 설치되어 있습니까?	표준형 (0.3m×0.3m)	비표준형	미설치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일반사항	21-1	일반 화장실에 전면 0.3m 이상 간격을 두고 떨어져 점형블록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습니까?	전면 간격 0.3m을 두고 설치	전면 간격이 맞지 않음		
	21-2	설치된 점형블록은 훼손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형태유지	갈판 등으로 덮여있거나 훼손		
	22	일반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의 1.5m 높이에 남·여를 구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남·여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 1.5m높이에 점자표지판 설치	남·여 화장실 출입구(문) 옆 벽면에 점자표지판 설치	점자표지판 미설치	※ 일반화장실만 설치된 경우 ☞ 28번 이동
위생시설	대변기					
	23	대변기의 출입문 형태가 적절하게 되어있습니까?	적정 ☞ 참고		내부공간 미확보된 안여단이	<input type="checkbox"/> 자동문 <input type="checkbox"/> 미단이 <input type="checkbox"/> 내부공간 확보된 여단이
	24	대변기의 전면에 회전을 위한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2m×1.2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1.2m×1.2m 미만의 활동공간 확보	
	25	대변기의 한쪽에는 수평수직손잡이가, 다른 한쪽에는 회전식 수평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모두 설치	일부만 설치	미설치	
	26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 수 있는 시각적 설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색상과 문자로 사용여부 표시	색상 또는 문자로 사용여부 표시	미설치	
	세면대					
세면대	27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0.85m이하, 하단높이는 0.65m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적정 설치기준 만족	적정 설치기준 일부 미준수 ☞ 참고	장애인 이용가능 세면대 미설치	<input type="checkbox"/> 세면대 높이 미준수 <input type="checkbox"/> 하부공간 미확보
기타시설	기타시설					
	강의실					
	28	강의실은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접근 가능		접근 어려움	※ 설치위치: ()층
29	강의실의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 가능하도록 높이차이가 제거되어 있습니까?	단차 2cm이하		단차 2cm초과		

항목	점검사항	적정	미흡	미설치	참고사항 및 실측결과
강의실	30 강의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0.8m이상 확보되어 있습니까?	0.8m이상	/	0.8m미만	
	31 휠체어 사용자도 이용이 가능한 책상이 있습니까? (*상단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0.7m~0.9m이하, 책상의 하부는 높이 0.65m이상, 깊이 0.45m 이상)	있음	있으나 일부 미준수 ☞ 참고	없음	<input type="checkbox"/> 높이 미준수 <input type="checkbox"/> 하부공간 미확보
교무실 및 행정실					
교무실 및 행정실이 별도로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35번으로)					
기 타 시 설	32 교무실과 행정실은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접근 가능	/	접근 어려움	* 설치위치: ()층
	33 교무실과 행정실의 출입문은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접근 가능하도록 높이차이가 제거되어 있습니까?	단차 2cm이하	/	단차 2cm초과	
	34 교무실과 행정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이 0.8m이상 확보되어 있습니까?	0.8m이상	/	0.8m미만	
기타					
기 타	35 그 밖의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교육생이 학습하는데 있어 불편한 사항 및 보완할 사항은?				

[붙임 2] 모니터링 결과 통계

1 학교

1] 정당한 편의제공

(단위: %, (개))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일반사항	1	장애학생 입학 시 보조인력, 학습보조기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전 안내 여부	29	175	100	97.1			0	2.9
	2	별도의 장애학생 지원부서 설치 또는 담당자 여부	29	175	100	97.1			0	2.9
	3	매 학기마다 개별화 교육 수립을 위한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여부	29	175	100	97.7			0	2.3
	4	매년마다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 계획 수립 여부		175		94.9			0	5.1
	5	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 위원 중 장애학생 부모참여 여부	29	175	100	18.3			0	81.7
교육보조인력	6	장애학생 및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도우미)배치 여부	29	175	100	74.9			0	25.1
	6-1	장애학생과 배치하고 있는 교육 보조인력(도우미) 현황	29	131	전체 평균 6.5명 특수 평균 6.3명, 일반 평균 7.3명					
	6-2	장애학생과 배치하고 있는 교육 보조인력(도우미) 성비 현황	29	131	전체 평균 남 10.2명, 여 4명 특수 평균 남 9.4명, 여 4명 일반 평균 남 14.3명, 여 4명					
	6-3	보조인력의 주요 업무 현황	29	131	①장애학생의 교내·외 활동보조		58	69		
					②장애학생의 등·하교 지원		18	6.3		
					③장애학생의 신변처리		24	24.1		
					④기타		0	0.6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6-4	보조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44	①장애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아서					86.4			
					②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0			
					③적절한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0			
					④기타					13.6			
통학	7-1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108	①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유형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아서					79.8			
					②비용이 많이 들어서					0			
					③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2.8			
					④차량을 운행할 인력이 부족해서					0			
					⑤기타					17.4			
학습	8-2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1	6	①장애학생이 장애 정도·유형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아서				0	66.7			
					②비용이 많이 들어서				100	0			
					③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0	0			
					④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알지 못해서				0	0			
					⑤ 기타				0	33.3			
	8	장애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경험 여부	29	175	100	38.3			0	61.7			
					8-1	24	92	95.8	93.5	4.2	5.4	0	1.1
								8-1 학교의 장애학생 및 학부모가 요청한 편의 제공 여부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평가	9	지체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여부	20	135	95	37	/	/	5	63
	10	지체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낮낮이 조절용 책상 등 편의 제공 여부	20	135	95	59.3	/	/	5	40.7
	11	시·청각 장애학생이 있는 경우 교육에 있어 의사소통 수단 등 편의 제공 여부	18	66	88.9	45.5	/	/	11.1	54.5
	12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시험 또는 평가과정 등의 편의 제공 여부	28	175	89.3	77.1	/	/	10.7	22.9
	12-1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3	40	①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		0	34.9		
					② 장애학생의 장애 정도·유형을 고려할 때 필요하지 않아서		0	55.8		
③ 비용이 많이 들어서					0	0				
④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알지 못해서					0	0				
⑤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66.7	2.3				
⑥ 기타		33.3	7							
교내·외 행사	13	체육대회 등 장애학생이 교내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경험 여부	29	175	93.1	94.3	/	/	6.9	5.7
	13-1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2	10	① 장애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지 않아서		100	90		
					② 장애학생을 지원할 보조인력이 없어서		0	0		
					③ 보조기구가 없어서		0	0		
					④ 기타		0	10		
14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장애학생이 학교 밖 활동에 참여하지 못했던 경험 여부	29	175	93.1	74.9	/	/	6.9	25.1	
14-1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2	44	① 장애학생의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지 않아서		100	87.2			
				② 장애학생을 지원할 보조인력이 없어서		0	4.3			
				③ 보조기구가 없어서		0	0			
				④ 학교 밖 활동을 하는 장소의 접근성 등이 확보되지 않아서		0	6.4			
				⑤ 기타		0	2.1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15	장애학생의 교내의 행사 참여 시 이동과 안전 등의 이유로 장애학생의 부모 동반 요구 여부	29	175	79.3	90.3			20.7	9.7
인식개선교육	16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수업이나 교육 실시 여부	29	175	89.7	100			10.3	0
	16-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	26	175	①연간 1회		7.6	8		
					②학기별 1회		50	70.4		
					③분기별 1회		19.2	11.4		
					④월별 1회		3.8	3.4		
					⑤기타		19.2	6.8		
	16-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방법	26	175	①내부교사가 진행		57.5	55.5		
②외부 전문가가 진행					40	39				
③기타					2.5	5.5				

2 시설 접근성

(단위: %, (개))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주출입구	1	접근로의 유효폭 1.2m 이상 여부	29	175	86.2	99.4	10.3	0			3.5	0.6
	2	휠체어 등 보행자를 위한 보행안전통로의 차도와 분리 여부	29	175	69	78.9	6.9	5.7			24.1	15.4
	3	주 출입구와 연결 접근로의 높이차이 2cm이하 여부	29	175	96.6	86.9	3.4	7.4			0	5.7
주출입문	4	주출입문 높이차이 제거 여부	29	175	100	94.3					0	5.7
	5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여부	29	175	100	98.3					0	1.7
	6	주출입문 손잡이의 0.8-0.9m 사이에 설치 여부	29	174	89.7	70.1	10.3	28.2			0	1.7
	7	주출입문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29	175	82.8	76.6	3.4	1.1	86.2	77.7	13.8	22.3
	7-1	주출입문 전면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25	136	80	69.1	20	30.9				
7-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25	136	100	97.8	0	2.2					
엘리베이터	8	엘리베이터 전면에 1.4mX1.4m의 활동공간 확보 여부	28	158	100	95.6	0	1.9			0	2.5
	9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28	158	89.3	91.8	3.6	2.5	92.9	94.3	7.1	5.7
	9-1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26	149	96.2	87.9	3.8	12.1				
	9-2	설치된 점형블록은 훼손되지 않고 상태가 유지되는지 여부	26	149	96.2	99.3	3.8	0.7				
	10	엘리베이터 내부의 세로조작반·층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부착 여부	28	158	96.4	97.5	3.6	0.6	100	98.1	0	1.9
	11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가로형 조작반은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설치 여부	28	158	89.3	74.7	10.7	23.4	100	98.1	0	1.9
	12	엘리베이터 내부의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의 동작여부	28	158	92.9	86.7	7.1	12	100	98.7	0	1.3
13	엘리베이터 외부의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의 동작여부	28	158	82.1	74	17.9	22.8	100	96.8	0	3.2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계단	14	계단 손잡이의 양 끝 부분의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29	175	69	26.3	13.8	15.4	82.8	41.7	17.2	58.3
	15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29	175	75.9	48	3.4	0	79.3	48	20.7	52
	15-1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23	84	91.3	79.8	8.7	20.2				
	15-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23	84	100	97.6	0	2.4				
안내 시설	16	시각장애인이 시설의 배치를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혹은 음성안내장치 설치 여부	29	175	79.3	64	6.9	10.9	86.2	74.9	13.8	25.1
	17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 경보시스템(비상벨)·피난 설비의 설치 여부	29	175	79.3	71.4	20.7	23.4	100	94.8	0	5.2
	18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시스템(경광등)·피난 설비의 설치 여부	29	175	79.3	69.1	20.7	20	100	89.1	0	10.9
일반 사항	19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여부	29	175	93.1	66.9	6.9	29.7	100	96.6	0	3.4
	20	화장실 바닥 단차 2cm이하 여부	29	169	100	94.7					0	5.3
	21	일반화장실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29	175	86.2	48.6	3.5	2.3	89.7	50.9	10.3	49.1
	21-1	일반화장실 전면 0.3m이상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26	89	96.2	85.4	3.8	14.6				
	21-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26	89	100	100	0	0				
	22	일반 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에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설치	29	175	75.9	35.4	13.8	13.7	89.7	49.1	10.3	50.9
대변기	23	대변기의 출입문 형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29	167	96.6	89.2					3.4	10.8
	24	대변기 전면 활동 공간(1.4mX1.4m) 확보 여부	29	167	62.1	46.1	20.7	25.8			17.2	28.1
	25	대변기 양옆 수평수직손잡이, 회전식 손잡이 설치 여부	29	167	82.8	75.4	17.2	22.8	100	98.2	0	1.8
	26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리는 시각적 설치 여부	29	167	69	52.7	0	3	69	55.7	31	44.3
세면대	27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높이 0.85m이하, 하단높이 0.65m이상) 설치 및 하부공간 확보 여부	29	167	69	46.7	24.1	35.3	93.1	82	6.9	18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교실	28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교실 설치 여부	29	175	100	96.6	/	/	/	/	0	3.4
	29	출입문 높이차이 제거 여부	29	175	96.6	92	/	/	/	/	3.4	8
	30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여부	29	175	93.1	89.7	/	/	/	/	6.9	10.3
교무실	31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교무실과 행정실 설치 여부	29	175	100	96.6	/	/	/	/	0	3.4
	32	주출입문 높이차이 제거 여부	29	175	100	86.9	/	/	/	/	0	13.1
	33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여부	29	175	93.1	86.9	/	/	/	/	6.9	13.1
도서관	34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도서관 설치 여부	27	173	100	89	/	/	/	/	0	11
	35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는 열람석 설치 여부	27	172	96.3	83.1	0	9.9	/	/	3.7	7
	36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열람석의 (상단높이 0.7~0.9m, 하단높이 0.65m이상) 설치 및 하부공간(0.45m이상) 확보 여부	27	172	92.6	73.8	3.7	13.4	96.3	87.2	3.7	12.8
체육관	37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실내 체육관 설치 여부	25	159	96	79.9	/	/	/	/	4	20.1
	38	주출입문 높이차이 제거 여부	25	159	96	92.5	/	/	/	/	4	7.5
	39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여부	25	159	100	99.4	/	/	/	/	0	0.6
	40	체육관 내에서 수직 이동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설치 여부	/	9	/	66.7	/	/	/	/	/	33.3

2 직업교육훈련기관

1 1 정당한 편의제공

(단위: %, (개))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일반사항	1	장애교육생 대상 직업훈련 실시 여부	20	①2017년에 처음 실시함		10
				②이전에 실시한 적 있음		90
				③기타		0
	2	장애교육생의 학습지원을 위한 보조기구 보유 여부	20	35		65
3	장애교육생 대상 매뉴얼 또는 내부지침, 규정의 여부	20	60		40	
4	별도의 장애교육생 담당자 여부	20	80		20	
모집·등록	5	장애교육생 입학 시 정당한 편의제공 요청에 대한 사전 안내 여부	20	60		40
	6	시·청각 장애인이 등록시 등록과정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편의 제공 여부	20	30		70
	7	교육생들이 등록 시온라인 등록만을 허용하고 있는지 여부	20	90		10
	7-1	온라인 등록만을 하는 경우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다른 신청방법(전화, 직접방문, 기타 등) 허용 여부	2	50		50
교육보조인력	8	장애교육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보조교사, 도우미 등)배치 여부	20	40		60
	8-1	장애교육생과 배치하고 있는 교육 보조인력 현황	8	평균 5.9명		
	8-2	보조인력의 주요 업무 현황	8	①장애교육생의 교육활동 보조		72.7
②장애교육생의 이동지원					27.3	
③기타					0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교육 보조 인력	8-3	보조인력이 배치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12	①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		41.7
				② 필요하지 않아서		25
				③ 비용이 많이 들어서		0
				④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알지 못해서		0
				⑤ 기타		33.3
학 습	9	장애교육생으로부터 학습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험 여부	20	40		60
	9-1	장애교육생이 요청한 편의 제공 여부	8	75	25	0
	9-2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2	① 필요하지 않아서		0
				② 비용이 많이 들어서		33.3
				③ 관련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서		66.7
④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알지 못해서				0		
⑤ 기타		0				
10	시·청각 장애교육생이 있는 경우 교육에 있어 의사소통 수단 등 편의제공 여부	5	20		80	
평 가	11	장애 교육생에게 적절한 시험 또는 평가과정 등의 편의제공 여부	18	83.3		16.7
	11-1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3	①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		33.3
				② 필요하지 않아서		66.7
				③ 비용이 많이 들어서		0
				④ 구체적인 제공방법을 알지 못해서		0
				⑤ 다른 교육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0
⑥ 기타		0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미설치(%)
실습	12	장애교육생이 훈련 실습에 참여 하지 못했던 경험 여부	20	85		15
	12-1	참여하지 못한 경우 그 이유	3	①장애교육생이 원하지 않아서		100
				②장애교육생을 지원할 보조인력이 없어서		0
				③보조기구가 없어서		0
				④기타		0
인식개선교육	13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 여부	20	70		30
	13-1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대상	14	①교사		54.5
				②교직원		45.5
				③기타		0
	13-2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	6	①별도의 요청이 없어서		33.3
				②비용이 많이 들어서		0
				③필요성을 못 느껴서		33.3
④기타					33.3	

2 시설 접근성

(단위: %, (개))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주차 구역	1	장애인 주차구역 크기의 적정성 여부	14	64.3	14.3		21.4
	2	장애인 주차구역의 장애인 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부착 여부	14	57.2	35.7	92.9	7.1
주출입구	3	주출입구와 연결접근로의 높이차이 2cm이하 여부	20	75	5		20
주출입문	4	주출입문 높이차이 제거 여부	20	80			20
	5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여부	20	95			5
	6	주출입문 손잡이의 0.8~0.9m 사이에 설치 여부	20	85	5		10
	7	주출입문에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20	40	0	40	60
	7-1	주출입문전면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8	75	25		
	7-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8	87.5	12.5		
엘리베이터	8	엘리베이터 전면에 1.4m×1.4m의 활동공간 확보 여부	17	94.1	5.9		0
	9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17	58.8	5.9	64.7	35.3
	9-1	엘리베이터 호출버튼 전면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11	90.9	9.1		
	9-2	설치된 점자블록은 훼손되지 않고 상태가 유지되는지 여부	11	100	0		
	10	엘리베이터 내부의 세로조작반·층수·통화장치 등에 점자표지 부착 여부	17	88.2	0	88.2	11.8
	11	엘리베이터 내부의 휠체어 사용자용 가로형 조작반은 바닥면으로부터 0.85m 내외로 설치 여부	17	76.5	5.9	82.4	17.6
	12	엘리베이터 내부의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의 동작 여부	17	58.8	41.2	100	0
	13	엘리베이터 외부의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의 동작 여부	17	64.7	29.4	94.1	5.9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계단	14	계단 손잡이의 양 끝 부분의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19	5.3	5.3	10.6	89.4
	15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에 표준형 점형블럭 설치 여부	19	15.8	0	15.8	84.2
	15-1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전면 0.3m의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 여부	3	100	0		
	15-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3	100	0		
안내시설	16	시각장애인이 시설의 배치를 알 수 있도록 점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혹은 음성안내장치 설치 여부	20	5	0	5	95
	17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피난설비의 설치 여부	20	60	35	95	5
	18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 경보시스템(경광등)·피난설비의 설치 여부	20	55	35	90	10
일반사항	19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남·녀 구분 설치 여부	20	55	15	70	30
	20	화장실 바닥 단차 2cm이하 여부	14	85.7			14.3
	21	일반화장실 전면 표준형 점형블록 설치 여부	20	45	5	50	50
	21-1	일반화장실 전면 0.3m이상 간격을 두고 점형블록 설치여부	10	70	30		
	21-2	설치된 점형블록 활용 가능한 상태 유지 여부	10	90	10		
	22	일반화장실 출입구 옆 벽면 1.5m 높이에 남·여 구분 점자표지판 설치 여부	20	35	5	40	60
대변기	23	대변기의 출입문 형태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여부	14	85.7			14.3
	24	대변기 전면 활동 공간(1.4m×1.4m) 확보 여부	14	50	7.1		42.9
	25	대변기 양옆 수평수직손잡이, 회전식 손잡이 설치 여부	14	85.7	14.3	100	0
	26	대변기 출입문에 사용여부를 알리는 시각적 실비 설치 여부	14	50	0	50	50
세면대	27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세면대의 (상단높이 0.85m이하, 하단높이 0.65m이상) 설치 및 하부공간 확보 여부	14	42.9	57.1	100	0

항목	번호	체크리스트 항목	조사 대상	적정(%)	미흡(%)	설치(%)	미설치(%)
강의실	28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강의실 설치 여부	20	90			10
	29	출입문 높이차이 제거 여부	20	95			5
	30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여부	20	95			5
	31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책상의 (상단높이 0.7~0.9m, 하단높이 0.65m이상) 설치 및 하부공간(0.45m이상) 확보 여부	20	65	15	80	20
행정실	32	장애인 등이 접근하기 쉬운 교무실과 행정실 설치 여부	19	94.7			5.3
	33	주출입문 높이차이 제거 여부	19	94.7			5.3
	34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 이상 여부	19	84.2			15.8



부 록



부록 1. 모니터링단 활동 후기

1 서울 모니터링 활동 후기

이 인 숙 (서울 모니터링단원)

한통의 전화벨이 울리며 복지관 쌤이 저에게 국가인권위원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단원을 모집하니 활동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알려주셨다. 두근두근 대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했고 단원으로 선정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2번째~

3살 때부터 소아마비로 인해 오른쪽 하지마비로 보조기를 착용하고 목발을 짚어야 보행이 가능합니다. 많이 걸어야 되는 곳은 전동스쿠터를 타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곳곳에 설치된 경사로가 눈에 많이 보이게 되고, 가끔 편의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1차 때는 지하철, 철도에 대해 모니터링 했고, 2차 때는 학교와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을 조사 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곳은 2차 모니터링을 실시한 학교와 장애인직업훈련기관입니다. 초등학교는 건축한지 오래된 학교여서 인지, 편의시설이나 장애인 학생에 대한 시설들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있긴 하였지만 장애인 화장실은 남자 소변기만 있는 등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많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수반 선생님께 여쭙보니 아직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학생들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또 요구사항이 없으니 별다른 필요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곳은 서울의 한 장애인 직업 훈련기관 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담당 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훈련원으로 시설허가는 받았지만 몇 년 동안 운영해보니 사실 상 비장애인이 20명 수업한다면, 휠

체어 때문에 10명 정도 밖에 수업을 받을 수 없어 인원수도 조절해야하고 훈련하는 시간만큼 효과부족이라 지금은 일반인들 위주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계속 장애학생을 위한 직업훈련학교가 생겨야 하는데 공간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인해 장애인들이 배울 곳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이동하는 생활을 하면서 직접 몸으로 느껴지는 장벽 때문에 외부행사를 진행 할 때 에도 화장실 이용할 수 있나 가장 먼저 살펴보고는 합니다. 낮은 곳에 가면 건물입구에 경사로가 되어있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지 항상 살펴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불편이지요.

끝으로 이번 장애인 차별 예방 모니터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작은 배려가 우리들을 용기 나게 한다는 것. 두서없이 적어 내려갔는데 많은 생각들을 다 적을 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도전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 경기 모니터링 활동 후기

윤 원 석 (경기 모니터링단원)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하고 다른 사람과 차별 없이 대우 받기를 원한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년 전 1997년에 장애인의 이동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0년 전인 2007년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예방과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적인 틀은 오래 전에 갖추었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인권침해에 대한 언론보도를 가끔 접하면서 실제로 현재 장애인이 얼마나 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고 있는지 궁금해지게 된다. 국가인권위는 2007년부터 매년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장애인 접근성의 문제와 차별실태에 대해 조금이나마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나는 2017년도 인권위의 차별예방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올해는 대중교통시설인 지하철·철도와 학교 및 직업훈련시설이 모니터링 대상이었다. 우리 조가 1차로 방문한 곳은 경기도의 전철역들이었는데, 구도심 상업중심지에 위치한 역도 있고 최근 신도시 개발로 신설된 역도 포함되어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오래된 역과 신설역의 차이가 심한 편이었다. 오래된 지하철 환승역 한곳은 적당한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12개의 출입구중 한 곳에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점자블록은 멈춤 위치에 진행표시 블록을 잘못 설치하기도 했다. 반면 최근 지어진 역들은 입구 엘리베이터 내부에 장애인을 위한 역사이용 안내도를 부착하고 열차승강장까지의 동선도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편리했다.

몇 개역에서는 엘리베이터 비상호출 버튼위에 안내문을 임의로 붙여두어서 점자표기가 가려져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수로 누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라고 했다. 점자표기가 있는 실수방지 부착마개들도 이미 나와 있는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였다. 또한 지하철 주요 출입구에 있는 점자안내판의 경우 음성안내와 비상호출기능도 있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전원을 켜놓지 않아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곳도 있었다.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지하철역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기본적인 장애인 편의시설은 모두 갖추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잘못되거나 이용에 불편한 점들이 다수 보였다. 개별 역사에서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나 개선사항 파악이 어렵다면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도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또한 지하철은 역마다 구조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므로 자주 이용하는 지역의 장애인들의 통해 의견을 들어보고 이동동선을 개선하거나 불편사항을 없애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2차로 모니터링한 곳은 경기도의 초·중·고등학교 6곳 이었다. 장애인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 올해 처음 장애인이 입학한 곳도 있었으며, 도시개발지역에 위치한 학교, 오래 전 산언덕에 지어진 학교 등 각각 환경적 여건은 달랐다.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특수교사와 전문 보조인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지원을 하며 적당한 편의제공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들은 미비해 보였다. 오래전 지어져서 애초에 설계상 문제도 있었고, 시설개보수 예산은 학교별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하여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이동수단인 엘리베이터 부족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한 학교는 이동에 불편이 있는 장애학생이 재학 중이었지만 건물 한 곳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해당 건물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장애학생 속한 학년 전체를 매년 1층으로 배치하기도 했다. 특히 체육관의 경우 경사면이나 2층에 위치하고 있어 계단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는데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없어 접근이 어려웠다. 장애학생이 이동할 때 주변 학생들이 휠체어를 들어서 옮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졸업식 같은 각종 행사에서 장애가 있는 부모가 있다면 접근에 불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애초에 접근성을 고려하고 만들었다면 엘리베이터가 아니더라도 경사로는 충분히 설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40년 전에 지어진 오래된 한 고등학교는 취업률이 좋아 장애학생의 입학문의도 가끔 있다고 하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장애학생을 위한 전문 인력이 없었다. 학교 측에서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을 알고 전문적인 진단까지 받아서 상황은 잘 파악하고 있었지만 개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래 전 지어진 건물이라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공간도 부족하고 현재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학생이 없다고는 하는데, 혹시 오히려 환경적 여건과 지원이 부족하여 장애학생들이 스스로 입학을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에서도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고 예산상의 이유로 개선이 미루어지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물론 큰 예산을 들여 공사를 당장 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청소년들이 보고 배우는 학습의 공간이기에 장애인에 대한 불편과 차별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은 빨리 개선되기를 바란다. 또한 학교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단지 학생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학교 화장실의 경우 남녀공용이거나 장애인 편의시설은 열악한 곳이 있었는데, 선생님도 장애인일수 있고 학부모나 다른 방문객도 장애인일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아주 인상 깊게 본 공익광고 캠페인이 있다. 지하철역 계단위에 커다란 산이 그려져 있고 “누군가에게 이 계단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라고 쓰여 있었는데, 이 광고를 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다가가지 못하게 하는 차별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게 한다. 이번 인권위 모니터링 활동

을 하면서 내가 보아왔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과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 지나쳐온 우리 주변의 차별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머리로 막연히 이해하고 있던 것보다 실제로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보고 들으면서 우리사회에서 장애인 접근성 문제와 존재하는 차별들에 대해 새롭게 느끼게 된 것 같다. 이러한 인권위의 장애차별 모니터링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 부산 모니터링 활동 후기

임 유 정 (부산 모니터링단원)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으로 활동한지 올해로 벌써 3년째다. 처음 장애인시설 기관의 요청으로 모니터링단 활동했을 때,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법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몰랐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럭의 설치기준 적정이 0.3m여야 하는 등 사소한 것조차도 몰랐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다. 농인인 나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도 ‘여기저기 보이지 않는 장애인 차별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평소 보이지 않던 부분이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동기로 시작하면서 이것이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활동을 계속 하게 된 이유라 할 수 있겠다. 농인(청각장애인)은 장애인 중 사람들 눈에 가장 잘 띄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농인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까지는 청인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장애인들보다 대우를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청각장애인은 타 장애인에 비해 잘 띄지 않아 직접 목소리 내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는 것을 모니터링단 활동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다.

올해는 1차 도시철도·광역전철·철도 역사 모니터링, 2차 교육기관 및 학교 모니터링 하는 과제를 받게 되었다. 먼저 도시철도나 전철을 타면서 긴급 상황이나 어떠한 안내방송을 할 때 오로지 소리만으로 안내해주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는다. 대다수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청각장애인은 불안감이 엄습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다.

청각장애인은 시각적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비장애인보다 수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적어 신속히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잔존 청력이 남아 있는 경증 청각장애인의 경우 소리를 통한 비상상황 인지가 가능하지만, 그조차도 위험한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놓칠 수 있다. 중증 청각장애인은 시각적으로 위험정보를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플래시 등이나 재난을 알리는 문자를 제공하는 자막용 전광판이 필요한 이유다. 또한 문맹인 청각장애인을 고려할 때 문자만이 아니라 그림으로 재난위험상황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어야 하는데, 타 장애인보다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서 너무 아쉬웠다.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청각장애인 입장에서 체크리스트의 신규 추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설명을 드렸다.

그리고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부분에서 타 장애인에 비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체크사항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지체장애인을 위한 물리적 접근성을 위한 시설에 비해 시·청각 등 기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이 체크사항들도 지켜지지 않은 기관들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건물 내에 보면 대다수 경보 피난시설이 기본적으로 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경보기(비상벨)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경보기(경광등)가 생각보다 연속적으로 설치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실제로 한국에서 건물 내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자고 있던 청각장애인이 소리를 듣지 못해 연기에 질식사해 숨진 사건이 있다. 또 일본 쓰나미 사건으로 당한 장애인의 피해는 비장애인에 비해 260%나 높다는 유엔의 보고가 있었다고 한다. 안타까운 이 사건은 청각장애인 한 사람의 사례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보면 “위급사항 및 자연재해 발생과 같은 상황들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재해 상황에 있어서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서 터무니없이 시설이 부족함과 열악함을 눈, 코앞에서 확인을 하고나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필요한 부분을 요구해야함을 다시 한 번 느꼈고,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적극 홍보

할 필요성이 있다.

농인과 청인의 살아가는 방식,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것을 상호간에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해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차별과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해나가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단 조별 단원 분들 그리고 저를 통한 모니터링 활동들이 농인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관점의 변화를 이끄는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4 광주 모니터링 활동 후기

박 종 옥 (광주 모니터링단원)

“국가인권위 공공시설 모니터링”의 단원으로서 함께 하기로 결정하면서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생겼습니다. 30년 이상, 후천성 지체장애 3급인 장애인의 삶을 살면서 그 동안 몸소 느껴왔던 삶에 대한 불편들을 토대로 실제 시설들의 현주소를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에 기대감이 들었고, 반대로 휠체어나 목발이 필요한 장애인들 혹은 시각, 청각 장애인들 보다는 일반 생활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의 모니터링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장애인 5명, 비장애인 1명으로 이루어진 저희 조는 목포시 근처에 있는 4군데의 역과 직업학교를 포함하여 6군데의 학교시설을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기가 어려웠는데, 2년간 장애인 차별예방을 위해 노력해주신 홍대용 선생님께서 쉽게 설명해주시고 잘 도와주셔서 빠르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했던 대부분의 시설에서 반갑게 맞아 주시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덕에 자칫 위축 될 수도 있는 저희 조원 모두가 편안하게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대로 시설의 적격, 부적격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보니 보완되어야 할 점이 참으로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을 예로 들자면 하나는

화장실입니다. 역과 학교시설 모두 장애인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었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큰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문 폭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가고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공간이 협소해서 휠체어의 방향을 바꾸는 것조차도 불가능 한 곳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사용 횟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잡이가 고장이 난지 오래되어 보이는 곳도 그대로 방치해 뒀고 심지어 화장실을 대결레 건조실로 사용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를 대표적 문제점은 바로 안내판이었습니다. 장애의 성격에 따라 음성안내, 점자안내, 그림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역사 담당자에게 문제를 제기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면 직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시지만, 모든 장애인들이 직접 직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시각장애인이 그림표시를 보고 기차 타는 곳까지 제 시간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요.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보였습니다. 휠체어가 들어가기 힘든 출입구, 마치 인테리어의 필수 요소인 것처럼 공통적으로 보여 지는 문턱들, 엘리베이터나 리프트의 부재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신축, 리모델링 건물이나 시설에 설계도와 시방서를 장애인의 현실적 상황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와 모니터링 및 자체 점검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 화장실은 만들어질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강하게 드는 생각은 장애인 시설의 미비에 대한 보완도 이뤄져야 하지만 기본적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부재가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시설 담당자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감시에서 문제없이 통과 되었다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혹은 우리의 방문을 의식해서 일시적으로 자체 보완을 한 곳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눈가리고 아웅” 식의 자세는 장애인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있어 불편을 넘어 좌절감을 줄 것입니다. 장애인의 마음, 삶의 방식, 불편함을 형식적이 아닌 진심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 하는 자세를 가지려 노력하면 시설의 불편사항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보여 지고 시정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일상에서도 장애인들의 권익옹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인 주차장의 부재나, 일반인의 주차에 대해서 시청에 민원을 많이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이외에 생활의 아주 작은 부분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으로 살고 있었지만, 저 보다 몸이 더 불편한 사람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니터링 단원으로서 제 모니터링 임무는 약7개월 기간으로 끝이지만 앞으로 생활 곳곳에서 장애인 시설에 대해 셀프 모니터링을 해 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4조 모니터링 단원들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마음 맞춰서 모니터링을 해 나간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싶고, 장애인 차별예방 업무 담당하신 홍대용 선생님께서도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 저희를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 대구 모니터링 활동 후기

김 수 용 (대구 모니터링단원)

작년(2106)에 대형 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우체국 등을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꼈던 부분들이 마음에 쏙 들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시정되어 가는 모습들을 목격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뿐 아니라 모든 이용자들에게 좀 더 편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올해도 모니터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1차 모니터링 대상이 지하철과 철도, 2차는 초중고와 직업훈련학교로 정해져서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비율을 보면 지하철(70%), 장애인 콜택시(10%), 활동보조인 자가용(20%)이 차지하는 정도입니다. 대부분 전동차를 타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차 모니터링 장소로는 평소에 늘 다니던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하게 돼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1차 모니터링 장소는 1. 성당못역, 2. 대명역, 3. 안지랑역, 4. 현충로역 4곳 모두 대구 지하철 1호선 4곳 중 첫 번째 역인 성당못역은 대구 지하철 중에 유일한 탑승구간이 곡선구간인 역입니다.



〈사진 1〉 성당못역 곡선구간



〈사진 2〉 안전 발판

<사진1-성당못역 곡선구간> 곡선구간인 관계로 차량과 승하차 구간 사이에 틈이 넓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승하차시 안전장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여태껏 별 관심 없이 지내왔는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바르게 알게 된 부분이어서 사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림2-안전 발판>에서 빨간 색칠한 부분이 차량이 정지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벽 쪽에서 발판이 나와 차량과 벽사이의 틈을 메꿔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지체장애인들의 전동차들이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을 하는 날에는 작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대구 인권사무소 개국 10주년 기념으로 방송국에서 나와 모니터링하는 모습을 촬영하며 인터뷰도 하게 되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방송국 피디님 왈 “아주 잘하시는데요.” “허허허 수용이와 1조, 방송 탓 답니다.”

1차 모니터링 후 느낌은 모든 역들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장애인 편의 시설들을 갖추어져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1조 2차 모니터링은 1. 초등학교 2곳, 2. 중학교 1곳, 3. 특수학교 2곳, 4. 장애인 직업훈련학교 1곳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학교들은 일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규정이 있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장애인 화장실이 비장애인 화장실 안쪽에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을 마련해 놓은 상태라 장애인용화장실의 규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이고 여러 학생들과 함

계 사용하는 관계로 휠체어나 전동휠체어가 드나들기 아주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인이 함께 이용해야한다면 이성의 활동보조인이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경우는 각 장애유형별 학교였기에 편의시설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정해진 규격들은 넉넉히 지켜지고 있었으며 규격보다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들 또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형과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면들이 있었습니다. 지체장애인 특수학교에서는 휠체어 이동의 불편함 때문에 시각장애인용 블록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직업훈련학교를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전체 시설은 학교들보다 부족한 점들이 많았으나 비교적 편의시설들은 구격을 지켜가며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곳에서 직장생활과 생활전선으로 뛰어들기 위한 예비 직장인들이 열심히 훈련 받고 계시는 모습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대부분이 기초생활 수급권자인데 직업훈련학교에 입교하려면 기초수급권을 포기하여야 한다는 사연을 듣고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니터링을 모두 마치면서 작년이나 올해나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 지하철 역사 속에는 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995년 4월 2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동에서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상인역 공사 도중에 일어난 가스폭발 사고와 2003.2.18.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하철은 안전에 대한 대비가 비교적 잘되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체장애인들, 특히 전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에 대한 안전은 미흡한 정도인거 같아 이렇게 지면을 통해 건의 드립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약에 다시 지하철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지하철 내에 있는 모든 엘리베이터는 멈추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전동차를 탄 장애인들은 어떻게 대피할 수 있을까요?



역마다 지하대피시설이 있습니다. 불이 났으니 저 유리벽 사이에 들어가 대피해 있으라는 말입니다. 비장애인의 경우는 저 대피로를 통해 지하철이 다니는 터널로 대피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구 지역의 지하철 중에는 지하 승강장에서 지상까지 바로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가 최근 신설된 지하철역에 비상계단으로 설치된 곳들이 있습니다.(1호선-설화명곡역과 화원역, 2호선-영남대역 등) 하지만 이런 대피로 들이 비상계단이어서 전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이용할 수가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건의 드리자면 계단으로 된 통로를 모두 경사로로 변경한다면 전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뿐 아니라 가끔 역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전동차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다음 역이나 그 이전 역으로 이동하여 지하철을 이용하여야만 합니다.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면 이런 불편함도 없을 것인데요. 이런 제안이나 건의 사항들이 하나하나 더디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점점 좋아지는 세상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올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더위에 땀으로 샤워한 듯합니다. 내년엔 모니터링 시기를 앞당겨 봄이나, 늦추어 가을에 했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HAKUNA MATATA ” 스와힐리어로 “잘될 것입니다.” <라이언 킹 중에서>

6

대전 모니터링 활동 후기

박 하 늘 (대전 모니터링단원)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단원 박하늘입니다.

4월 말에 열린 발대식 이후로 짧은 기간이나마 처음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에 참여하며 느꼈던 점을 나누려 합니다.

저는 모니터링 단원으로서 이번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 기간에 학교와 지하철, 철도역과 같은 공공장소를 다니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어떤 곳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또 어떤 곳은 장애인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모니터링 한 기관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생각해본다면 대전 지역의 시설들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대체로 잘 되어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특수학교에 비해 현저히 낮은 복지 환경이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학교에 장애인 특수학급을 더 늘리고 어떤 유형의 장애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차별 예방 모니터링을 하며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방문한 학교 중 한 학교가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내내 학교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꼼꼼히 표시하고 참고하겠다고 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질문하고 메모하며 안내해주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그것들을 이용하며 느낄 불편함과 어려움에 관해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에 참 뿌듯했습니다.

지하철과 철도를 모니터링 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동 휠체어 하나가 겨우 들어갈 정도의 좁은 엘리베이터를 노약자 및 장애인들이 함께 사용해야 해서 봄비는 출퇴근 시간이나 항상 이용객이 많은

역의 경우, 이동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따를 것이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듭니다.

계단에 휠체어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비상시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어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대피할 수 있도록 돕고 굳이 멀리 위치한 엘리베이터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손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역뿐만 아니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많은 곳에 하루빨리 보편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처음 접해보는 활동이라 체크리스트나 활동보고서와 같은 일지를 작성하는 것부터가 매우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러한 장애인들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되어 모든 장애인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변화되어 장애인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록 2. 2017 장애차별예방 현장 모니터링단 명단

1 서울 (33명)

김미진	김삼식	김찬구	김춘기	김현우	김혜건
김효성	라충열	문다예	박병훈	박윤구	서기원
송광현	송지은	심규철	안선영	윤경애	이경철
이경희	이용원	이인숙	이정하	이훈희	임규범
임태욱	전운선	조미연	조현대	주민지	천영희

2 경기 (24명)

강철환	김문환	김영수	김영현	김유준	김태이
박단비	박미경	배상현	변아영	오유진	오현경
유영	윤원석	이재원	이춘호	이충현	이혜숙
정복희	조우현	조효식	최세영	최윤행	황보민

3 부산 (25명)

강명진	강세경	김경순	김미숙	김미현	김순옥
김은주	김종석	김현민	김현준	김혜성	김홍락
박동주	박상진	박희송	배성재	성희철	신세영
양민정	이이현	임유정	정승천	정영봉	허윤도
황선일					

4 광주 (23명)

김경숙	김미향	김병만	김수민	김영아	김예영
박경원	박경한	박석진	박영석	박영아	박종옥
박진경	배정민	배한성	양승렬	오성환	이현아
이형일	정지훈	정효현	최성배	한계순	

5 대구 (24명)

강혜령	강혜리	곽동혁	권경자	권기연	김경하
김광수	김수용	박희경	서영훈	서은미	서인창
성기숙	손경숙	이숙희	이종만	이현숙	임수연
정지윤	천종열	최정수	하용준	황세준	황신애

6 대전 (30명)

권은선	권인자	김민우	김순심	김영미	김주희
김준학	박영훈	박종석	박한우	박하늘	배은경
송용학	신다경	신현주	안홍수	양정원	유복례
윤병근	이미정	이한성	전수정	정미정	정우성
정지석	조경애	최민희	최영란	최재석	최현기

부록 3. 모니터링 관련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p> <p>②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p>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자동차 기타기구의 범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 후단에서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9.8.21., 2013.3.23., 2017.7.2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이 승·하차하거나 스스로 운전할 때 도움을 주는 보조기구를 장착한 자동차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3.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통신제품 <p>제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2.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p>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법 제3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p> <p>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p> <p>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p> <p>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p> <p>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p>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p> <p>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p> <p>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p> <p>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p> <p>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p> <p>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p>	<p>말한다. <개정 2011.5.19., 2016.2.3.></p> <p>1.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p> <p>2.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p> <p>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p> <p>4.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p> <p>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직무수행 장소까지 출입가능한 출입구 및 경사로</p> <p>2. 작업수행을 위한 높낮이 조절용 작업대 등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p> <p>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작업일정 변경, 출·퇴근시간의 조정 등 근로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p> <p>4. 훈련 보조인력 배치, 높낮이 조절용 책상, 점자자료 등 장애인의 훈련 참여를 보조하기 위한 인력 및 시설 마련</p> <p>5. 장애인용 작업지시서 또는 작업지침서 구비</p> <p>6.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의 능력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 마련</p> <p>제6조(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p> <p>제7조(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등) ① 사용자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에 사용자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은 후 그 검사에 드는 비용의 명세를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p> <p>② 사용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게 의학적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경우 근로자가 의학적 검사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거나 작업일정 변경 등을 통하여 의학적 검사를 받는</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p> <p>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p> <p>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p> <p>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p> <p>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p> <p>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p> <p>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p> <p>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p> <p>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p> <p>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2017.9.19.></p> <p>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p> <p>2. "보조건"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을 말한다.</p> <p>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p>	<p>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p> <p>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교육책임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활한 교수 또는 학습 수행을 위한 지도자료 등 2. 통학과 관련된 교통편의 3.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 <p>제9조(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2와 같다.</p> <p>제10조(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 ① 교육책임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에 제각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독립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장애아동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3.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경우: 장애학생을 위한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p>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활동 내용 및 장애인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p> <p>제11조(시설물의 대상과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대상과 단계적 적용범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시설 중 2009년 4월 11일 이후 신축·증축·개축하는 시설물로 한다.</p> <p>제12조(시설물 관련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설치기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관리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그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p> <p>제13조(이동·교통수단 등 정당한 편의제공 적용대상 및</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p> <p>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p> <p>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p> <p>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p> <p>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p> <p>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p> <p>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p>	<p>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교통사업자·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의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11.27.></p> <p>②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11.27.></p> <p>③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이나 도로주행시험에 출장시험을 요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14조(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장애인이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들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8.2.></p> <p>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2.></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 한국수어 통역사, 음성통역사, 점자자료, 점자정보단말기,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 확대경, 녹음테이프, 표준텍스트파일, 개인형 보청기기, 자막, 한국수어 통역,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장애인용복사기, 화상전화기, 통신중계용 전화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단 제2항제2호에 따른 필요한 수단은 장애인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등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행사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사, 문자통역사, 음성통역사 또는 보청기기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19., 2016.8.2.> <ol style="list-style-type: none">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p> <p>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p> <p>12. "관광활동"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용역 등을 제공받거나 관광에 딸린 시설을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p> <p>13.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p> <p>14.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p> <p>15.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p> <p>16.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한다.</p> <p>17.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p> <p>18.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p> <p>19.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p> <p>20.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p> <p>21.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p>	<p>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p> <p>3.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p> <p>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의 이행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소관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미리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19., 2013.3.23., 2017.7.26.></p> <p>⑦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1.5.19.></p> <p>⑧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는 중계자가 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거나 음성을 문자나 한국수어 영상 등으로 변환하여 장애인과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장애인이 아닌 사람 간의 통화를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서비스로 한다. <신설 2011.5.19., 2016.8.2.></p> <p>제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는 별표 4와 같다.</p> <p>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참여 및 향유를 위한 출입구, 위생시설, 안내시설, 관람석, 열람석, 음료대, 판매대 및 무대단상 등에 접근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문화·예술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 보청기 등 장비 및 기기 제공 4.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관련 정보 제공 <p>제16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p> <p>[시행일 : 2018.3.20.] 제3조</p> <p>제4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동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동반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p>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 <p>② 제1항제1호의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시기는 별표 5와 같다.</p> <p>제17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편의 제공 등) ①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법 제26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에 참여하기 위하여 요구할 경우 보조인력, 점자자료, 인쇄물음성출력기기, 한국수어 통역, 대독(代讀), 음성지원시스템, 컴퓨터 등의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고려하여 교정·구급시설에서 계구(戒具)를 사용하거나 고충 상담, 교도작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2.></p> <p>②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인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다.</p> <p>제18조(직장보육서비스 적용대상 사업장 및 단계적 범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되, 이 규정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1.12.8.></p> <p>제19조(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여성 근로자 자녀의 직장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2. 직장어린이집에 접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데에 위험이 없도록 장애물 제거 3. 소속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책자 비치 4. 장애여성 근로자의 장애 상태에 따라 자녀와 원활하게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p> <p>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p>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p> <p>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p> <p>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p> <p>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p> <p>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p> <p>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장 차별금지</p> <p>제1절 고용</p> <p>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소통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p> <p>5. 상담을 통한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편의 제공</p> <p>제20조(시정명령의 신청방법)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인의 성명·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시정명령이 필요한 사유 <p>제21조(시정명령 기간) 법무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 불이행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p> <p>제22조(시정명령 서면)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정명령의 이유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절차 <p>제23조(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 ① 장애인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의 법무실장, 인권국장, 인권 및 장애인차별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제24조(위촉위원의 임기)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p> <p>제25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할 때 또는</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p> <p>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p>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절 교육</p> <p>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p>	<p>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p> <p>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p> <p>⑤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p> <p>제2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제27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p> <p>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29조(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존중) 법무부장관은 시정명령 여부 결정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p> <p>제30조 삭제 <2011.5.19.></p> <p>부칙 <제28211호, 2017.7.26.>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p> <p>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p> <p>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7>까지 생략 <23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조제3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p> <p>제14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p> <p><239>부터 <388>까지 생략</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p> <p>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p> <p>③ 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 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p> <p>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2.3.></p> <p>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p> <p>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p> <p>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p> <p>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p> <p>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② 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p> <p>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p> <p>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p> <p>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p> <p>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p> <p>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p> <p>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p> <p>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6.2.3.></p> <p>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2017.7.26.></p> <p>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p> <p>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p> <p>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p> <p>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p> <p>[제목개정 2010.5.11.]</p> <p>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9호·제20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3호·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2017.9.19.></p> <p>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6.2.3.></p> <p>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2017.7.26.></p> <p>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p> <p>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p> <p>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p> <p>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p> <p>[제목개정 2010.5.11.]</p> <p>[시행일 : 2018.3.20.] 제21조</p> <p>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p>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p> <p>③ 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②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6.2.3.></p> <p>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취·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p> <p>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p>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p> <p>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금·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p> <p>제5절 모·부성권, 성 등</p> <p>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도구 등의 개발</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p> <p>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p> <p>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p> <p>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p> <p>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와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p> <p>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p> <p>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②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p> <p>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p> <p>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p> <p>④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p> <p>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p> <p>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p> <p>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p> <p>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p> <p>⑥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p>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p> <p>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p> <p>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p> <p>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p> <p>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p> <p>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p>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p>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p> <p>④ 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p> <p>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피해자는 차별행위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p> <p>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p> <p>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p> <p>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p> <p>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p> <p>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p> <p>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p>	<p>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p>
<p>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p> <p>③ 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p> <p>제6장 벌칙</p> <p>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p>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p> <p>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p> <p>③ 삭제 <2010.5.11.></p> <p>④ 삭제 <2010.5.11.></p> <p>⑤ 삭제 <2010.5.11.></p>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p>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p> <p>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p> <p>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p> <p><3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21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p> <p><365>부터 <382>까지 생략</p> <p>제6조 생략</p>	

2017 장애인차별예방 현장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 인 쇄 | 2017년 11월

| 발 행 | 2017년 11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 주 소 | (04551)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저동빌딩

| 전 화 | (02) 2125-9962 | F A X | (02) 2125-0924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575-6 93330

사전승인 없이 본내용의 무단복재를 금함

